

발 간 등 록 번 호

11-1490000-000003-10

2007년도

산재보험사업연보

발 간 사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보험으로서, 1964년 시행된 이후 산업재해 근로자의 생활보장 및 직업재활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특히 2006년의 노사정 합의에 의하여 2007년 12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져, 산재보험제도는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산재보험 사업연보』는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기원 및 제도의 변천과정을 회고함과 동시에, 별도의 편을 구성하여 2007년 산재보험 관련 법령의 개정과 그로 인한 제도 개선 현황을 상세히 수록하였습니다.

본 사업연보가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산재보험제도의 현재를 조망하면서 이를 통해 산재보험제도의 나아갈 길을 밝히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08년 5월

산업안전보건국장

목 차

제1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관	1
제1장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생성	3
제2장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발전	5
제1절	산재보험 목적사업	5
제2절	적용 및 징수	5
	1.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5
	2. 산재보험 징수제도 변화	8
제3절	요양 및 보상	15
	1.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확대	15
	2. 보험급여 확대	16
	3. 요양제도 개선	29
제4절	재활 및 복지	35
	1. 산재보험 재활사업	35
	가. 산재보험 재활정책의 의의	35
	나. 산재보험 재활정책의 가치이념	35
	다. 재활의 각 분야	36
	2. 보험시설의 확충	37
제5절	권리구제제도	42
	1. 보험 적용 및 징수	42
	2. 보험급여	42
	3. 행정소송	44

제3장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관리조직	45
제1절 행정조직	45
제2절 근로복지공단	48
제3절 산재의료관리원	50
제2편 2007년도 산재보험 주요 정책과제 추진실적	51
제1장 2007년도 추진실적 개황	53
제1절 산재보험 제도개선 추진배경 및 현황	53
제2절 추진실적	54
제3절 평가 및 향후계획	55
제2장 산재보험 제도개선 추진	56
제1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	56
1. 추진배경 및 현황	56
2. 개정 주요 내용	56
3. 평가 및 향후 과제	59
제2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60
1. 개정 배경	60
2. 개정 경과	60
제3절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	63
제3장 산재보험 적용·징수 강화	65
제1절 산재보험 적용의 내실화	65
1. 추진경과 및 현황	65
2. 추진실적	67
3. 평가 및 향후 과제	68

제2절 징수업무 효율화를 위한 수납률 제고	69
1. 추진경과 및 현황	69
2. 추진실적	75
가. 징수관리의 효율성 제고	75
나. 징수업무 효율성을 위한 업무환경 개선	76
다. 보험사무대행기관 운영 효율화 및 신용카드 납부제도 활성화	76
3. 평가 및 향후 과제	77
제4장 보험운영 관리 체계 효율화	78
제1절 ‘찾아가는 서비스제’를 통한 의료·재활서비스의 강화	78
1. 추진경과 및 현황	78
2. 추진실적	79
3. 평가 및 향후 과제	80
제2절 요양절차 및 관리의 개선	81
1. 요양관련 현황	81
2. 추진실적	81
가. 요양업무처리규정 개정	81
나. 민원 인터넷 이용도 제고를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	82
다. 외국인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지원	83
라. 업무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83
마. 산업재해 다빈도 상병 매뉴얼 발간	83
바. 요양관리 합리화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한 지침 마련	83
3. 평가 및 향후 과제	84
제3절 산재병원 특화·전문화 추진을 통한 산재병원 역할강화 추진	85
1. 추진 배경	85
2. 추진 내용	85
제5장 산재보험 재할·복지사업	86
제1절 산재근로자 재할사업	86

1. 재활상담	86
2. 후유증상관리제	87
3. 의료재활(취미활동반) 지원	88
4. 직업훈련비용지원	88
5.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89
6. 장애급여자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89
7. 재활훈련원 운영	90
8. 재활스포츠 지원	91
9.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91
제2절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92
1.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92
2. 산재근로자 및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부사업	93
3.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93
제3절 산재보험시설 설치 및 운영	95
1. 병원시설	95
가. 인천중앙병원	95
나. 태백중앙병원	96
다. 창원병원	97
라. 대전중앙병원	98
마. 안산중앙병원	99
바. 순천병원	100
사. 동해병원	101
아. 정선병원	102
자. 경기요양병원	103
2. 케어센터	104
가. 경기케어센터	104
나. 강원케어센터	105

3. 연구기관	107
가. 재활공학연구소	107
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108
제6장 산재보험 재정안정화	110
제1절 지출합리화 및 수입 제고	110
제2절 법정책임준비금 확보	117
1. 추진경과 및 현황	117
2. 추진 실적	117
3. 평가 및 향후 과제	118
제3편 산재보험 통계	119
통계 이용자를 위한 일러두기	120
1. 적 용	121
제1-1표 연도별 적용 확대현황	122
제1-2표 '07년도 업종별 적용현황	124
제1-3표 '07년도 지역본부 및 지사별 적용현황	128
제1-4표 '07년도 월별 업종별 적용현황	130
제1-5표 '07년도 월별 규모별 적용현황	132
제1-6표 연도별 업종별 적용현황	134
제1-7표 연도별 사업규모별 적용현황	135
2. 보험료율	137
제2-1표 연도별 보험료율 변동현황	138
제2-2표 '07년도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 현황	146
3. 징 수	151
제3-1표 연도별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	152
제3-2표 연도별 예산항목별 징수결정 및 수납현황	156

제3-3표 연도별 적용 및 수지현황	166
제3-4표 '07년도 지역본부 및 지사별 징수현황	170
제3-5표 '07년도 업종별 징수현황	174
제3-6표 '07년도 월별 업종별 보험료 징수현황	182
제3-7표 연도별 규모별 보험료 징수현황(수납액)	184
4. 재해보상	185
제4-1표 연도별·보험급여별 지급현황	186
제4-2표 연도별·업종별 보험급여 지급현황	190
제4-3표 '07년도 업종별 보험급여 지급현황	194
제4-4표 '07년도 지역본부 및 지사별 보험급여 지급현황	206
제4-5표 연도별 보험급여 평균지급액	214
제4-6표 '07년도 업종별 보험급여 평균지급액	216
제4-7표 '07년도 지역본부 및 지사별 보험급여 평균지급액	222
제4-8표 '07년도 임금변동순응률 및 최저보상기준적용 수혜현황	226
제4-9표 '07년도 지역본부 및 지사별 장애등급별 장애급여 지급현황	228
제4-10표 중소기업 사업주 보험급여 지급현황	236
제4-11표 연도별 사업규모별 보험급여 지급현황	238
제4-12표 외국인 근로자 보험급여 지급현황	239
제4-13표 '07년도 월별 업종별 보험급여 지급현황	240
제4-14표 '07년도 월별 보험급여 종류별 보험급여 지급현황	242
제4-15표 '07년도 지역본부 및 지사별 산재지정의료기관 현황	244
제4-16표 '07년도 의료기관 등급별 진료비 지급현황	246
제4-17표 '07년도 지역본부 및 지사별 진료비 지급현황(총괄)	248
제4-18표 '07년도 지역본부 및 지사별 진료비 지급현황(입원)	252
제4-19표 '07년도 지역본부 및 지사별 진료비 지급현황(통원)	256
제4-20표 지사별 요양기간별 요양환자 현황	260
제4-21표 연도별 요양기간별 요양환자 현황	262

5. 재 활	263
제5-1표 후유증상 관리제도 운영현황	264
제5-2표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 위탁훈련 현황	264
제5-3표 직장복귀지원금 지원 현황	265
제5-4표 의료재활지원사업 운영현황	265
제5-5표 사회적응프로그램 위탁운영 현황	266
제5-6표 재활스포츠 지원현황	266
제5-7표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현황	266
제5-8표 연도별 장학금 지급실적	267
제5-9표 연도별 생활안정자금 대부실적	268
6. 산재보험 시설 현황	269
제6-1표 보험시설현황	270
제6-2표 국고투자현황	271
제6-3표 병원별 연도별 의료사업 실시현황	274
제6-4표 병원별 연도별 근로자 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실시현황 ..	280
제6-5표 연도별 기관별 직업재활훈련사업 현황	283
7. 권리구제	285
제7-1표 연도별 심사청구 심사현황	286
제7-2표 연도별 재심사청구 심사현황	288
부 록	291
I. 연도별 정책연구용역 현황	292
II. 산재보험 업종별·규모별 적용확대 현황	296
III. 산재보험 급여 수준 개선현황	300
IV.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05
V.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353

제 1 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관

제 1 장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생성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제도는 급변하는 국내의 정치·사회적인 여건과 필요에 따라 생성되어 역동적인 변화과정을 겪어왔다.

우리나라는 19세기 외국에 문호가 개방된 이후 광업과 소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가 자주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나, 이 때는 사업자의 자의적 규율·판단에 의하여 보상수준이 정해졌기 때문에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후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재해가 꾸준히 늘어나자, 일제하인 1938년 “조선 광업령”이 개정되면서 “조선광부 부조규칙”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광산에서 일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보상 기준이 마련되었다.

“조선광부 부조규칙”은 광업권자로 하여금 광부의 업무상 부상·질병·폐질·사망에 대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였으며, 당시 일반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부조제도로서 미군정 시대까지 유지되다가 '53년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에는 미군정 하에서 노동부가 설치되고, 각 도에 노동국을 두어 “근로자 단결권에 대한 법령”, “미성년자 노동보호법”, “최고 노동시간법” 등 여러 가지 노동과 관련된 법령을 만들었고, 비록 재해보상에 관한 구체적 법령은 마련되지 못하였으나 단체협약에 의한 재해보상을 정책적으로 장려하였다.

'48년 7월 17일 제정된 헌법에서는 제17조에 근로의 권리, 제18조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과 이익분배균점권 등을 규정하고 제19조에 근로능력 상실자에 대한 생활 보호를 규정하였으나, 미군정 시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재해보상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국전쟁 중인 '53년 5월 10일 부산에서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과 함께 개별근로자의 지위향상과 생활보장을 위한 종합 입법으로서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이

4 제1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관

공포되었는데, 근로기준법 제8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재해근로자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무과실책임에 의한 재해보상제도”를 규정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사업주는 요양비,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 신체의 장애에 대해 장애등급(1급~10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50~1,000일분의 장애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000일분의 유족보상 및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근로관계를 규정하는 근로기준법에 재해보상을 규정한 것은 매우 획기적이었으나 사업주가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대형사고가 나면 복구비, 보상비 등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사례도 많아 실제 재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일시적인 비용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확실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연대하여 책임을 분담하는 보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문 30조로 된 산재보험법 초안을 만들어 보건사회부 산하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3년 10월 8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결하고, '63년 11월 5일 법안 공포 후 '64년 7월 1일부터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재보험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제정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산재보험사업은 보건사회부장관이 관장하고,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였으며, 둘째, 적용범위는 당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과 제조업으로 하되, 도입 첫해인 '64년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만 먼저 적용되도록 하였고, 셋째,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고, 넷째, 보험급여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애급여·유족급여·장의비 및 일시급여 등 6가지로 하고, 다섯째, 자문기구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두어 보험사업의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는 것이었다.

이후에도 산재보험제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러차례 개선되면서 현재까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는 사회보험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제 2 장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발전

제 1 절 산재보험 목적사업

산재보험법을 제정할 당시 법의 목적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재해보상을 대신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는 것이었고 보상 수준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수준이었으나, '86년에는 보험사업 목적에 재해예방사업과 기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99년에는 산재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추가함으로써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전 예방·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였다.

제 2 절 적용 및 징수

1.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산재보험 적용범위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 사업의 위험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은 적용제외 하고 있다.

산재보험이 처음 시행된 '64년에는 적용대상을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나, 그 후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 산재보험 적용업종 확대과정

산재보험을 도입한 지 2년째인 '65년에는 전기가스업과 운수보관업을, '69년에는 건설업, 서비스업·수도위생시설업·통신업을, '82년에는 임업 중 벌목업을, '83년에는 농수산물 위탁

6 제1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관

판매업을 추가하였고 '89년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반드시 가입하도록 법을 개정하였고, '91년도에는 농업·임업·어업·수렵업·도소매업·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개인 및 가사서비스업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 '96년에는 교육서비스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연구 및 개발업을, '98년 7월부터는 금융·보험업을, 2000년 7월부터는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단체까지 확대하였고, '01년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까지 확대하였다.

'04년에는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근거가 마련되었다. 2000년부터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임의가입이 허용되었으나, 그 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보험가입자인 중·소기업 사업주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영업자의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보다 재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영업자도 임의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가입대상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이를 근거로 '05년에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임의가입대상을 자동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을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자로 확대하였다.

〈업종별 적용현황〉

업 종	규 모	가 입 일	신고기간	탈 퇴 일
○금융·보험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사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기타의 사업(수렵업 제외) ○별목업	1인 이상	당연적용에 해당하는 날	14일 이내	사업의 사실상 폐지일 또는 종 료일의 다음 날
○임업(별목업 제외) ○어업 ○농업 ○수렵업	1인 이상 (농업,임업(별목업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	”
○건설업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 사업자, 정보통신공사사업자, 소방시 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330㎡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	공사착공일	”	”

산재보험 가입자는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이며, 적용대상 사업이 아니라도 사업주가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하면 가입할 수 있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계약)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서면계약으로 보험료 납부를 인수하도록 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산재보험 가입자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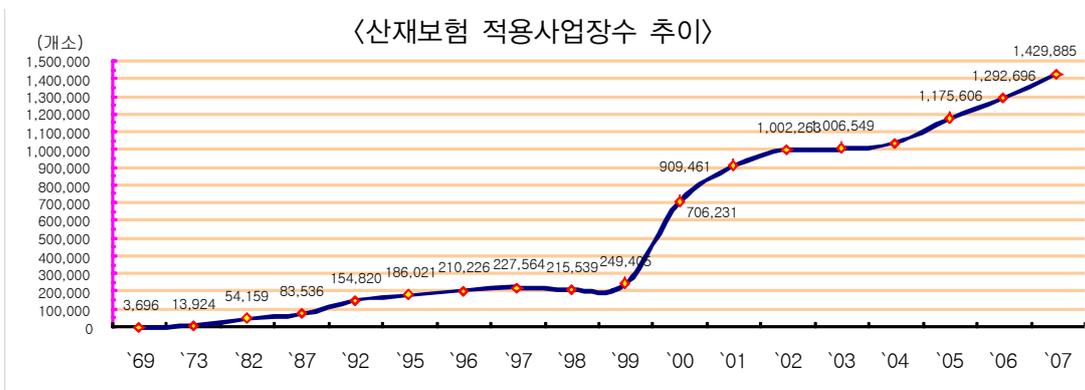
○ 산재보험 적용규모 확대과정

'65년에는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 '66년에는 150인 이상, '67년에는 100인 이상과 건설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은 연인원 25,000인 이상, '69년에는 상시 50인과 연인원 13,000인 이상, '69년 7월에는 건설업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 '72년에는 상시 30인 이상과 연인원 8,000인 이상, '73년에는 상시 16인 이상과 연인원 4,200인 이상, 건설공사는 1,000만원 이상, '76년에는 광업과 제조업중 화학·석탄·석유·고무 및 프라스틱제품 제조업은 5인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82년에는 10인 이상과 연인원 2,700인 이상, 건설공사는 4,000만원 이상 모든 공사로, '86년부터 '88년까지는 업종별로 연차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였다.

'91년부터 확대 적용된 농업 등 7개 업종 가운데 10인 이상은 '91년 7월부터, 5인 이상은 '92년 7월부터 확대 적용하였고, 2000년 7월부터는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고, 건설공사는 2,000만원 이상으로 하였다. '05년에는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에 대하여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을 확대하였다. 또한 '05년부터 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 시공하는 모든 건설 공사에 대하여 확대 적용하였다.

〈산재보험 연도별 적용규모 확대 과정〉

연도	'64	'65	'66	'67	'69	'72	'73	'82	'87	'00.7
적용규모	500인	200인	150인	100인	50인	30인	16인	10인	5인	1인



2. 산재보험 징수제도 변화

수입

산재보험의 재원은 기본적으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충당한다.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이유는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주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여 보상해 줌으로써 재해근로자를 보호하는 한편,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게 하고,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분산시키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주어야 하는 보상을 국가가 대신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라는 측면 때문에, '70년부터는 산재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사무집행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고, '89년에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사업의 사무집행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의무부담제) 하였다.

보험료 납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사업주가 스스로 계산해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고, 납부기간 내에 은행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77년에 보험료 신고기간(30일)과 납부기한(50일)을 60일로 통일하여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를 간소화 하였으며, '94년에는 다시 신고·납부기한을 60일에서 70일로 연장하였고, '05년부터는 매년 3월 31일로 하여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덜어 주었다.

○ 개선보험료

개선보험료는 사업장에서 1년 간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임금총액에 그 업체에 적용될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 일부부터 7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별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종료되는 전날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확정보험료

보험가입자는 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소속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로부터 3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위에서 계산한 확정보험료 산정액이 이미 납부 또는 추가 징수한 개산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공단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할 때에는 납부일 또는 보험료신고서(개산보험료 감액조정신청서, 확정보험료신고서, 특례보험료 재산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후부터 총당 또는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환급 가산금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징수특례제도(부과고지제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개산·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는 대신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업종별·지역별 기준임금으로 분기별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건설업, 별목업, 당해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한 사업 중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사업, 농업·임업·어업 및 부동산 관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 당해연도 직전 보험연도 중에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는 사업은 제외).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는 부과된 특례보험료를 그 다음분기의 중간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징수특례사업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이 되는 날이 보험관계 성립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에 속하는 때에는 보험관계 성립일이 속하는 분기의 특례보험료를 그 다음 분기의 특례보험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특례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은 업종별·지역별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매년 결정·고시한다.

보험료 공제

개산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분기별로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70년부터는 보험가입자가 개산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할 경우 보험료의 10%를 공제하도록 하였다가, '86년부터 공제율 10%가 은행예금 이자율 보다 훨씬 높아 이를 5%로 내렸다.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사업장은 그 사업장이 전년부터 가입되어 있거나 당해연도 7월 1일 이전에 가입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별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은 당해연도의 사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보험료 경감

천재·지변 그 밖의 특수한 사유(화재, 폭발 및 전파 등)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00분의 30을 경감하고, 사업주가 법정 신고 기한내에 개산보험료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전자신고할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각각 5천원 경감(다만, 개산보험료가 10만원 미만 사업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위탁사업장, 중·소기업 사업주 및 자영업자는 제외)하고, 개산보험료 또는 특례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 별로 분기마다 250원씩 경감하고 있다.

한편, 당연가입자로서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한 날이 속하는 당해 보험연도와 그 직전 보험연도를 제외한 이전 보험연도의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면제하고 있다.('09.12.31까지 한시적 운영)

업종별 보험료율

보험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장의 임금총액에 해당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보험료율은 재해율이 유사한 사업의 종류별로 과거 3년 동안의 재해율과 보험급여에 필요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고 있다.

보험료율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text{보험료율}(100\%) = \text{순보험료율}(85\%) + \text{부가보험료율}(15\%)$$

* 순보험료율 = 보험급여지급률 + 추가증가지출률

보험급여지급률이란 매년 9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난 3년 동안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

급여 총액의 비율을 말하며, 추가증가지출률은 그 해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총액에 대하여 연금이나 급여개선 등으로 그 해에 추가로 지급될 보험급여액을 고려하여 조정한 비율을 말한다.

부가보험료율은 보험사업을 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보험료율의 15%이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보험료율이 적용되며,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을 2가지 이상 하고 있을 때에는 첫째,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 둘째, 임금 총액이 많은 사업, 셋째, 매출액이 많은 사업의 순서에 따라 비중이 큰 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개별실적요율

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사업종류에 속하더라도 재해가 많은 사업장이 있고 재해가 적은 사업장도 있는데, 이러한 재해율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재해가 적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불만을 갖게 되고, 재해가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적극적으로 재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64년에 제정하여 '69년부터 개별 사업장의 재해율에 따라 보험료율을 30% 범위 내에서 증가 또는 경감시켜 주는 개별실적요율제도를 시행하였으며, '86년부터 $\pm 40\%$ 로 확대하였고 '97년 8월부터 그 범위를 $\pm 50\%$ 로 확대하여 사업주가 재해예방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산재보험료율의 특례는 ① 매년 9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한 지 3년이 경과한 사업으로서 ②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60억원 이상인 사업과 ③ 건설업과 별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이 7,500인 이상인 계절 사업의 경우 적용된다.

개별실적요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text{개별실적요율} = \text{해당사업종류의 일반요율} \pm (\text{해당사업종류의 일반요율} \times \text{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

수지율이라 함은 과거 3년 동안 보험급여 총액을 보험료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은 첫째인 '69년에는 225개소였으며, '07년에는 33,443개소이다.

〈보 험 료 율〉

(단위 : 개, %)

연 도	'79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사업 종류	59	67	74	67	67	67	67	67	68	64	62	58	59	60	61	61	61	
보험료율 (%)	최저	2	4	5	4	4	5	5	2.5	3	3.5	4	4	4	5	5	6	
	평균	10.8	19.4	22.1	19.4	15.0	15.2	16.8	15.5	16.5	17.6	16.7	14.9	13.6	14.8	16.2	17.8	19.5
	최고	81	286	335	355	351	320	299	258	319	304	319	319	343	408	489	611	522
개별요율적용 사업계수	3,629	11,101	10,834	10,751	11,276	17,481	17,612	17,650	15,415	15,238	16,399	17,474	18,017	18,605	30,925	32,361	33,443	

급여 징수

법정기한 내에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급여징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70년에 법정기한 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또는 보험료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또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다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83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서 재해예방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벌칙이 부과되는데, 산재보험법에서 사업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 급여징수를 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같은 이유로 두 번 불이익을 주는 것이 되었고, 또한 사업주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 급여징수의 사유에서 '보험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삭제하였다.

현재 급여징수 대상으로는 ① 법정 기한 내에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특별급여, 장의비 제외)의 50%를, ② 법정기한 내에 일정비율(50%)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특별급여, 장의비 제외)의 1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두 가지가 있다.

보험사무대행기관

'70년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위탁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실적에 따라 일정한 비용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73년에는 위탁징수대상을 확대하여 밀집사업장, 영세기업체 및 기타 모든 적용사업에 가능하도록 하였다.

'83년에는 보험가입자가 위탁할 수 있는 보험사무의 범위를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등 기타의 보험사무까지 확대하고, 수탁자의 자격은 모든 사업주단체에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주단체로 강화하였으며, 위탁보험가입자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통지와 반환금의 반환을 일괄하여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재보험 사무처리의 간소화 및 이중통지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였다.

'86년도에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대상을 특별법에 의하여 성립된 단체 외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추가하고 '91년도에는 기초징수실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무조합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99년 법개정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대상을 사업주 단체에서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단체에까지 확대하였고, '05년부터는 공인노무사로 등록된 자로서 3년 이상 그 직무를 행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05년 법개정으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를 ① 개산·확정보험료의 신고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사무 ③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의 신고 ④ 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로 하고 있다.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는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이며, '07년 12월 현재 388개소의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인가되어 보험사무를 대행하고 있다.

연 체 금

연체금의 부담률도 은행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점차 인하하였으며, '97년에 법을 개정하여 연체금 징수의 상한제(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경감하였다.

〈연도별 연체금 부담률〉

연도	구분	연체금 비율	연체금 징수 예외
'63. 11. 5.		100원에 1일 8전	- 독촉장 지정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기타 징수금 완납 - 체납액 100원 미만 - 천재지변, 주소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66. 10. 20.		"	- 독촉장 완납 경우 삭제
'69. 11. 10.		"	- 체납액 10원 미만
'71. 1. 1.		100원에 1일 12전	- 체납액 1,000원 미만, 연체금·가산금 체납한 경우
'73. 3. 13.		100원에 1일 7전	- 독촉장 납부기한까지 완납(신설) - 주소 불명하여 공시송달로 독촉한 경우(신설) - 체납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노동청장이 인정한 경우(신설)
'76. 12. 22.		100원에 1일 7전	- 독촉장 완납 경우 삭제
'81. 4. 8.		"	- 연체금 300원 미만
'86. 5. 9.		100원에 1일 5전	- 연체금 1,000원 미만
'91. 4. 11.		"	- 급여징수금 체납한 경우(신설)
'97. 8. 28.		100원에 1일 4전 징수상한제 도입	- 연체금 3,000원 미만
'99. 12. 31.		매 3개월 경과 시 36/1,000 (60월 한도)	"
'05. 1. 1.		매 1개월 경과 시 12/1,000 (36월 한도)	“보험료 징수법” 제정

2000년 7월부터는 일단위 부과방식에서 월단위 부과방식으로 바뀌었으며, 현재는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 징수하며 부과기간은 36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가 산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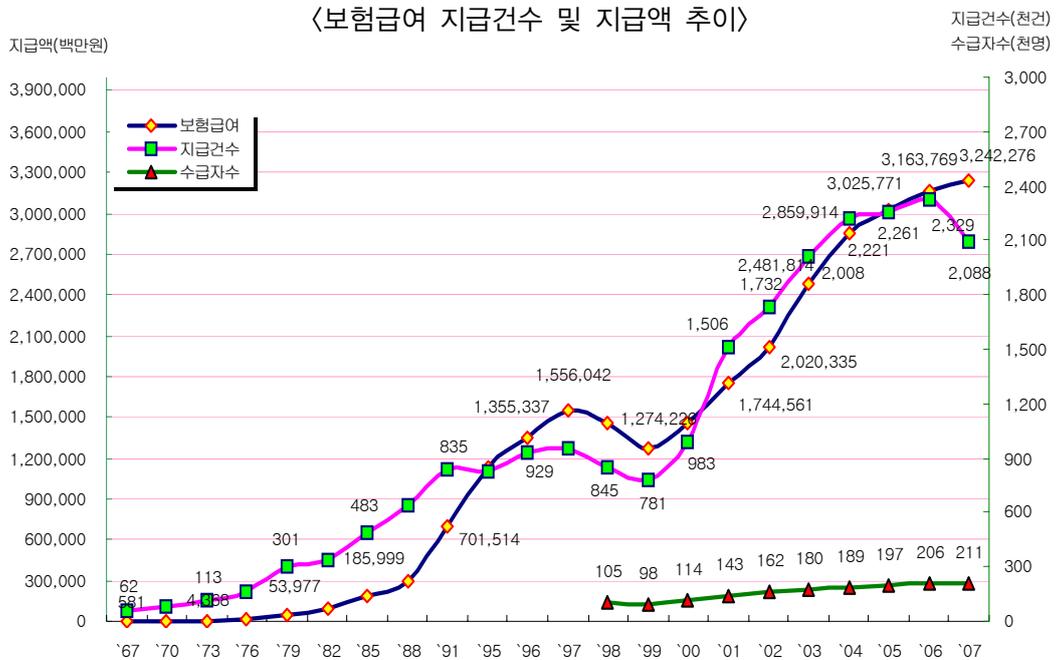
보험가입자가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조사하여 확정보험료를 징수할 때는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며, 확정보험료 조사계획 통지 전에 확정보험료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추가납부액에 대한 가산금의 50%를 경감한다. 즉, 가산금은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을 가진 징수금이다.

제 3 절 요양 및 보상

1.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확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 “업무상 재해”를 종전에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보아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2가지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2요건주의를 취하였으나, '81년 제5차 산재보험법을 개정할 때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하여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근로자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즉 업무상의 재해가 보상 대상이다. 업무란 근로계약을 기초로 하여 형성되는 사용종속적인 근로관계 하에서 근로자가 직무상 행하는 일은 물론이고 그 부속적인 행위를 총칭한다. 업무상 사유란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발생케 한 사유를 말하며,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보상대상이 된다. 즉 업무상 재해 인정의 일반적 기준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작업 중, 작업준비 중, 작업종료 전 후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와 재해 발생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등이다.



2. 보험급여 확대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이에 따른 비용(요양급여)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만약 응급진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험시설이나 지정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이용하였거나 약제구입·간병·이송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요양비를 지급한다. 요양비의 전액을 지급하지만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는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재해보상을 한다.

법 제정 당시에는 업무상 재해라 하더라도 11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다가 '73년 8월 이상, '81년 4월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70년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요양급여의 범위에 진찰,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병, 이송,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였다.

'07년 12월 14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08년 7월 1일부터는 요양급여의 범위에 재활치료가 추가된다.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 1일에 대하여 법 제정 시에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였으나, '89년 4월 1일부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있으며, 노동능력이 일반근로자보다 낮다고 생각되고, 취업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01년부터 휴업급여의 5%를 감액하여 평균임금의 65%를 지급하고 있다.

'07년 12월 14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08년 7월 1일부터는 평균임금의 70%가 당해 연도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 보다 적은 저소득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의 9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하고, 61세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61세부터 매년 4%p씩 감액하여 65세 이후에는 20%p를 감액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또한 현재 휴업급여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 지급되지 않고 있으나, 요양 중 취업이 가능한 산재근로자가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90%를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재요양 기간 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재요양 직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새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재요양 직전에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휴업급여로 지급하게 된다.

장 해 급 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치유 후에도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 때문에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을 보상하기 위하여 장애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더 이상 치료를 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장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법을 제정할 당시 장애급여는 82가지 신체장애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50일분(10급)~1,000일분(1급)을 지급하던 것을, '70년에 법을 개정하여 장애등급을 14등급 129가지 신체장애로 확대하고 장애급여도 50일분(14급)~1,340일분(1급)으로 인상 하였으며, 장애연금제도를 신설하여 장애 3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82년 법 개정 시에는 4급~7급에 대하여도 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금 수준을 12% 인상하였으며, 연금제 정착을 위해 연금수급권자에게 1년 또는 2년분의 연금을 선급할 수 있도록 하게하고, 연금수급권자가 장해보상일시금 보다 적은 연금을 받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89년 법 개정에서는 일시금 수준을 55일분(14급)~1,474일분(1급)으로 10%를, 장애연금을 138일분(7급)~329일분(1급)으로 5%를 각각 인상하였고, 특히, 연금수급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애 1~3급 해당자에게는 연금으로만 수급하도록 하고, 일시적인 자금의 소요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연금의 4년분까지 선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장해보상연금 급여〉

장해등급	'71. 1. 1	'77.12.19	'82.1.1	'89.4.1
제 1 급	평균임금의 240일분 (65.8%)	297일분 (76.4%)	313일분 (85.7%)	329일분 (90.1%)
제 2 급	213일분 (58.3%)	248일분 (68.0%)	277일분 (75.9%)	291일분 (79.7%)
제 3 급	188일분 (51.5%)	219일분 (60.0%)	245일분 (67.1%)	257일분 (70.4%)
제 4 급	-	-	213일분 (58.4%)	224일분 (61.4%)
제 5 급	-	-	184일분 (50.4%)	193일분 (52.9%)
제 6 급	-	-	156일분 (42.7%)	164일분 (44.9%)
제 7 급	-	-	131일분 (35.9%)	138일분 (37.8%)

〈장해보상일시금 급여〉

장 해 등 급	제 정 법	'71.1.1	'89.4.1
제 1 급	평균임금의 1,000일분	1,340일분	1,474일분
제 2 급	800일분	1,190일분	1,309일분
제 3 급	600일분	1,050일분	1,155일분
제 4 급	500일분	920일분	1,012일분
제 5 급	400일분	790일분	869일분
제 6 급	300일분	670일분	737일분
제 7 급	200일분	560일분	616일분
제 8 급	150일분	450일분	495일분
제 9 급	100일분	350일분	385일분
제 10 급	50일분	270일분	297일분
제 11 급	-	200일분	220일분
제 12 급	-	140일분	154일분
제 13 급	-	90일분	99일분
제 14 급	-	50일분	55일분

장애등급은 신체장애의 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장애를 부위별(장애부위)로 나누고, 다시 기능에 중점을 둔 여러 종류의 장애군(장애계열)으로 나누어 이를 노동능력의 상실정도에 따라 일정한 순서로 배열(장애서열)하고 있다.

'07년 12월 14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08년 7월 1일 이후에 치료가 끝나 장애보상연금을 받는 자 중에서 장애 상태가 호전 또는 악화될 여지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장애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장애등급 재판정을 실시하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간 병 급 여

간병급여는 요양을 종결한 근로자가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중증장애자를 보호하기 위해 '99년에 신설하여 2000년 7월 시행되었는데, 상시간병급여와 수시간병급여가 있다.

상시간병급여는 ①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애가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②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애가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함께 그 외의 부위에 장애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에게 지급한다.

수시간병급여는 ①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애가 장애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②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 장애외의 장애가 장애등급 제1급(조정장애 포함)에 해당하는 자, ③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애가 장애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함께 그 외의 부위에 장애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 ④ 두 손의 손가락을 잃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수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⑤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에게 지급한다.

하지만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이 들지 않거나 실제 간병비용이 간병급여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한다.

상시 간병급여는 요양종인자의 간병과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수시 간병급여는 상시 간병급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간병급여 고시금액〉

적 용 기 간	상 시 간 병	수 시 간 병
'00. 9. 1 ~ '01. 8.31	26,000원 / 1일	17,340원 / 1일
'01. 9. 1 ~ '02. 8.31	29,000원 / 1일	19,330원 / 1일
'02. 9. 1 ~ '03. 8.31	31,000원 / 1일	21,270원 / 1일
'03. 9. 1 ~ '04. 8.31	33,600원 / 1일	22,400원 / 1일
'04. 9. 1 ~ '05. 8.31	34,977원 / 1일	23,318원 / 1일
'05. 9. 1 ~ '06.12.31	37,420원 / 1일	24,940원 / 1일
'07. 1. 1 ~ '07.12.31	38,240원 / 1일	25,490원 / 1일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산재보험법 제정 시에는 일시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71.1.1부터 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수급권자가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99년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반드시 연금으로만 지급하되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연금과 일시금을 각각 50%씩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족보상일시금은 산재보험법 제정 시 평균임금의 1,000일분을 지급하였으나, '89년 법 개정으로 '89.4.1부터 1,300일분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다.

유족보상연금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하여 '71.11.19부터는 최고 연소득의 45%, '78.2.13부터는 연소득의 60%, '82.6.14부터는 연소득의 67%로 급여 수준이 인상되었다.

'05년 현재 유족보상연금의 경우 기본금액으로서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의 47%에 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5%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합산 액은 급여기초연액의 67%를 넘지 못한다.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유족보상연금 급여 수준〉

수급자격자수/시행일	'71.11.19	'78.2.13	'82.6.14
기본금액	25%	40 %	47 %
1인	연소득의 30%	50 %	52 %
2인	35%	50 %	57 %
3인	40%	55 %	62 %
4인	45%	60 %	67 %

유족은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하며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로서 처, 60세 이상인 남편, 부모, 조부모 및 18세 미만인 자녀, 손자녀 그리고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자매이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제2급 이상의 남편, 부모, 조부모, 자녀, 손, 형제자매는 연령에 관계없이 수급자격이 있다('04.12.31 개정). 유족보상 일시금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데 유족 중 선순위자가 수급권자가 된다.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 순으로 하되, 이 중 근로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이 선순위가 된다.

한편 '70년부터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자의 생사가 3개월 이상 불명한 경우 등에는 민법의 실종선고 절차에 관계없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사망의 추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 의 비

장의비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법 제정 당시에는 평균임금의 90일분이었으나 '89.6.1.부터 평균임금의 120일분으로 인상하였고, '99년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최고·최저금액을 설정하여 120일분이 최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금액으로, 120일분이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장의비 고시금액〉

적 용 기 간	최 고	최 저
'00. 7. 1 ~ '00. 8.31	8,599,940원	5,638,130원
'00. 9. 1 ~ '02. 8.31	8,599,940원	5,755,730원
'01. 9. 1 ~ '02. 8.31	8,904,939원	6,022,419원
'02. 9. 1 ~ '03. 8.31	9,264,595원	6,279,595원
'03. 9. 1 ~ '04. 8.31	9,932,840원	6,669,440원
'04. 9. 1 ~ '05. 8.31	10,360,275원	7,078,875원
'05. 9. 1 ~ '06.12.31	10,814,947원	7,525,147원
'07. 1. 1 ~ '07.12.31	11,176,020원	7,867,410원

상병보상연금

'64년 산재보험법 제정당시에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되었으나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평균임금의 1,000일분에 상당하는 일시급여를 행하고 모든 보험급여를 종료하는 일시보상제도를 시행하였으나, '82년 일시보상제도를 폐지하고 상병보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산재근로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료가 되지 않아 병의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고(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애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가 재요양을 한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후 2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 그 부상 또는 질병 상태가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82년 도입 당시에는 폐질 등급이 1~3급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업급여 60% 대신 평균임금의 313(폐질 1급)~245(폐질 3급)일분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산업재해로 인하여 치료를 시작한 후 3년이 경과한 뒤에도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장기요양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89년에는 급여수준을 평균임금의 연 329(1급)~257일분(3급)으로 높여 '89년 4월 1일부터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99년 법개정('00.7.1 시행)에서는 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7%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상 병 보 상 연 금〉

폐 질 등 급	상병보상연금
제 1 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제 2 급	평균임금의 291일분
제 3 급	평균임금의 257일분

직업재활급여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사업은 산재장해자가 새로운 직업탐색·직무전환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과 산재장해자가 원직장에 복귀하는 경우 당해 사업주를 지원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재활운동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86년 7월 1일부터 동 사업이 신설되어 수행하고 있으나 주로 현금보상위주의 예산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07년 12월 14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08년 7월 1일부터는 현금보상위주의 급여 체계를 개선하고 요양과 재활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직업재활사업을 법정 급여화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08년 7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의 70%를 지급하던 훈련수당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게 되고, 직장복귀지원금은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근로자를 고용·유지 시 12개월을 한도로 지급하되,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범위에서 실제 지급한 임금액으로 지급하게 되는 등 장해근로자의 재취업 및 원직장 복귀 등 직장복귀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해·유족특별급여

'70년에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수급권자인 유족이 보험가입자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때 유족급여 외에 평균임금의 1,000일분을 유족특별급여로 더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족특별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유족과 보험가입자인 사업주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였다.

'82년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종전에는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요건으로 유족

특별급여를 지급하던 것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요건을 변경하고, 장해 1~3급의 중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도 유족특별급여와 같이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별급여액의 수준도 라이프니츠계수를 적용한 민사배상액 수준으로 높여 소송을 하지 않고도 민사상 손해배상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하였다.

보험급여 수급권 보호

산재근로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법에서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사상 강제집행이나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해서도 압류할 수 없다. 2000.7.1.부터는 그동안 운영되어 왔던 가족에 의한 위임수령제도가 폐지되었다. 또한 보험가입자에 의한 위임수령제도도 폐지되고, 대신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미리 지급한 경우 그 범위 안에서 보험가입자에게 수급권을 대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수령받기 전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수급권자의 유족을 보호하고 보험급여 수급권자와 관련된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 지급받지 못한 보험급여를 유족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73년에 산재보험법에 명시하였다. '76년에는 산재근로자나 그 유족의 보험급여 청구 소멸시효기간을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의 시효규정에 맞추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다.

종래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휴업급여의 30%를 제한하던 것을 생활급인 휴업급여를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지급을 제한한다면 산재근로자의 생활유지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78년에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제한규정을 폐지하였다.

최고보상기준

사회보험급여는 사회적 최저기준을 보장하면서 재해발생 이전의 임금이 일정수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보장 수준을 제한하여 사회적 형평성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경우 최고한도가 없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간의 평균임금 격차가 클 경우 지급받는 보험급여의 격차도 커서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수급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0년 7월 1일부터 최고보상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다. 다만,

2000년 6월 30일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 부칙 제7조에 경과규정을 두어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여 급여의 급격한 저하를 방지하였다. 최고 보상기준금액 결정은 매년 과거 3년간의 전근로자의 임금수준, 계층별 임금분포비 및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최고보상기준금액의 적용기간은 종전에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 적용하던 것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의 적용기간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05년 시행령을 개정하여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시금액 산정 시 고려되는 임금계층별 분포비가 특정되지 않아 매년 변경되는 등 기준이 가변적이라는 논란이 있어, '08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 수준으로 설정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최고보상기준금액은 '00.7.1~'01.8.31까지는 122,807원(1일), '01.9.1~'02.8.31까지는 127,084원 (1일), '02.9.1~'03.8.31까지는 133,070원(1일), '03.9.1~'04.8.31까지는 145,800원(1일), '04.9.1~'05.8.31까지는 151,249원(1일), '05.9.1~'06.12.31까지는 155,360원(1일), '07.1.1~'07.12.31까지는 157,220원(1일)이다.

최저보상기준

보험급여 중 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의비 등은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법에서 정한 급여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데, 저임금 근로자는 본인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보험급여액이 너무 적어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 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보상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해 주기 위해 '77년부터 최저보상기준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77년에는 평균임금이 아주 낮은 산재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 않고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계산하였으나, '89년에는 최저임금법에 의해 결정되는 최저임금의 조정률을 기준으로 매년 최저보상기준을 책정하도록 개정하였다.

최저보상기준을 적용하는 보험급여는 유족급여, 장의비, 장해급여이다. 휴업급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상병보상연금은 '87년부터 '93년까지 적용하였으나, '95년 5월부터는 적용제외하고 최저임금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최저보상기준금액의 적용기간도 '05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의 적용기간에 맞추어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다.

최저보상기준 금액 설정 기준은 전년도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전년 대비 조정률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최저보상기준 금액의 설정 기준이 없고 적정수준 여부에 논란이 있어, '08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최저보상기준 금액을 전체근로자 임금의 평균액의 1/2 수준으로 설정하는 등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최저보상기준금액은 '94.1.1~8.31까지는 16,331원, '94.9.1~'95.8.31까지는 17,609원, '95.9.1~'96.8.31까지는 19,188원, '96. 9.1.~'97.8.31까지는 21,068원, '97.9.1~'98.8.31까지는 22,353원, '98.9.1~'99.8.31까지는 22,956원, '99.9.1~'00.8.31까지는 24,080원, '00.9.1~'01.8.31까지는 28,000원, '01.9.1~'02.8.31까지는 31,000원, '02.9.1~'03.8.31까지는 33,570원, '03.9.1~'04.8.31까지는 37,020원, '04.9.1~'05.8.31까지는 41,869원, '05.9.1~'06.12.31까지는 45,700원, '07.1.1~'07.12.31까지는 46,933원이다.

〈연도별 최저보상기준〉

구 분	금 액(원)	적 용 금 여	비 고
'81	5,000(2,800)	유족·장의(장해)	
'82	6,000(3,400)	" (")	
'83	6,600(4,000)	" (")	
'84	6,600(4,800)	" (")	
'85	6,600(5,800)	" (")	
'86	6,600	유족·장의·장해	○ '86.11.1(예규 제128호)
'87	6,790	유족·장의·장해·상병보상연금	최저보상기준책정요령 제정
'88	7,536	유족·장의·장해·상병보상연금	○ '89.12.27(예규제169호)
'89	9,227	"	최저보상기준책정요령 개정
'90	10,611	유족·장의·장해·상병보상연금	
'91	12,350	"	
'92	13,930	"	
'93	15,127	"	
'94.1~'94.8	16,331	유족·장의·장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94.9~'95.8	17,609	"	제4항('94.12.22)
'95.9~'96.8	19,188	"	○ 상병보상연금 제외
'96.9~'97.8	21,068	"	
'97.9~'98.8	22,353	"	
'98.9~'99.8	22,956	"	
'99.9~'00.8	24,080	"	

<표 계속>

구 분	금 액(원)	적 용 급 여	비 고
'00. 9~'01. 8	28,000	유족·장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 제2항(장의비 최고·최저 금액)
'01. 9~'02. 8	31,000	"	
'02. 9~'03. 8	33,570	"	
'03. 9~'04. 8	37,020	"	
'04. 9~'05. 8	41,869	"	
'05. 9~'06.12	45,700	"	
'07. 1~'07.12	46,933	"	

최저임금액 적용

'95.5.1부터 휴업급여와 상해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였으나, '00.7.1부터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진폐 등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 인정

'82년 제6차 개정 시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경우 진폐가 발견된 시점에서는 결근, 작업 능률저하 등으로 임금이 낮아져 결국 이를 기초로 보험급여를 계산하면 보험급여가 낮아져 제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으므로 평균임금이 적정하게 산정되도록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하였다.

즉, 근로기준법에 의해 산정한 평균임금과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임금을 그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며, 소속사업장의 휴·폐업이나 당해근로자가 퇴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였다.

'91년 12월 12일부터는 진폐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질병 중 업무상 부상에 따른 질병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도 특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임금변동 순응률제

보험급여는 산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기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임금을 토대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보험급여를 장기간 지급받는 수급권자는 최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면 현재의 임금과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된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입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수준을 보전해 주기 위해 '77년 12월 19일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모든 보험급여에 평균임금을 인상해 주는 임금변동 순응률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피재근로자와 동일 사업장의 동일 직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5%를 초과하여 변동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개정하여 이를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로 한다.

다만, 1994년 11월 9일부터는 보험급여 중 장해·유족연금수급자, 휴·폐업사업장 재해근로자, 퇴직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의 증감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전근로자의 월평균 정액급여액을 기초로 다음 산식에 의거 산정한 비율에 의한다.

$$\text{전회의 평균임금액} \times \frac{\text{2년 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1년 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의 전 근로자의 월 평균 정액 급여}}{\text{3년 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2년 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의 전 근로자의 월 평균 정액 급여}}$$

'07년 12월 14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08년 7월 1일 이후에는 재직·퇴직 구분없이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전체근로자의 평균임금액의 증감률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60세(매5년마다 1세씩 추가하여 2033년 이후에는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증감하도록 하였다.

〈임금변동 순응률제 실시〉

적용대상 및 급여	시행기간	적용기준
미적용	'64~'73	
휴업급여	'74.1.1~'76.12.21	임금 20% 인상시 적용
휴업급여 장해보상연금 일시급여	'76.12.22~'78.2.12	상동

<표 계속>

적용대상 및 급여	시행기간	적용기준
휴업급여 장해급여(일시금, 연금) 유족급여(일시금, 연금) 장의비 일시급여	'78.2.13~'83.8.5	임금 10% 인상시 적용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일시금, 연금) 유족급여(일시금, 연금) 장의비	'83.8.6부터	임금 5% 인상시 적용

* '94년 11월 9일부터 장해·유족연금수급자, 휴·폐업사업장 재해근로자, 퇴직근로자에 대하여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전 근로자의 1년 간 평균 정액급여 변동률을 적용

3. 요양제도 개선

의료기관 지정

산재근로자는 우선 보험자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아야 한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제도는 '64년 7월 산재보험제도 도입과 함께 시행되었으며 '75년 노동사무소별로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권자를 노동청장에서 지방사무소장으로 바꾸었고 근로자 및 사업장수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의 수를 제한하였다가 이 제한제도를 폐지하였다.

일반 의원 급의 경우 처음에는 진찰실·입원실·수술실·임상병리시설·방사선진단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지정이 되었으나, 진료가 전문적이고 좋은 질을 갖도록 하고 관리가 효율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대구시·대전시·인천시·광주시에서는 의료법 제3조 제5항에 의한 의원 중 일반외과·내과·정형외과·흉곽외과·신경외과·신경정신과·성형외과·피부과·결핵과·이비인후과·안과의 전문과목을 가진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이나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으로서 최근 1년 간 종합소득세를 30만원 이상 낸 적이 있을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읍·면사무소가 있는 곳에 지정의료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그 지역의 가업사업장과 근로자수를 고려하여 요양담당 의료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82년 4월 1일부터는 전문과목 여부에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의원 및 치과의원은 지정을 신청하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의료기관지정제도를 운영하여 온 결과 일부 산재요양담당 의료기관에서는 산재환자를 일반 환자보다 장기간 입원시키는 등 산재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산재환자를 의료서비스보다는 경영수지 개선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92년 11월 25일부터는 그동안 일반의 개설의원도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의료법 제55조에 따라 전문의가 개업한 의원만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였다가 '95년 8월부터는 다시 의료법 제32조에서 정한 의료기관 시설기준 등만 갖추면 지정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05년 7월 25일부터는 합리적인 요양 서비스 및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의 적정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산재근로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능력 향상을 기하였으며,

'08년 2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관리를 체계화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종별 지정기준을 세분화 하였다.

또한, '07년 12월 14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08년 7월 1일부터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 시설, 의료서비스 그 밖에 요양의 질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으로 우대하거나,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입법화 함으로써 산재근로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질을 한층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진료수가

지정의료기관의 산재환자에 대한 진료비용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하되, 산재환자에게 추가로 인정하는 수가는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산정기준으로 고시하고 있다. 산재보험을 시행할 당시에는 의료기관등급을 서울지역 대학부속병원(A), 지방대학부속병원(B), 서울지역기타종합병원(C), 지방기타종합병원(D), 일반의원(E), 사업장부속의원(F)의 6개 등급으로 나누어 의료기관 등급별로 진료수가를 다르게 하고, 각 등급별로 의료기관이 요구하는 치료비 등의 중간 수준을 그 등급 의료기관에게 적용할 진료수가 기준으로 하였다.

'74년 3월에는 진료수가등급을 A·B·C·D·E·F 6등급에서 자체수가·1급·2급·3급·

4급의 5등급으로 조정하였고, '76년 1월 1일부터는 자체수가·갑수가·을수가의 3개 등급으로 바꾸었으며, '77년 7월 1일 이후는 산재보험 진료수가 중 의료기관등급, 진료수가산정단위, 약가, 기본진료비, 종합병원급 행위진료비 등을 의료보험 진료수와 비슷하게 부분적으로 통일하였으며,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행위진료비는 25~38%를 낮게 하여 적용하였다.

'78년 1월 1일 이후에는 병·의원급 행위진료비에 대한 산재보험 진료수가를 의료보험 진료수와 같게(종합병원 자체수가인정은 예외)하였으며, '78년 2월 13일에는 종합병원(국·공립 의료기관)에게 인정하던 자체 수가를 없애고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과 같게 적용하였다.

'80년 3월 1일 이후에는 산재입원환자에 대한 입원관리료 체감제 적용기간을 의료보험 기준보다 완화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입원관리료의 20%를 체감하는 입원기간을 16~30일에서 35~100일로 하였고 입원관리료의 30%를 체감하는 입원기간을 31일 이상에서 101일 이상으로 개정하고 또한 머리부분에 상처를 입었을 때 일반검사방법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중환자의 신속한 진단을 위해 컴퓨터 단층촬영(CT)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다.

'81년 8월 1일 이후에는 영양식을 신설하였고, '96년 3월 20일 이후에는 산재입원환자에 대한 입원관리료를 체감하는 기간을 보다 완화하여 입원료의 20%를 체감하는 입원기간을 51~150일로, 30%를 체감하는 입원기간을 150일을 넘는 기간으로 하였으며, 컴퓨터단층촬영이 '96년 1월 1일부터 의료보험에서 급여로 처리됨에 따라 산재보험에서는 자기공명영상에 의한 촬영(MRI)을 머리, 척추에 대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추가로 인정하였고, '99년 8월 4일부터는 MRI를 무릎관절부위까지, MRI 사진을 판독할 수 있는 방사선과 전문의가 있는 모든 의료기관까지 할 수 있게 하였다.

'00년 8월 19일부터 치과 보철을 1회에서 2회로 늘렸고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를 인상하고 그 종류도 확대하였으며 병원등급별로 세분화하였다.

'01년 10월 6일부터는 의지·보조기 지급방법을 개선하고 통합 재활프로그램을 신설, 식대 인상,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지급범위 확대, 종합 전문요양기관의 입원료 인상, 2회째 치과 보철의 5년제한 삭제, 눈·시신경 등 눈과 관련된 부위에 대한 MRI 촬영 확대, 초음파 검사의 doppler 인정, CT MRI 필름의 복사수수료가 신설되었다.

'01년 12월 29일부터는 의지·보조기 등 재활보조기구의 내구연한을 정해 평생 2회만 지급 하던 것을 횟수 제한 없이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추가로 지급하거나 수리시마다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던 절차를 폐지하였다. 또한 MRI 촬영시 척추분절 7구간 이상 추가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종합병원에 대한 MRI 필름 판독료를 신설하였다.

'02년 4월 25일부터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기간을 제한하고 지급기간 중에는 비용을 체감시키는 의약품관리료를 제한 없이 지급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급여 약제중 산재환자 진료에 필요한 333개 항목을 별도로 산재보험 급여항목으로 고시하였다.

'03년 12월 30일부터 일반식대 1식 4,110원, 영양식대 1식 4,930원으로 지급하던 것을 일반식대 1식 4,370원, 영양식대 1식 5,240원으로 상향 고시함으로써 요양환자의 식사 질을 향상시켰다.

'05년 1월 31일부터 종전에 건강보험의 비급여 대상이었던 자기공명영상(MRI)진단이 요양급여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MRI 촬영의 산정지침 및 촬영료를 삭제하였고,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환자에 대한 MRI 진단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규정하였다.

'06년 3월에는 MRI 급여로 견관절, 고관절 손상 및 질환을 추가 인정하고 건강보험 관련 규정 개정으로 산재보험 추가 인정 항목이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 시 그때부터 건강보험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건강보험 연계 규정을 신설하였다. 치과 수가도 건강보험 수가인상을 반영하여 인상하였고 치과보철 중 도재전장주조관(비귀금속) 수가를 신설하였다. 재활보조기구는 건강보험 급여품목(77개)은 건강보험 기준을 적용하고, 산재보험은 건강보험 비급여품목(81개)만 별도 고시하고 추가 지급기준 개선 및 치료 중 지급대상을 확대하였고 재활보조기구 37개 급여품목을 확대하였다. 초음파검사 수가를 '01년 10월 이후 건강보험 수가인상율을 반영하여 9.49% 인상하였다. 또한 보험급여 관련 진단서 및 확인서를 복합 상병으로 장해진단서 발급 시 전문과목별로 각각 산정하고 상병보상연금청구서 확인서(자동지급), 타의료기관 MRI 판독료(건강보험급여에 포함) 수수료는 삭제하였다. 산재보험 별도 고시 약제(333개 품목)는 실태조사 결과 급여정지, 생산중단, 유효기관 경과품목 다수이고 일반의약품으로 건강보험에서 대체품목이 존재하므로 삭제하였다.

'07년 3월에는 화상 피부제품의 요양급여 범위를 확대하여 중증 화상환자의 생명유지 등 진료상 필요한 화상 피부제품(배양피부(약제) 2품목, 동종피부(치료재료) 2품목)을 급성기 치료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부위 1회에 한하여 인정하였다.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범위를 확대하여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로 인정(최초·전원요양 초진 요건 삭제)하였다. 또한 재활보조기구 품목을 확대하고

기준을 개선하였는데, 재활보조기구 처방·검수료를 신설하였고 수가수준은 재진진찰료 수준으로 하되, 의지(미관형제외)는 처방·검수에 따른 난이도 등을 고려 2배로 산정(목발, 지팡이, 흰지팡이, 수리료는 산정 제외)하였다. 활동형 휠체어를 재신설(종전 바퀴분리형)하고 근전전동 의수 수리료를 신설(소켓, 배터리교환) 하였다. 근전전동 의수 처방 의료기관 및 전문의 요건을 강화하고 지급대상을 구체화(재활의지 및 연령 등을 고려 필요한 경우)하였다. 욕창예방제품 제품요건(압력기준)을 규정하고 재활공학연구소를 통한 등록제를 도입하였다. 한편 재활보조기구 제품수준, 유통가격 등을 고려하여 수가 수준의 합리적 조정 및 명칭개선(한글), 고시내용을 개편하였다. 대퇴절단 의지(공압·유압식, 인공지능식) 4종은 인상하였고, 욕창예방매트리스, 수리료 2종은 인하하였다. 그리고 이송비 지급기준을 신설하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이송비 세부 산정지침을 요양급여 산정기준으로 상향 규정하였다. 가정산소치료 급여 범위도 확대하여 건강보험 급여품목인 가정산소치료를 산재보험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진폐환자는 지침에 의하여 급여중)하였다. 산재보험 별도 인정 항목의 수가도 인상하였는데 치과보철, 통합재활훈련, 초음파, 확인수수료를 건강보험 수가인상율(2.3%)을 반영하여 수가 인상하였다.

〈표 4-3〉 우리나라 산재보험 진료수가의 변화

연 도	내 용
시행당시	· 의료기관 등급별 6개등급(A, B, C, D, E, F)으로 차등 진료수가 적용
1974. 3	· 수가등급을 A, B, C, D, E, F에서 → 자체수가, 1급, 2급, 3급, 4급, 5급으로 조정
1976. 1	· 수가등급을 자체수가, 1급, 2급, 3급, 4급, 5급에서 → 자체수가, 갑수가, 을수가 등 3등급으로 조정
1977. 7	· 산재보험 수가 중 일부를 의료보험진료수가에 준하여 부분통일 · 병·의원급 행위진료료 하향조정
1978. 1	· 병·의원급 행위진료료를 의료보험과 동일수준으로 조정
1978. 2	· 종합병원의 자체수가 인정폐지
1980. 3	· 입원관리료 체감제 적용기관 완화 · 두부손상시 CT 인정
1996. 3	· 입원관리료 체감제 적용기관 완화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MRI 인정
1999. 8	· 슬관절 부위 MRI 인정

〈표 계속〉

연 도	내 용
200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급병실료 인정요건 완화 및 입원료 별도 가산율 인상 · 식대 인상 · MRI및초음파촬영 인정범위 확대 · CT 및 MRI필름 복사수수료 인정 · 치과보철 및 의지보조기 수가수준 현실화 및 품목 확대 · 보행훈련료 삭제 및 통합재활프로그램 신설
200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지보조기 지급횟수 현실화 · MRI 인정범위 확대 및 MRI판독료 신설 · 휴업급여확인청구서 수수료 삭제
2002.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제지급범위 확대 ·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폐지
2003.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재활프로그램 인정요건 개정 · 식대 인상
2005.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RI 건강보험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어 산재보험 MRI 산정기준 신설
2006.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RI 급여범위 확대(견관절, 고관절 손상 및 질환 추가 인정) · 초음파검사 수가 인상 · 보험급여 관련 확인서·진단서 수수료 정비 · 산재보험 별도 고시 약제(333개 품목) 삭제 · 재활보조기구 적용방법 변경 및 품목 확대 · 건강보험 연계 규정 신설 · 치과보철 수가 신설 및 인상
2007.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상 피부제품 요양급여 범위 확대 ·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범위 확대 · 재활보조기구 품목 확대 및 기준 개선 · 이송비 지급기준 신설 · 가정산소치료 급여 범위 확대 · 산재보험 별도 인정 항목 수가 인상

후유증상 관리제 운영

후유증상 관리제도는 산재근로자가 치료종결 후 증상이 고정되었거나 상병 또는 장애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후유증상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99년 산재보험법 제45조의2를 신설하여 '0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당초에는 후유증상 관리대상 상병을 11가지로 선정하여 시행하였으며, '01년 7월부터는

진폐의 병형이 1형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폐장해에 따른 후유증상, 장애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휠체어 등 보호 장구를 수리하거나 장착하는 데 따른 처리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상 상병을 17가지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많은 산재근로자들이 상병의 재발 또는 악화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05년에는 공단 후유증상진료규정을 개정하여 상병의 종류별로 후유증상 관리 대상 장애 등급을 설정하고, '경건완증후군에 따른 후유증상'을 의학용어 사용례에 따라 '진동장해에 따른 후유증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진폐증의 진찰 회수를 기존 "3개월에 1회"에서 "1~3개월에 1회"로 개정하되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 동통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료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또한 후유증상의 진료기간은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을 허용하였다. 그 외에도 진료비 및 약제비의 심사·이의심사·실사 및 의료기관 제한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07년에는 후유증상관리업무처리규정 5차 전문개정을 통해 2006년도 "후유증상상병재분류"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뚜렷한 분류기준이 없는 17종 후유증상을 진료과목 중심의 14종으로 재분류하고, 추상적인 진료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제 4 절 재활 및 복지

1. 산재보험 재활사업

가. 산재보험 재활정책의 의의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1963년에 법이 제정되어 1964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의료보험('77. 7. 1), 국민연금('88. 1. 1.) 및 고용보험('95. 7. 1)에 앞서 시행된 최초의 사회보험으로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 신속·공정한 보상을 하는 것과 아울러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나. 산재보험 재활정책의 가치이념

산재보험 재활정책은 다음의 3가지 가치이념을 지닌다.

첫 번째 가치이념은 사회통합으로서, 산재로 인해 장애를 입게 된 근로자의 재활은 이들에

대한 의료적 치료나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성취 될 수 없으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통합을 전제로 할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짐. 따라서 산재장애인에 대한 재활정책의 방향은 산재발생 이후 이들이 가정, 직장, 사회에 재통합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두 번째 가치이념은 삶의 질 향상으로서, 최근 장애인 재활분야에 있어 중요한 이슈는 삶의 질 향상이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경제개발 위주로부터 인본주의적이고 총체적인 시각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따라서 산재장애인의 재활 역시 개개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세 번째 가치이념으로써 생산적 복지의 구현을 들 수 있다. 최근 복지정책의 기초는 생산적 복지의 구현으로 표현되는데, 생산적 복지는 노동을 통한 복지로서 단순히 시장의 성과만을 재분배하는 제도를 넘어 고용을 통한 분배를 전제하고 있다..

산재보험 재활정책은 순수한 복지적인 측면 이외에 산재근로자가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노동정책의 측면을 고려, 직업생활로의 복귀는 산재장애인이 단지 주어진 복지혜택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 머물러 있기보다는 독립적인 생산 활동 주체로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존재로서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산재장애인의 사회통합이나 삶의 질 향상은 제공 위주의 보험급여와 복지제공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생산적 활동을 통한 적극적 사회활동 및 참여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며 이에 따라 총체적인 장애가 극복될 수 있다.

다. 재활의 각 분야

재활은 재활대상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의료재활, 심리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의 4가지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의료재활은 장애인 재활의 기초로서 일상생활동작의 일부를 상실하였을 때 이를 육체적 측면 뿐만 아니라 정신적·육체적·직업적 측면에서도 장애인이 성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으로 올려줌으로써 그들이 보람되고 생산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심리재활은 장애인이 갖는 공통적인 심리적 고통은 자기 신체 일부에 장애가 있음으로써 정상인과 같이 활동할 수 없다는 생각과 함께, 사회 일반인의 편견으로 인한 사회적 열등감에 처해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심리재활”이란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행동제한의 지각이나 신체상의 부상, 인간관계의 긴장, 불안감, 열등감, 욕구불만, 내향성 등의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장애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가능성을 찾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직업재활은 산재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과 직종을 확보하고 그것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직업훈련, 직업지도, 취업알선, 사회적 수용과 이해증진 등을 통해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개별성·현실성·전문성·포괄성·신축성·계속성 등이 그 특징이다.

넷째, 사회재활은 산재장애인의 사회생활 및 가정생활 등의 적응을 원조하고 사회통합 내지는 재결합을 목표로 한다. 즉 장애인의 의학적·직업적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 적응에 지장을 주는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2. 보험시설의 확충

'70년 12월 31일 산재보험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제18조(보험시설)를 신설하여, 보험사업에 필요한 의료·요양 및 직업재활 등을 위한 시설과 재해예방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산재보험법 제78조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요양 또는 외과 후 처치에 관한 시설과 의료재활 또는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1년 9월 7일 산업재활원이 가장 먼저 보험시설로 세워져 '73년 4월 10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 '74년 8월 12일 재단법인 “한국근로복지공사”가 설립되고, '75년 1월 1일 대한석탄공사에서 운영하던 180병상 규모의 장성병원을 한국근로복지공사에서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76년 12월 22일 “근로복지공사법”을 제정하여 '77년 6월 2일 재단법인 한국근로복지공사를 없애고 법정자본금 10억원 규모의 특수법인체인 “근로복지공사”를 설립하였으며, 보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법정자본금을 '79년에 200억원, '82년에 1,000억원, '91년에는 2,000억원으로 증액하였다.

근로복지공사는 '78년 7월 22일 광산지역 진폐환자의 진료를 전담하기 위하여 50병상 규모의 장성규폐센터를 설립하였고, '79년 7월 4일에는 300병상 규모의 산업재활원을 인수하였으며, '79년 7월 27일에는 200병상 규모의 창원병원을, '83년 2월 28일에는 300병상 규모의 인천중앙병원을, '83년 5월 3일에는 진폐환자 전문치료병원인 동해병원을, '85년 5월 21일에는 100병상 규모의 반월병원과 장애가 심한 근로자에게 작업환경을 만들어 주고 기능을 습득하여

사회복귀 후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100명 수용규모의 작업훈련시설인 반월재활작업소를, '85년 5월 24일에는 200병상 규모의 순천병원을, '85년 6월 13일에는 치료종결 단계에 있는 환자의 휴양과 사회복귀 촉진을 도와주는 150병상 규모의 화성요양원을 개원하였다.

또한 진폐전문시설인 장성규폐센터를 '88년 10월 13일 5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확충하였으며, '88년 11월 30일 200병상 규모의 진폐전문 정선병원을 개원하였다. '89년에는 당초 '36년 삼척탄좌개발(주) 부속병원으로 세워져 노후한 180병상 규모의 장성병원을 현대식 설비를 갖춘 380병상 규모(규폐센터 180병상 포함)의 태백지역 유일의 종합병원으로 확충함으로써 산재환자는 물론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91년 7월 23일에는 중부권 산재근로자의 치료·재활 및 보호 장구 연구시설로 250병상 규모의 대전중앙병원을 건립하였고, 산재근로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00병상으로 운영하던 반월병원을 200병상으로 증축하였고, '93년 5월 31일에는 200병상인 창원병원을 400병상으로 증축하였으며, '92년 1월 1일에는 직업병 연구 일원화를 위해 중앙병원(현 인천중앙병원) 부설 직업병연구소를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 이관하였다.

그 후 호남권 산재장해자의 직업훈련시설로서 '92년 11월 27일 100명 규모의 광주재활훈련원을 신축하였고, 기존의 반월 재활작업소를 안산재활훈련원으로 개편하였으며, '92년 12월 11일 장해정도가 심한 산재 장해자들이 스스로 생산라인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50명 규모의 안산재활훈련원 부설 안산자립작업장을 설치·운영하였고 이를 '00년 1월 1일 직업적응훈련장으로 변경·운영하고 있다.

또한 '93년에는 창원병원의 노후병동을 전면 개·보수하여 총 400병상 규모의 현대식 대형 종합병원으로 확충하였으며, 산재근로자의 휴양시설로 운영하던 화성요양원을 100병상 규모의 척추손상환자 장기요양 전문기관으로 전환하고, 반월병원은 안산중앙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94년에는 의지·보장구 센터를 재활공학 연구센터로 기능과 명칭을 변경하여 의지·보호장구 제작기법의 선진화·첨단화를 이루는 발판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대전중앙병원은 병상 92개를 증축하여 중부권 산재의료기관으로서 중추적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94년 12월 22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으로 근로복지공사가 폐지되고,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하면서 공단 산하에 산재의료관리원을 따로 두어 의료 및 직업재활관련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96년 2월 13일 산업재활원을 인천중앙병원에 흡수·운영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였고, '96년 4월 26일 장기 특수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집중치료하기 위하여 설립된 화성요양원의 명칭을 경기요양병원으로 바꾸고, '97년 1월 1일 장성병원의 명칭을 태백중앙병원으로 변경하였고, '97년 3월 1일 재활훈련 활성화를 통한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안산·광주재활훈련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하였다.

'01년 2월 1일에는 산재병원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병원의 명칭을 인천중앙병원으로 변경하였으며, '02년 2월 21일에는 재활공학연구센터의 명칭을 재활공학연구소로 변경하여 대표적인 재활기기 연구개발기관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였다.

'05년 6월 27일에는 진폐환자의 영양환경 개선을 위하여 동해병원에 진폐병동 360병상을 신축하였으며, '05년 8월 20일에는 수도권 진폐환자들의 진료를 위하여 안산중앙병원에 진폐병동 190병상을 신축하였다.

'06년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 세부실천사항으로 확정되어, '산재보험 중기계획' 및 '산재의료관리원 역할강화 방안'에 의해 인천중앙병원 재활전문센터('06.6.20) 설립 시작으로 대전중앙병원 재활전문센터('06.9.25), 창원병원 재활전문센터('07.7.23)개소하여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요양,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통합재활치료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는 의료재활 서비스를 통하여 산재근로자의 조속한 사회복귀 및 산재보험 시설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 하고 있다.

'06년 4월 3일에는 안산중앙병원 부설 연구기관인 직업성폐질환 연구소를 설립하여 진폐증 및 작업성천식, 간질성 폐질환 등에 대한 조기진단 및 치료기법의 개발, 합병증 인정기준 개발 등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드문 직업성폐질환에 대한 임상연구 및 역학조사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 하고 있다

'07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산재근로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중앙병원(8.14)과 안산중앙병원(12.15)에 국내 최초로 30병상이상의 외국인 전문병동을 개설하여 외국인 산재근로자의 건강회복 및 조기사회복귀 촉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일반요양시설

명 칭	규 모	진 료 과 목	설립일자	기 능
인천중앙병원 ¹⁾	650병상	내과 외 15개 과목	'83. 2.28	산재환자요양전문시설
태백중앙병원 ²⁾	544병상	내과 외 11 "	'77. 6. 2	산재환자 및 진폐요양전문시설 '89. 2 규제센터 통합
창 원 병 원	400병상	내과 외 17 "	'79.11.27	산재환자요양전문시설
대전중앙병원	450병상	내과 외 15 "	'91. 7.23	산재환자요양전문시설
안산중앙병원	485병상	내과 외 14 "	'85. 5.21	산재환자 및 진폐요양전문시설
순 천 병 원	294병상	내과 외 14 "	'85. 5.24	산재환자 및 진폐요양전문시설

- 1) '01.2.1부로 중앙병원이 인천중앙병원으로 명칭 변경
 2) '97.1.1부로 장성병원이 태백중앙병원으로 명칭 변경

진폐전문요양시설

명 칭	규 모	진 료 과 목	설립일자	기 능
동 해 병 원	508병상	내과 외 8개 과목	'83. 5. 3	진폐요양 전문 시설
정 선 병 원	241병상	내과 외 3개 과목	'88.11.30	"

척추환자 요양시설

명 칭	규 모	설립일자	기 능	입 소 대 상
경기요양병원	174병상	'85.6.13	산재로 인한 척추손상 및 마비환자 전문 요양	○ 척추손상 또는 마비환자

- * '96. 4. 26부로 화성요양원에서 경기요양병원으로 명칭 변경

연구시설 및 복지시설

구분	명 칭	규 모	설립일자	기 능
연구시설	재활공학연구소 ¹⁾	보장구제작 및 연구실	'94. 1.10	○ 의지·보장구의 연구 및 제작, 보급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임상연구팀 조사연구팀	'06. 4. 3	○ 폐질환에 대한 임상 연구 및 역학조사 사업
복지시설	경기케어센터	복지팀 재활팀	'07.10.22	○ 고령·중증 산재장애인에게 전문간병 서비스 제공
	강원케어센터	개소준비팀	개소 준비중	○ 고령·무의탁 진폐장애인의 주거제공

- 1) '02. 2. 21 재활공학연구센터가 재활공학연구소로 변경

재 활 시 설

명 칭	규 모	설립일자	기 능	입소대상
인천중앙병원 (산업재활원 ¹⁾)	재활의학과	'73. 4.10	○재활치료를 통한 신체 기능 회복	○외상치료가 완료된 물리치료환자 ○산재입원 및 통원환자
	재활전문센터 멀티미디어 등 7개 교실	'06. 6.20	○산재환자의 유형과 적성에 맞도록 개별화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치료종결후 사회복귀시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도모를 위한 재활적응 훈련 과정	
대전중앙병원	재활전문센터 미술교실 등 4개 교실	'06. 9.25	○산재환자에게 전문적인 진료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복귀 진출 도모	○외상치료가 완료된 환자·산재입원 통원환자
창원병원	재활전문센터	'07. 7.23	○전문재활치료를 통해 재해자의 신속한 신체기능 회복을 도모하여 조속한 사회복귀 유도	○급성기 치료가 완료된 2년 이내의 재해자중 전문재활치료를 통해 사회복귀 가능환자
안산재활 훈 련 원	입소정원 : 130명 공과 : 의상디자인 인쇄사진 전자출판 등	'85. 5.21 ('07.7.1 폐원)	○직업재활훈련을 통한 산재장애자의 잔존노동력 및 자활능력 개발	○산재장애등급 1~14급 자(7급 이상 중장해자 우선입소)
광주재활 훈 련 원 ²⁾	입소정원 : 120명 공과 : 의상디자인, 산업설비 등	'92.11.27 ('07.7.1 폐원)	"	"

1) '96. 2. 15부로 산업재활원이 중앙병원에 흡수 통합

2) 광주재활훈련원의 "정보통신" 공과는 '00. 11월부터 개설

제 5 절 권리구제제도

1. 보험 적용 및 징수

적용·징수와 관련된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로서 해당 처분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방법	청 구 기 간	심판기관	처 분
심판청구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국무총리행정 심판위원회	재결 (취소, 기각, 각하)

2. 보험급여

종래 심사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에 의거 원처분을 행한 지방노동관서를 경유하여 노동부 본부 산재심사관에게, 재심사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청구하였던 것을 '95년 근로복지공단 출범 이후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원처분기관을 경유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공단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원처분기관을 경유하여 노동부 산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97년부터는 심사·재심사 청구의 제척기간을 행정소송 제소기간에 맞추어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였다.

청구방법	청 구 기 간	심 사 기 관	처 분
심사청구	·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	결정(취소, 기각, 각하)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산재심사위원회	재결(취소, 기각, 각하)

'07년도 심사결정 건수는 8,871건으로 이 중 969건이 취소결정 되었으며, 재심사청구 재결 건수는 3,543건으로 이 중 275건이 취소결정 되었다.

〈심사청구 결정현황〉

(단위 : 건, %)

급 여 별	청구건수	결 정 내 용					취소율	
		계	취 소	기 각	각 하	취 하		
'07	합 계	8,892	8,871	969	7,656	53	193	10.9
	요양급여	5,683	5,783	513	5,115	28	127	8.9
	휴업급여	237	224	50	167	1	6	22.3
	장해급여	1,662	1,723	254	1,434	11	24	14.7
	유족급여	502	500	48	441	2	9	9.6
	기타급여	808	641	104	499	11	27	16.2
'06	합 계	8,875	8,458	928	7,235	237	58	11.0
	요양급여	5,711	5,407	522	4,711	151	23	9.7
	휴업급여	147	151	21	105	21	4	13.9
	장해급여	1,805	1,710	240	1,432	20	18	14.0
	유족급여	559	567	46	509	8	4	8.1
	기타급여	653	623	99	478	37	9	15.9
증감	합 계	17	413	41	421	-184	135	-0.1
	요양급여	-28	376	-9	404	-123	104	-0.8
	휴업급여	90	73	29	62	-20	2	8.4
	장해급여	-143	13	14	2	-9	6	0.7
	유족급여	-57	-67	2	-68	-6	5	1.5
	기타급여	155	18	5	21	-26	18	0.3

〈재심사청구 재결현황〉

(단위 : 건, %)

급 여 별	청구건수	재 결 내 용					취소율	
		계	취 소	기 각	각 하	취 하		
'07	합 계	2,719	3,543	275	3,211	46	11	7.8
	요양급여	1,789	2,341	192	2,110	31	8	8.2
	휴업급여	51	65	19	46	0	0	29.2
	장해급여	517	670	38	620	10	2	5.7
	유족급여	256	350	11	335	3	1	3.1
	기타급여	106	117	15	100	2	0	12.8

<표 계속>

금 여 별	청구건수	재 결 내 용					취소율	
		계	취 소	기 각	각 하	취 하		
'06	합 계	2,930	2,369	147	2,170	30	22	6.2
	요양급여	1,922	1,517	90	1,384	24	19	5.9
	휴업급여	50	39	10	27	1	1	25.6
	장해급여	550	443	26	413	2	2	5.9
	유족급여	317	285	9	274	2	0	3.2
	기타급여	91	85	12	72	1	0	14.1
증감	합 계	-211	1,174	128	1,041	16	-11	1.6
	요양급여	-133	824	102	726	7	-11	2.3
	휴업급여	1	26	9	19	-1	-1	3.6
	장해급여	-33	227	12	207	8	0	-0.2
	유족급여	-61	65	2	61	1	1	-0.1
	기타급여	15	32	3	28	1	0	-1.3

3. 행정소송

보험료 부과처분이나 보험급여 결정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재심사 청구, 행정심판 외에 별도로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소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청구방법	청 구 기 간	판결기관	처 분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법원	판결 (취소, 기각, 각하)

제 3 장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관리조직

제 1 절 행정조직

초창기 산재보험을 관장한 행정기구는 노동청 직업안정국 소속의 산재보상과로서 감찰관 2명이 배치되었으며, 지방조직으로는 서울·부산·장성·대구·전주·광주·대전 등 7개 지역에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가 설치되었다.

그 후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산재보험행정기구도 확대되어 '65년 6월에 인천·청주·춘천·마산에 산재보험사무소가 설치되고, '66년 12월 7일에는 산재보험업무가 직업안정국에서 노동국으로 이관됨과 동시에 산재보상과는 보험관리과와 산재보상과로 업무가 분장되었으며, '68년 6월 25일에는 산재보험업무가 국 단위기구로 개편되어 보험관리관이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지방에는 영등포·영주·영월·울산·청주 등 5개 사무소가 추가로 설치되었다.

이와 같이 행정기구가 확대됨에 따라 '73년에 노동보험국으로 승격되어 보험징수과가 신설되었으며, 산재보험사무소 명칭도 노동청 지방사무소로 바뀌었고 연차적으로 지방사무소가 증설되었다.

그리고 '81년 4월 정부조직 개편 시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되면서 독립적 행정기구로 위상이 변화하면서 산재보험 제도는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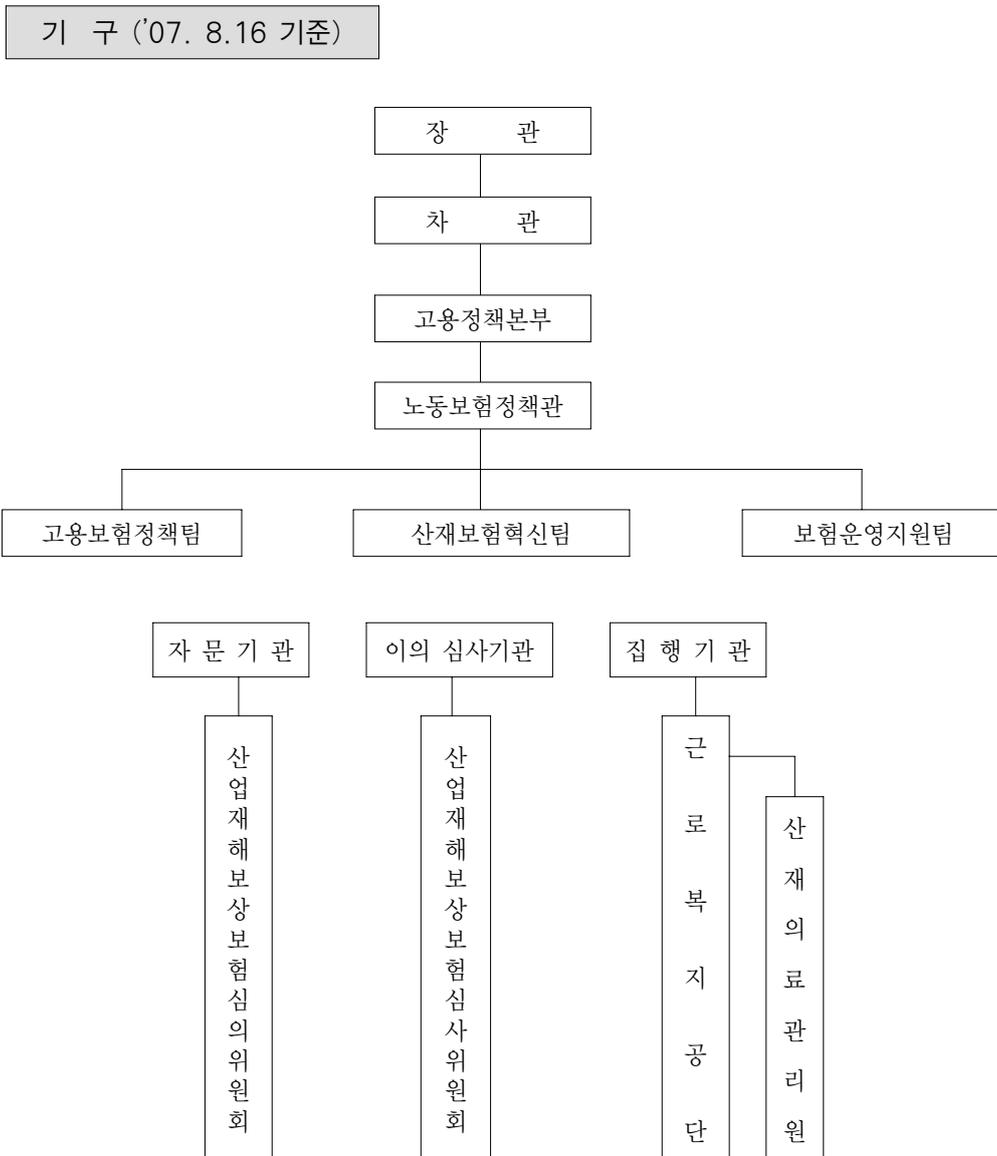
'94년 12월 22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95년 5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업무를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02년 5월 27일 근로기준국 내에 있던 산재보험과가 고용정책실 내에 노동보험심의관실로 이관되어 보험정책과와 산재보험과로 개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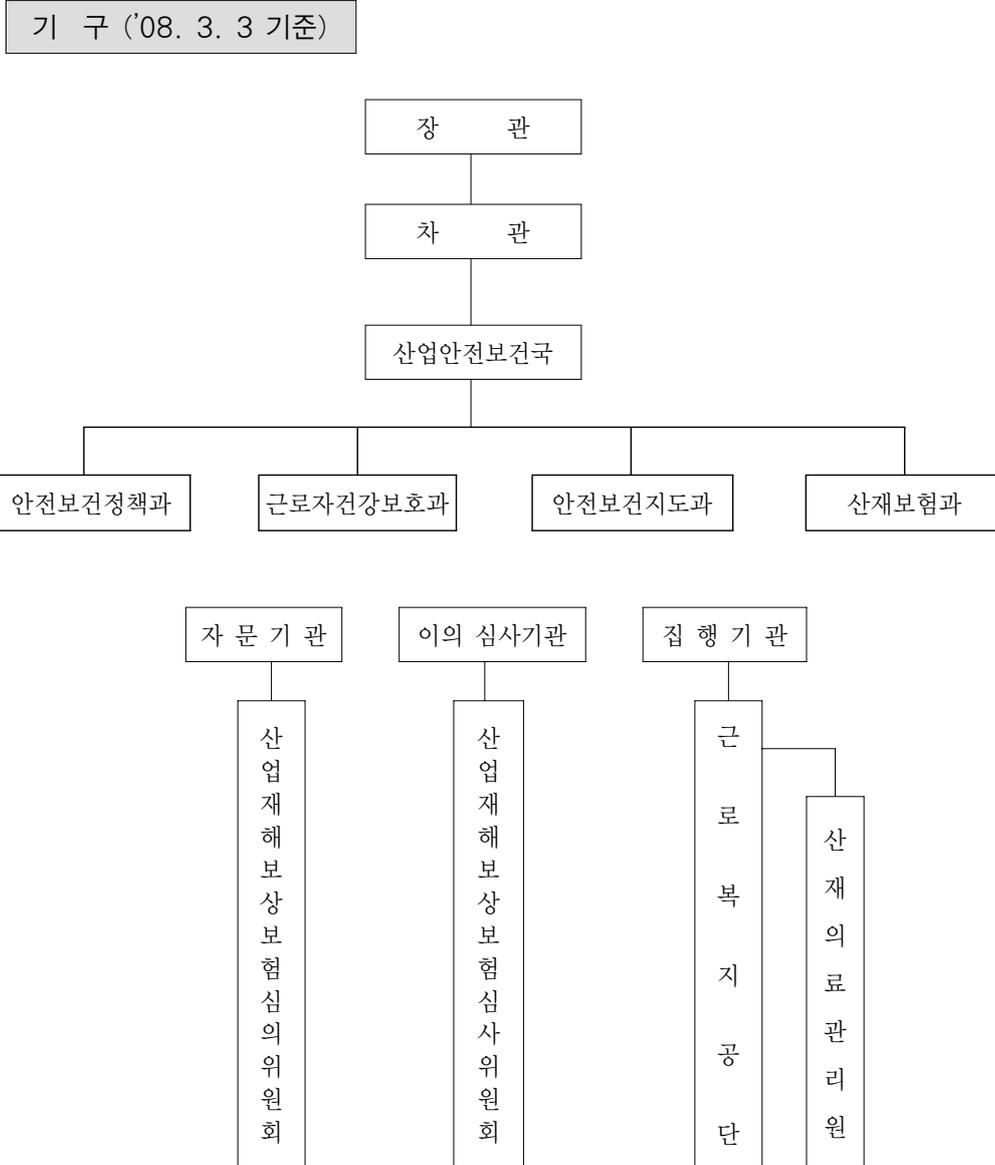
'05년 9월 9일 직제 개정 시 고용정책실이 고용정책본부로 개편되면서, 고용정책본부 내 노동보험심의관 소속의 고용보험정책팀, 산재보험혁신팀, 보험운영지원팀으로 산재보험 관련 부서가 개편되었고,

'07년 8월 16일 직제 개정 시 고용정책본부내 보좌기관 명칭 변경 및 팀 신설이 이루어져

고용정책본부 내 노동보험심의관이 노동보험정책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08년 3월 3일 다시 직제 개정이 이루어져 산재보험 관련업무가 기존의 고용정책본부에서 산업안전보건국으로 이관되었고, 산업안전보건국 내에 기존 산재보험혁신팀과 보험운영지원팀의 기능이 통합된 산재보험과가 설치되어 산재보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제 2 절 근로복지공단

'74년 8월 12일 “재단법인 한국근로복지공사”가 설립되고 '75년 1월 1일 대한석탄공사에서 운영하던 180병상 규모의 장성병원을 인수 운영하면서 동 공사를 확대 개편하였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및 재해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76년 12월 22일 법률 제2913호 “근로복지공사법”을 공포, '77년 6월 2일 “재단법인 한국근로복지공사”를 폐지하고 “근로복지공사”를 설립하였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및 재정규모의 확대 등과 함께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보험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94년 12월 22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공포(법률 제4826호)하여 '95년 5월 1일 근로복지공단이 새로이 발족되었다.

그동안 정부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던 산재보험에 관한 일선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고, 산재보험업무와 관련하여 개별법률로 되어 있던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및 근로복지공사법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통합 정비하였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에서 근로복지공단과 관련된 사항을, 제7장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를 폐지하는 대신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설치하였고, 제8장에서 심사 및 재심사 청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다.

한편, '93년 12월 27일 제정된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법률 제4640호)에 의하여 중소기업근로자의 복지증진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 법 제3장에 근로복지진흥기금 설치근거를 마련, 근로복지공사('95년 5월 1일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기금관리와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였다.

'97년 8월 28일 제정된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5397호)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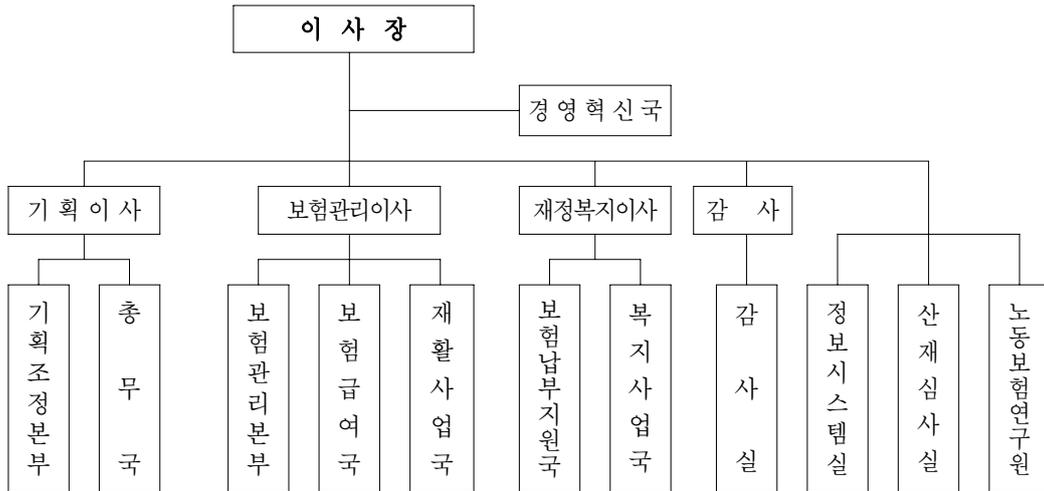
IMF 외환위기 사태는 근로복지공단의 역할과 위상을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어 고용정책기본법('98.2.20 법률 제5509호)에 의한 실업대책사업의 실시, 임금채권보장법('98.2.20 법률 제5513호)에 의한 임금채권보장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보험사업에 있어서도 산재보험 업무의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고용보험 적용징수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산재보험 적용징수업무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었고, '03년 12월 31일 제정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7047호)에 의해 양 보험료 통합징수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01년 8월 14일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진흥법과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폐합한 근로자복지기본법(법률 제6510호)에 의해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이 새롭게 실시되었고, 이로써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보험과 근로복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되었다.

기 구 표

○ 본 부 : 이사장, 감사, 3 이사, 2 본부, 9 실(국), 25 팀, 연구원(4팀)



※ 직제규정 : '07. 12. 27 개정('08. 1. 1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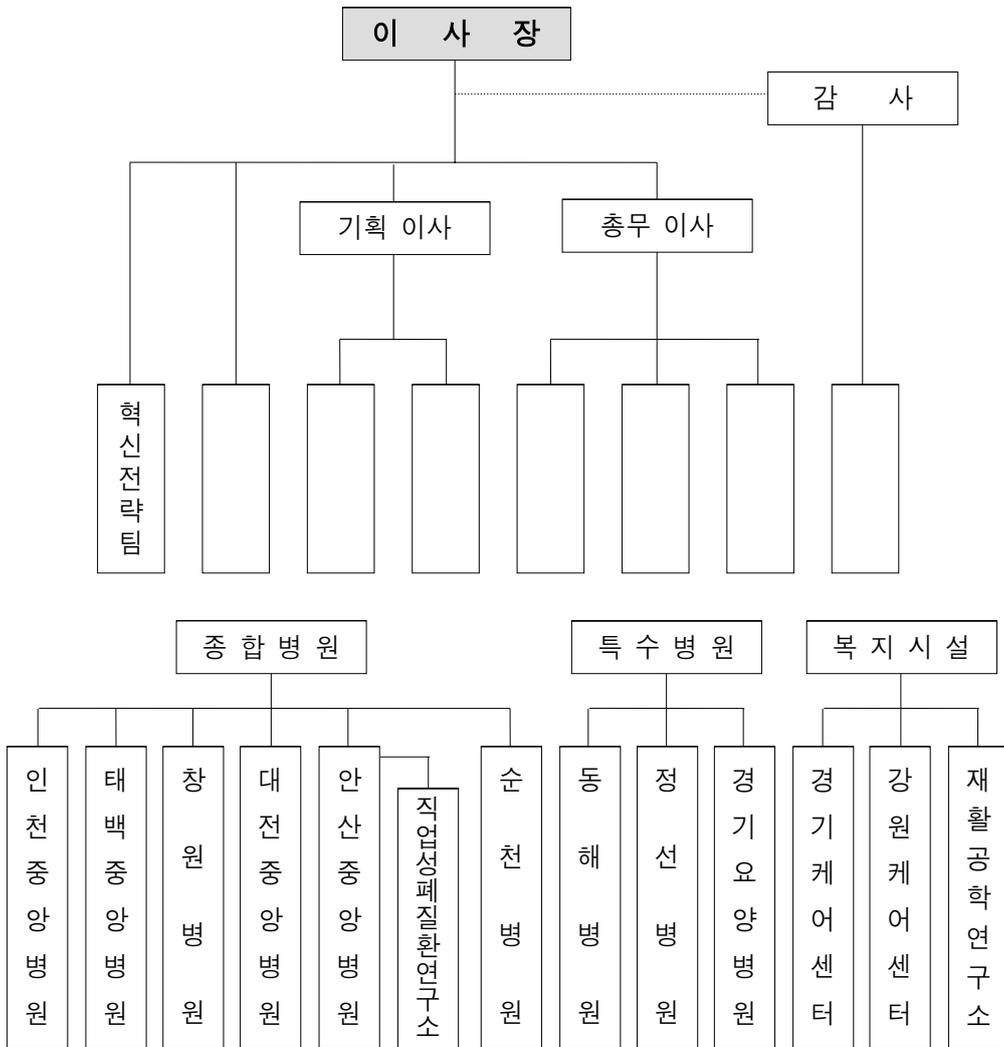
○ 소속기관

- 지역 본 부 : 6개소(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
- 지 사 : 49개소

제 3 절 산재의료관리원

'77년 6월 설립된 근로복지공사가 산재병원을 운영하여 오다가, '94년 12월 22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정부가 관장하여 왔던 산재보험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95년 4월 7일 재출연기관으로서 근로복지공단 산하에 “산재의료관리원”을 설립하여 산재의료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산재의료관리원 기구표



제 2 편

2007년도 산재보험 주요 정책과제 추진실적

제 1 장

2007년도 추진실적 개황

제 1 절 산재보험 제도개선 추진배경 및 현황

산재보험은 1964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써, 40여년 간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치료와 보상을 담당함으로써 산재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간 산재보험은 적용대상, 보상수준·범위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그 동안의 산재보험이 요양관리, 재활서비스, 급여체계 등 제도 전반에 걸쳐 신속·공정한 산재근로자 보호라는 본연의 취지에 미흡하여 각계로부터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제도에 대하여 그간 제기된 다양한 비판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동부는 '04년부터 '05년까지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05년 말 재정·징수, 요양·재활, 보험급여 체계 등 13개 핵심 과제별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노동계 및 산재근로자 단체의 반발 등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협의를 위해 '06년 5월 4일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형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06년 5월 23일 노사정 각 3인과 공익 8인(위원장 포함) 등 총 17인의 위원으로 구성·발족되어 11월 말까지 6개월 간 40여 회의 실무회의, 간사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수많은 진통과 격론 끝에 '06년 12월 13일 마침내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에서 5개 분야, 42개 주제, 80개 항목에 이르는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다.

먼저 산재보험법령, 운영개선을 통해 바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합의한 사항은 재정·징수 분야의 책임준비금제도 개선 등 5개 과제 10개 항목, 요양·재활 분야의 요양신청 제도 개선 등 6개 과제 16개 항목, 보험급여 체계의 휴업급여 제도 개선 등 8개 과제 14개 항목, 관리·운영체계 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분과위 설치 등 5개 과제, 10개 항목 등 50개 항목이었다.

그리고 논의기간·의제성격을 고려하여 노조전임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등 9개 항목은 별도로 후속 논의키로 하고 출퇴근재해, 장해평가 기준 등 12개 항목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현행제도를 유지키로 합의한 사항은 9개 항목이었다.

산재보험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04년 이후 약 3년이 지난 '06.12.13.에 노사정 위원회는 즉각적으로 입법이 가능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합의를 이루어냄에 따라 '06.12.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 되고, 약 6개월간의 국회 논의를 거쳐 2007년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08년 7월 1일을 시행일로 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07년 12월 14일과 12월 27일 각각 공포되었다.

제 2 절 추진실적

'06년 12월 13일 노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재보험 제도개선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노사정 합의사항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하여 노동부를 주축으로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및 산재의료관리원을 포함한 「산재보험 제도개선 T/F」을 구성·운영하였다.

「산재보험 제도개선 T/F」는 국회에 제출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회심의 과정에서 노사정 합의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산재보험 제도의 전면개선의 토대가 된 관련 법령의 개정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서는 총 91개 조문 중 43개 조문을 개정하고 38개 조문을 신설하였고(개정률 8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총 50개 조문 중 4개조문을 개정하고 1개조문을 신설하였다(개정률 10%).

근로복지공단은 '07년 1월 15일 부터 「산재보험 제도개선 추진 전담반」을 운영하여 노사정 합의사항 이행 및 산재보험 제도개선 관련법령 하위법령 및 자체규정 등 개정, 기초안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노사정 합의사항 중 업무상 질병의 공정하고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07년 2월 7일

위원장 1명, 실무위원 6명, 전문가위원 6명 등 총 13명으로 업무상질병인정기준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23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실무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08년 7월 1일 산재보험 개정 법령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제 3 절 평가 및 향후계획

이번 산재보험 제도의 전면개선은 산재보험 40년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노사정 합의에 의한 것이다. 종전에는 노사단체가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요구하면 정부가 주도하여 부분적으로 제도를 개선했을 뿐 노사정간 충분한 협의와 조율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특히 산재보험제도 개선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영계와 보험급여 수혜를 받는 노동계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논의와 협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06년 12월 노사정 합의는 노사가 주도하여 의제를 제시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각계의 입장과 이해를 조정하면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합의를 도출하여 40여년 만에 산재보험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금번 산재보험 제도개선의 가장 큰 효과는 산재보험이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신속·공정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 보호기능을 강화하였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였다는 점이다.

산재보험 제도의 전면개선에 대하여 일부의 반대가 있었으나 노동계 및 경영계에서는 일단 시행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만큼 형식적인 제도개선이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08년 7월 1일 산재보험 개정법령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작업을 조기 추진하고 그에 따른 제반 사항을 보완할 것이다.

제 2 장

산재보험 제도개선 추진

제 1 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

1. 추진배경 및 현황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06년 12월 13일 합의·의결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산재근로자에 대한 의료·재활 서비스는 확충하되 산재근로자 및 의료기관의 요양관리는 합리화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저소득·재활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산재근로자 간 보험급여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높이며, 보험급여결정 등에 관한 심사청구·재심사 청구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법 개정안은 5개 분야, 42개 주제, 80개 항목에 이르는 사항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 법률이 '07년 12월 14일자로 공포되어 '08년 7월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2. 개정 주요 내용

가.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나.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증감은 재직근로자는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률을 적용하고, 퇴직근로자 및 연금수급권자는 전체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재직근로자와 퇴직근로자·연금수급자간의 보험급여 증감에 형평성 문제가 있어, 평균임금은 일률적으로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변동률에 따라 증감하되,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르도록 증감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재직자와 퇴직자 간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다. 현재 최고 보상기준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수준, 임금계층별 근로자 분포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최저임금의 조정률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가변적이고 불명확하여 보험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어,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수준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저소득근로자와 고소득근로자 간 보험급여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의 개념에 대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포괄 위임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업무상재해의 인정 기준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 및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을 업무상 사고의 기준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을 업무상 질병의 기준으로 명시하여 규정함으로써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상당부분 해소하였다.

마. 일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산재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 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어, 산재근로자가 인력과 시설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당연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되도록 함으로써 산재근로자가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와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바. 현재는 요양 중에 부분적으로 취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근로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취업을 하면 취업하지 않는 경우(휴업급여가 지급됨)보다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게 되므로 취업을 회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산재근로자가 요양과 취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날 또는 시간에 받은 실제 임금과의 차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분 휴업급여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요양 중 취업치료를 활성화하고 직업복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 현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저소득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근로자를 보호하는 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휴업급여 지급액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함으로써 평균임금 수준이 낮은 저소득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아. 요양 종결 당시 결정된 장애등급은 장애종류에 따라 호전되거나 악화되는 등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재판정제도가 없어, 한 번 판정되면 같은 장애등급이 계속 유지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장애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관절의 기능장애, 신경계통의 장애 등, 장애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이나 그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판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정 결과 장애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상태에 걸맞은 장애보상연금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자. 요양이 끝난 산재근로자의 직장·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직업재활사업은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한 예산 사업으로 운영되어 그 효과에 한계가 있어,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 직업재활급여를 신설하여 요양이 끝난 후 장애급여를 지급받는 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원 직장에 복귀한 장애급여자를 고용하거나 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 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를 지원하도록 하여 요양이 끝난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촉진과 생계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 현재 보험급여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제기하는 심사 청구 사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단독심 체제로 심리·결정하고 있어 객관성과 전문성 부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청구 사건에 대하여 심리·결정할 때에는 동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의 심리·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높아지고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바,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운송종사자)에 종사하는 자는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

타. 간병급여는 동 제도가 도입된 '07년 7월 1일 이후에 장애급여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어, 그 이전에 장애급여를 받은 자는 실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도 간병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어, '00년 7월 1일 이후에 장해급여를 받은 자도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3. 평가 및 향후 과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기초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개선안을 입법화하고 '08년 7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에 있어, 신속·공정한 산재근로자 보호라는 본연의 취지에 걸맞게 산재보험제도가 개선되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게되었다.

특히 금번 산재보험법 전부개정 법률은 산재보험 40년 역사상 최초로 노사정 3자의 합의를 통해 탄생하였고, 그 개정 내용이 방대한 만큼 구체적 시행방안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근로복지공단의 내부규정의 정비, 대국민홍보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가. 산재보험법 하위법령 개정

산재보험법이 '07.12.14. 공포되어 '08.7.1.자 시행 예정임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산재보험법시행령 및 동 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개정, 공단 규정의 제·개정 등을 완료하여 법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나.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대 국민 홍보강화 및 내부직원 교육

금번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5개 분야, 42개 주제, 80개 항목에 이르는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합의사항을 법제화 한 것으로 산재보험법의 80% 이상이 개정됨에 따라 내부직원에 대한 교육을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법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한편, 사업주단체 및 노동자 단체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제 2 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 개정 배경

'9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징수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위탁되어,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산재보험의 적용·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그 근거는 각각 별도의 법(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되어 있어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양 보험 근거법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 도모와 보험관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고용·산재보험의 징수관련 규정을 통합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을 '03년 12월 31일 제정(법률 제7047호, '05.1.1시행)하였으며, '04년 10월 29일에는 동 법 시행령을, '04년 12월 31일에는 동 법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하여 '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2. 개정 경과

「보험료징수법」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06년 12월 28일 보험료징수법을 개정·공포하였다.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은 '07년 3월 29일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건설사가 국내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국내건설업을 하는 경우 최초의 하수급인을 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하여 소속 근로자가 고용·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였다.

둘째, 사업주가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확한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사업주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겠다는 뜻을 미리 통지하기 전까지는 사업주는 자신이 신고한 확정보험료에 대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최초의 확정보험료의 과소 신고로 사업주에게 부과하여야 하는 가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확정 보험료의 수정신고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셋째,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보험료 등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고, 뒤늦게 보험에 가입한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지 아니한 보험료 등을 한꺼번에 소급하여 징수하게 되면 경영상의 애로와 보험행정에 불신을 초래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천재지변 그 밖의 특수한 사유로 보험료 등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보험료 등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와 그 직전보험연도를 제외한 보험연도의 보험료·가산금 및 연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2009.12.31까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넷째, 사업주가 잘못 납부한 보험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 사업주가 미납하고 있는 보험료 및 징수금(연체금·가산금 등) 등에 충당하는 우선순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되, 사업주가 잘못 납부한 보험료 등과 관련되는 보험의 미납 체납처분비, 연체금, 가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징수금, 보험료의 순위로 충당하도록 규정하였다.

다섯째,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로 기업의 합병, 분할, 사업의 양도·양수 등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현실에 맞추어 고용보험·산재보험의 보험료 등과 관련된 공법상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을 명확히 하고, 고의적인 보험료 등의 납부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서 활용되고 있는 조세채무이행을 위한 조세보전제도 및 간접강제수단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법인이 합병한 경우와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법인과 상속인 등이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 또는 피상속인이 가지는 보험료 등에 관한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공동사업과 관계되는 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며, 2년 이상 10억 이상의 보험료 등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의 체납보험료 등에 대한 채권의 보전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정산특례제도 폐지 및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였다.

한편 「보험료징수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보험료의 전자신고 또는 자동 계좌이체납부에 따른 보험료 등의 경감제도, 보험료 채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보험료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07.3.29.자로 개정 시행하게 되었다.

그 중요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 개정에 따라 건설업의 확정보험료 정산특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동제도의 적용을 받던 건설업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을 당해보험연도 2년 전 보험연도의 총 공사실적이 100억 원 이상의 사업에서 2년 전 보험연도의 총 공사실적이 60억 원 이상의 사업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하였다.

둘째,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험료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만큼 경감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는 특수한 사유로 화재, 폭발, 전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 정하고, 경감비율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00분의 30으로 정하였다.

셋째, 개산보험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거나 개산보험료 또는 특례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개산보험료 신고 시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각각 5천원을 경감하고,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개산보험료 또는 특례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보험료 별로 분기마다 500원씩 경감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고와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한 보험료 납부를 활성화 하여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고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넷째, 법에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의 공개제도를 도입하면서 공개제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체납보험료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당해 보험연도에 납부한 경우, 사업이 중대 위기에 처한 경우 등으로서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인적사항 공개제외 사유로 정하였다.

다섯째, 보험료징수법의 개정으로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의 체납보험료 등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분할납부의 신청은 사업주에게 고지된 체납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의 3일전까지 하도록 하고, 체납 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의 총 기간은 분할 납부를 승인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정하여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도모하였다.

여섯째,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중·소기업사업주의 산재보험료를 당해보험연도의 1월 2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고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되, 각 분기의 보험료는 각 분기 시작 월의 20일까지 납부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사업주가 분할납부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06.12.13. 노사정위원회의 산재보험 제도개선에 관한 합의사항 반영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07.12.27. 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되어 '08.7.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다만, 징수특례 적용제의 신청기한 폐지는 '08.1.1.자 임)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 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보험급여지급률)을 기초로 산정하여 매년 12월에 고시하고 있어 기업의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산재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보험급여 지급률의 산정기준일을 매년 9월 30일에서 6월 30일로 변경함으로써 기업이 다음 연도 산재보험료의 책정 등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둘째, '06년도 산재보험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경우 최저 보험료율은 0.5%이나, 최고 보험료율은 61.1%로 전체 사업의 평균 보험료율인 1.78%보다 34배가 넘는 등 업종별 편차가 너무 커서 위험부담의 연대라는 사회보험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산재보험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특정사업 종류의 최고 산재보험료율은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 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업종류 간 산재보험료율 편차를 줄여 사회보험으로서의 사회적 연대성을 강화하였다.

셋째, 골프장경기보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 직종 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료 징수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지급할 금품에서 원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제 3 절 사회보험 징수통합 추진

사회보험별로 부과·징수기준이 달라 사업주는 사회보험료 납부가 불편하였고, 각 기관별로 보험료를 징수함에 따라 징수의 비효율성도 심화되었다. 이에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도모하고 각 사회보험간 정보공유도 증진시키면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우선 보험료 부과기준 및 납부방식부터 일원화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어 「사회보험 적용·징수 일원화 방안」이 확정(2005년 11월)되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고, 국민연금의 완전노령연금시대 도래, 산재보험의 산재환자 재활서비스 확충 등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에 따른 대폭적인 인력 증원 수요가 발생하면서 2006년 7월부터 징수기관 일원화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통합징수기관을 어느 곳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수차례의 논의 결과 국세청과의 소득자료 연계 강화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 산하에 “(가칭)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신설하여 4대 사회보험료를 일괄하여 징수하고 기존의 보험공단은 서비스 기관화하는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 혁신방안」이 국정과제회의(2006년 9월 25일)에서 확정되었고, 4대 사회보험료의 통합징수에 관한 법률인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사회보험 관련 법률을 동시에 개편하기로 결정(2006년 10월 18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되었다.

이에 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폐지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2006년 11월 16일)하였으며, 이는 2007년 2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었다. 개편되는 법률의 주요내용은 보험료징수법을 폐지함에 따라 기존의 징수관련 내용은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보험료율 등의 정책적인 사항은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4대 사회보험료의 일괄징수를 위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임금에서 소득세 부과 대상 근로소득으로 납부방식을 매년 사업주 자진신고·납부방식에서 매월 부과지·납부방식으로 개편하는 내용도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였다. 노동부 소관 사회보험 징수통합관련 고용보험법 등 4개 법률(안)은 '07.2월 임시국회에서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었으나, 환노위가 재경위 논의경과를 보아가며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취함에 따라 법안 심사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하였고, '08.2월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별도의 징수공단 설립에 대하여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하여 심사가 보류되었다.

제 3 장

산재보험 적용·징수 강화

제 1 절 산재보험 적용의 내실화

1. 추진경과 및 현황

'07년 12월 말 현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수는 1,429,885개소로서 '06년 12월 말의 1,292,696개소에 비하여 10.6%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12,528,879명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7.2% 증가하였다.

업종별 적용사업장 증감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하여 어업이 460.1%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건설업 29.4%, 기타의 사업 9.1%, 농업 16.4%, 운수·창고 및 통신업 9.1%, 금융 및 보험업 3.6%, 제조업 4.7%,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7.8%, 임업이 13.3% 증가하였으며, 광업은 2.2% 감소하였다.

업종별 사업장 구성비를 보면 기타의 사업이 63.3%(905,585개소), 제조업 17.3%(247,460개소), 건설업 13.6%(193,993개소), 운수·창고 및 통신업 2.9%(41,671개소), 금융 및 보험업 1.9%(27,742개소), 임업 0.5%(6,551개소), 농업 0.3%(3,818개소), 광업 0.1%(1,239개소),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0.1%(997개소), 어업 0.1%(829개소) 순으로 되어 있다.

업종별 적용사업장수

(단위 : 개소, %)

구 분	'07	구 성 비	'06	증 감 률
금 융 및 보 험 업	27,742	1.9	26,776	3.6
광 업	1,239	0.1	1,267	-2.2

<표 계속>

구 분	'07	구 성 비	'06	증 감 률
전 기 · 가 스 / 상 수 도 사 업	997	0.1	925	7.8
건 설 업	193,993	13.6	149,874	29.4
운 수 · 창 고 및 통 신 업	41,671	2.9	38,199	9.1
임 업	6,551	0.5	5,781	13.3
어 업	829	0.1	148	460.1
농 업	3,818	0.3	3,281	16.4
기 타 의 사 업	905,585	63.3	830,016	9.1

업종별 적용근로자 수의 증감현황을 보면 '06년 12월 말에 비하여 어업 686.4%, 건설업 13.3%, 농업 8.6%, 광업 2.9%, 제조업은 2.1%, 금융 및 보험업 1.1%, 기타의 사업 8.4%,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이 0.3%, 운수창고 및 통신업이 3.1% 증가하였고, 임업은 1.4%가 감소하였다.

업종별 근로자 구성비는 기타의 사업이 42.0%(5,264,383명), 제조업 24.7%(3,095,377명), 건설업 23%(2,887,634명), 운수·창고 및 통신업 5.6%(697,833명), 금융 및 보험업 3.2%(403,901명), 임업 0.6%(72,366명),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0.4%(53,984명), 농업 0.3%(34,528명), 광업 0.1%(16,105명), 어업 0.0%(2,768명) 순으로 되어 있다.

업종별 적용근로자 수

(단위 : 명, %)

구 분	'07	구 성 비	'06	증 감 률
금 융 및 보 험 업	403,901	3.2	399,638	1.1
광 업	16,105	0.1	15,656	2.9
제 조 업	3,095,377	24.7	3,032,667	2.1
전 기 · 가 스 / 상 수 도 사 업	53,984	0.4	53,796	0.3
건 설 업	2,887,634	23.0	2,547,754	13.3

<표 계속>

구 분	'07		'06	증 감 륜 (%)
		구 성 비		
운 수 · 창 고 및 통 신 업	697,833	5.6	676,725	3.1
임	72,366	0.6	73,381	-1.4
어	2,768	0.0	352	686.4
농	34,528	0.3	31,781	8.6
기 타 의 사 업	5,264,383	42.0	4,857,047	8.4

해외파견자에 대해서는 특례를 통해 임의가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07년 12월 말 현재 해외 파견자에 대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업장은 1,132개소로 전년의 944개소보다 188개소가 증가하였으나, 산재보험으로 보호받는 해외파견 근로자는 22,144명으로 전년 26,342명보다 4,198명이 감소하였다.

해외파견 근로자 적용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07		'06		증 감 (%)	
	사업장	근로자	사업장	근로자	사업장	근로자
적용실적	1,132	22,144	944	26,342	19.91	-15.94

2. 추진실적

산재보험 적용실적 제고를 위하여 '07년도 고용·산재보험 가입누락 방지대책 수립·시행을 통해 체계적인 가입 자료 확보 및 처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국세청 가입관련자료 입수를 통한 적용누락 검색체계 강화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여부를 조기에 확인하여 근로자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납부의무자의 법정 의무 이행지체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였다.

2006년도 귀속 근로소득지급조서 자료입수를 입수하여 산재보험 미가입 및 고용보험피보험자 미신고 사업장 45,619건을 소속기관에 시달하였으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자료 1,977,251건을 소속기관에 시달하여 적용업무에 활용하게 하였다. '05년부터 신규 입수한 근로소득 지급조서 자료에 대한 업무효율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소멸시효 단축 입법 추진 등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가입기초자료 수집의 체계적인 구축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자료와 기존의 사업자 등록자료 및 근로소득 지급조서와 조합하여 3중 가입누락검색 체계를 가동, 빈틈없는 노동보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 밖에도 국토연구원 건설공사 발주자료 및 건설업 면허등록업체 가입대상 사업장 자료를 본부에서 일괄 입수하여 시달하는 등 적용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소속기관 업무담당자의 업무량 감소 및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별 수집하던 적용 자료를 본부에서 일괄 입수하여 성립신고를 안내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구 분	'07		비 고
	근로자1인사업장	근로자0인사업장	
일괄안내실적	58,401	979,083	

산재보험 적용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5월(5.1~31)과 10월(10.1~31)에 2차례에 걸쳐 보험 미가입사업장 자진신고강조기간을 운영하였다. 기존 미적용사업장 및 신규설립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라디오, 종합일간지, 무가지, 인터넷, 현수막, 3개 취약업종 협회지등을 통해 보험가입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지역별 실정에 맞는 홍보실시를 위해 일선기관에 홍보예산을 지원하였다.

구 분	가입목표	가입실적	달성률
합 계	167,000	179,217	107.3
상반기	82,000	93,303	113.7
하반기	85,000	85,914	101.1

3. 평가 및 향후 과제

2007년도 보험 가입실적의 경우 12월말 현재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수는 1,430천개소로 가입목표 1,367천개소 대비 104.6%를 달성하여 전년 동기대비 10.6% 증가하였으며, 가입기초자료 수집체계 정착을 통하여 적용누락방지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며, 국세청 사업자 등록 자료와 근로소득지급조서 전산자료 외에 원천 징수이행상황신고 전산자료를 추가 확보하여 일선기관의 행정소요인력 및 시간 등이 감소되었다.

향후 과제로서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확대와 관련하여 가입확대 관련 홍보방안 수립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자치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제 2 절 징수업무 효율화를 위한 수납률 제고

1. 추진경과 및 현황

가. 보험료율

'07년도에는 보험료율을 61개 업종으로 결정·고시하였는데, 가장 낮은 보험료율은 금융 및 보험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컴퓨터운용 및 법무회계관련 서비스업의 보험료율로 6/1000이며, 가장 높은 보험료율은 광업의 보험료율로 522/1000이었으며, 평균보험료율은 19.5/1000이다.

'06년도에 개별실적요율 적용받은 사업장수는 32,361개소였으며, '07년도에 적용받은 사업장수는 3.3%가 증가된 33,443개소가 되었다. 이의 조정내역을 보면 개별실적요율이 인화된 사업장은 '06년도보다 6.7% 증가한 26,904개소로 전체의 80.5%이며, 인상된 사업장수는 5,724개소로 전체의 17.1%이고, 불변 사업장은 815개소로 전체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개별실적요율 조정상황

(단위 : 개소, %)

구 분	'07		'06		증 감 률
	사업장수	구성비	사업장수	구성비	
합 계	33,443	100.0	32,361	100.0	3.3
인 상	5,724	17.1	6,365	19.7	-10.0
인 하	26,904	80.5	25,223	77.9	6.7
불 변	815	2.4	773	2.4	5.4

업종별 구성비를 보면 제조업이 14,122개소(42.2%)로 가장 많고 기타의 사업 13,438개소(40.2%), 운수·창고 및 통신업 3,399개소(10.2%), 금융 및 보험업 1,100(3.3%), 건설업 862개소(2.6%), 전기·가스 및 상수도사업 256개소(0.8%), 농업 142개소(0.4%), 임업 75개소(0.2%), 광업 47개소(0.1%) 순이다.

〈업종별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수〉

(단위 : 개소, %)

구 분	'07		'06		증 감 률
	사업장수	구성비	사업장수	구성비	
합 계	33,443	100.0	32,361	100.0	3.3
금 용 및 보 험 업	1,100	3.3	1,059	3.3	3.9
광 업	47	0.1	52	0.2	-10.6
제 조 업	14,122	42.2	13,918	43.0	1.5
전 기 가 스 상 수 도 업	256	0.8	256	0.8	0
건 설 업	862	2.6	849	2.6	1.5
운 수 · 창 고 및 통 신 업	3,399	10.2	3,334	10.3	1.9
임 업	75	0.2	67	0.2	11.9
어 업	2	0	-	-	200
농 업	142	0.4	142	0.4	0
기 타 의 사 업	13,438	40.2	12,684	39.2	5.9

나. 보험료 징수

'07년도 당해년도 징수결정액은 4,654,894백만원으로 전년도 3,958,071백만원보다 17.6% 증가하였고, '07년도 당해년도 수납액은 4,367,341백만원으로 전년도 3,677,636백만원보다 18.8% 증가하였다.

〈현년보험료 징수실적¹⁾〉

(단위 : 백만원, %, %P)

구분	징수결정(A)			수납액(B)			수납률(C=B/A) ²⁾		
	'07	'06	증감률	'07	'06	증감률	'07	'06	증감
현년	4,654,894	3,958,071	17.6	4,367,341	3,677,636	18.8	93.8	92.9	0.9

〈이월보험료 징수실적¹⁾〉

(단위 : 백만원, %, %P)

구분	징수결정(A)			수납액(B)			수납률(C=B/A) ²⁾		
	'07	'06	증감률	'07	'06	증감률	'07	'06	증감
이월	461,876	511,970	-9.8	147,027	149,630	-1.7	31.8	29.2	2.6

1) 보험료+가산금+연체금+급여징수금을 포함한 실적임.

2) 수납률(C) = B/A × 100

업종별 징수결정상황을 보면 제조업이 2,195,680백만원으로 전체 보험료의 42.9%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업 1,302,615백만원(25.5%), 기타의 사업 1,057,814백만원(20.7%)순으로 징수 결정 하였다.

업종별 수납률은 전기가스상수도업이 99.8%로 가장 높고 건설업이 85.7%로 가장 낮다.

〈업종별 보험료 및 기타징수금*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계	금융보험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상수도사업
징수결정액	'07	5,116,770	78,727	119,343	2,195,680	19,465
	'06	4,470,041	64,298	113,797	1,887,473	20,060
증감률		14.5	22.4	4.9	16.3	-3.0
불납결손액	'07	127,254	79	1,732	51,843	7
	'06	144,373	120	1,843	56,875	25
수납액	'07	4,514,368	78,156	111,852	1,957,416	19,432
	'06	3,827,266	63,726	105,516	1,632,893	19,995
수납률	'07	88.2	99.3	93.7	89.1	99.8
	'06	85.6	99.1	92.7	86.5	99.7

<표 계속>

구 분		건 설 업	운수창고통신업	임/어/농업	기타의 사업
징수결정액	'07	1,302,615	305,691	37,435	1,057,814
	'06	1,204,323	278,426	30,084	871,580
증 감 률		8.2	9.8	24.4	21.4
불납결손액	'07	40,863	6,407	880	25,443
	'06	48,297	8,523	719	27,971
수 납 액	'07	1,116,363	276,480	33,025	921,644
	'06	1,001,573	245,028	25,848	732,687
수 납 률	'07	85.7	90.4	88.2	87.1
	'06	83.2	88.0	85.9	84.1

* 보험료+가산금+연체금+급여징수금만을 포함한 실적임.

보험료 징수실적

'07년도 보험료 수납실적을 살펴보면 4,431,520백만원으로 전년 3,749,501백만원 대비 18.2% 증가하였으며, 현년 보험료 수납액이 4,319,97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8.8% 증가하였고 이월 보험료는 111,542백만원 수납되어 전년대비 2.4% 감소하였다.

〈보험료 수납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07	'06	증 감 률
합 계	4,431,520	3,749,501	18.2
현 년 보 험 료	4,319,978	3,635,194	18.8
이 월 보 험 료	111,542	114,307	-2.4

기타 징수금 징수실적

'07년도 기타징수금 수납실적을 살펴보면 82,848백만원으로 전년 77,765백만원 대비 6.5% 증가하였으며, 이월 기타 징수금 수납액이 35,48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0.5% 증가하였고 현년 연체금은 25,603백만원 수납되어 전년대비 17.5% 증가하였다.

〈기타 징수금 수납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07	'06	증 감 률
합 계	82,848	77,765	6.5
현 년 연 체 금	25,603	21,791	17.5
현 년 가 산 금	5,613	5,142	9.2
현 년 급 여 징 수 금	16,147	15,509	4.1
이 월 기 타 징 수 금	35,485	35,323	0.5

해외파견 근로자 징수실적

해외파견 근로자 보험료는 5,040백만원의 징수결정액(전년대비 32.6% 증가) 중 4,886백만원을 수납(전년대비 32.1% 증가)하여 96.9%의 수납률(전년대비 0.4%p 감소)을 기록하였다.

〈해외파견 근로자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 %p)

구 분	'07			'06			증 감		
	징 수 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징 수 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징 수 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합 계	5,040	4,886	96.9	3,800	3,699	97.3	1,240	1,187	-0.4

보험사무대행기관 현황

보험사무대행기관은 '07.12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388개소로 전년보다 49개소(12.6%)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54.9%인 213개소가 서울·경인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사무대행기관 지역별 인가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서울	강원	인천·경기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전북	대전·충남	충북	제주
'07	388	130	8	83	49	58	20	17	11	10	2
'06	339	102	7	75	54	47	17	16	11	8	2
증 감	49	28	1	8	-5	11	3	1	0	2	0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형태별로는 노무·세무법인이 286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지방상공회의소가 27개소이다.

〈사무대행기관 형태별 인가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지 방 경영자협회	지 방 상공회의소	노무· 세무법인	업종연합회	기 타
'07	388	16	27	286	24	35
'06	339	16	28	241	19	35
증 감	49	0	-1	45	5	0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탁한 사업장은 전체 위탁대상사업장 1,426천개소 중 16.4%인 234천개소이며, 이는 '06년 209천개소보다 25천개소(11.9%) 증가하였다.

〈사무대행기관 위탁실적〉

(단위 : 천개소, 천명, %, %p)

구 분		'07	'06	증 감 률
사업장	대 상	1,426	1,289	10.6
	위 탁	234	209	11.9
	위탁비율	16.4	16.2	1.2
근로자	대 상	9,666	8,908	8.5
	위 탁	1,874	1,749	7.1
	위탁비율	19.4	19.6	-0.2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탁한 사업장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 징수금은 718,65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7.8% 증가하였고, 지원금은 4,038백만원으로 전년보다 0.8% 감소하였다.

〈사무대행기관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 %p)

구 분	'07	'06	증 감 률
징수결정액	775,230	665,676	16.5
수 납 액	718,652	610,063	17.8
수 납 률	92.7	91.6	1.2
지원금지금액	4,038	4,376	-0.8

2. 추진실적

가. 징수관리의 효율성 제고

징수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07년도 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징수목표 수립·시달을 통해 보험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의거 소속기관별 징수목표를 부여하여 징수담당직원의 책임감 고취 및 목표관리 체계 확립 하였으며, 징수실적과 징수목표 달성여부를 분석하여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전략을 설정하였다.

징수목표 달성실적 부진기관(목표 달성을 하위 5개 기관)에 대하여 실태 점검을 통하여 부진원인을 파악하고 목표달성률 제고방안을 검토하고 세부추진 계획 점검 및 소속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한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07년 보험료 징수실적 달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건설업체 집중관리, 국가·지자체, 의료기관 및 전문직종을 우선 관리하였으며 가입·납부담당자와 체납관리담당자와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를 확립하였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시행중인 징수특례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동 제도에 대한 안내 및 적용제외신청 등 체계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홍보·전산입력요원을 활용하여 징수특례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제도상 주요내용과 적용제외 신청 안내, 보험료신고서 및 임금총액신고서 전산입력 등 소속기관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07년 보험료신고·납부대상 사업장(65만 개소)에 대한 안내 및 홍보계획을 시달하여 보험료 신고·납부 업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토털서비스 비회원용 보험료신고서 작성기 개발 등으로 고객편의 증진과 보험가입자의 자진신고율 향상을 도모 하였다.

보험료징수법 등 관련 법령의 주요 개정내용 및 업무처리요령 시달과 함께 책자(2,100부)를 배포하였고,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 시달과 동 내용이 담긴 책자(1,000부)를 제작하여 소속기관에 배포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 및 통일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 부담금 경감기준에 대한 노동부 고시가 변경되어 세부업무처리

방법을 시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본·지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이 상이한 사업장 등 보험요율 착오적용 의심사업장 2,734개소에 대한 착오적용 여부를 조사하여 1,845백만원(212개소)을 추징하였으며 313백만원(17개소)을 반환조치 하였으며, '07년 1~3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자료가 있음에도 개산입금총액을 0원으로 신고한 10,703개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1,678개소에 대하여 1,292백만원을 추가징수 하는 등 보험가입자의 성실신고 유도 및 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에 주력하였다.

나. 징수업무 효율성을 위한 업무환경 개선

'07.3.29.부터 고객의 보험료 납부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자동계좌이체제도를 도입하여 동제도를 이용하여 보험료 납부시 고용·산재보험료 각각 250원씩 공제하여 고객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잔고부족으로 인한 고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부분출금제도를 도입하여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자동계좌이체 신청사업장수	금 액	비 고
67,760개소 (목표대비 157.7% 초과달성)	1,100억원 (전년대비 329.7% 증가)	

보험가입자의 미처리 과납금을 인터넷(<http://total.welco.or.kr>)으로 조회·반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과납금 반환절차를 간소화하여 반환금을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써 과납금 총당·반환처리 지연으로 인한 고객불만 해소 및 고객만족도를 제고하였다.

그리고 고객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산재·고용보험간 총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편의를 제공하였으며, 기금수납업무 신규 수행 직원들이 업무노하우를 공유하여 기금수납업무 경감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금업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소속기관 직원들의 업무량 감소 및 수납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다. 보험사무대행기관 운영 효율화 및 신용카드 납부제도 활성화

보험사무대행기관 담당자의 보험사무능력 향상 및 보험사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보험사무대행기관 담당자용 실무편람 1,500부를 제작·배포하였으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실태 및 수임사업장의 적정사무대행 여부를 지도·점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적·처분하여 보험사무대행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지도·감독을 실시하였다.

점검대상	계	인가취소	경고	주의
345	149	2	91	56

※지원금회수 : 922천원(산재 : 592천원, 고용 : 330천원)

산재·고용보험료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납부사업자를 점차 확대하여 '07.12월 현재 6개사(구LG·삼성·현대·롯데·비씨카드, 국민은행)로 확대하였으며, 그동안 결제시스템을 카드사별로 각각 운영함에 따라 아이디, 패스워드 분실 등 관리의 어려움과 결제시스템 구성의 상이로 인하여 업무불편을 초래하였으나 한번의 로그인으로 6개 카드사의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통합결제시스템 구축을 완료('07.12월)하여 사용자 업무편의를 증진하였다.

〈연도별 신용카드 납부현황〉

(단위 : 건, 억원, %p)

구분	2006년도		2007년도		증감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0,182	9,327	71,542	19,640	78.0	110.6
고용보험	17,995	3,967	32,851	8,547	82.6	115.5
산재보험	22,187	5,360	38,691	11,093	74.4	106.9

3. 평가 및 향후과제

2007년도 산재보험 수납액은 45,518억원으로 전년대비 6,887억원 수납액이 증가하였으며, 징수목표 달성율은 100.9%로 4년 만에 징수목표를 초과달성 하였으며, 현년보험료 수납율 또한 93.8%로서 전년 대비 0.9%p 증가하였고,

'07년 징수목표 달성 부진지사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한 소속기관의 애로사항 및 지원사항을 파악하였으며, 집중관리사업장의 DM발송 및 보험료신고·납부기간동안 체계적 홍보를 실시하여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신용카드 납부사업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납부편의를 제공하였다.

향후 과제로서 2008년도에도 징수목표 달성을 위하여 '07년도 징수실적 등을 분석하여 동자료를 근거로 '08년도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 및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07년도까지는 사후 체납정리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나 '08년도부터는 체납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제 4 장

보험운영 관리 체계 효율화

제 1 절 ‘찾아가는 서비스제’를 통한 의료·재활서비스의 강화

1. 추진경과 및 현황

가. 추진경과

「찾아가는 서비스제」는 현장 요양·재활서비스 지원체계 도입방안 마련('05.6.8)으로부터 시작되어, 6개 지역본부 및 7개 지사에서 시범실시('05.8월~9월) 및 보상담당 직원 직무교육 실시('05.8월~10월)를 거쳐 '05.10월에 전면시행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찾아가는 서비스 전용프로그램 구축('06.6.18.), 준 케이스 매니저 선발('06.12월), 산재보상 찾아가는 서비스 브랜드로 “희망드림”을 선정('07.1월), 산업재해 다빈도 상병 매뉴얼 및 최초상담 안내서를 발간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07.10월) 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제」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나. 현 황

○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현황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비승인상담	최초상담	지원상담
2006년	213,147	5,153	67,010	140,984
2007년	245,880	11,496	54,356	180,028
증감(%)	32,733(15.4)	6,343(123.1)	-12,654(-18.9)	39,044(27.7)

○ 집중지원계획 수립현황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초기집중계획	의료집중계획	재활집중계획	진료계획서
2007년	17,417	5,496	4,395	7,431	95

2. 추진실적

○ 산재환자 서비스 만족도 제고

- '07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보상부문 만족도 지수 72.5점으로 전년대비 5.3점 증가하였다.

(단위 : %,점)

대분류	소분류	가중치	2005년	2006년	2007년	전년대비 증감
연금/ 보험금	소계	25.0	63.1	67.2	72.5	5.3
	산재유족지원	5.4	64.2	69.3	73.2	3.9
	산재 근로자지원	14.3	62.3	65.6	73.1	7.5
	산재재활지원	5.4	68.1	71.3	70.4	-0.9

○ 최초요양결정까지 소요기간 단축

- '07년 재해일부터 요양결정일까지 소요기간 55.5일로 전년대비 5.9%단축하였다.

(단위 : 건, 일, %)

구 분	요양결정자수	합 계	재해일-접수일	접수일-결정일
2006년	92,277	59.0	46.8	12.2
2007년	93,542	55.5	45.1	10.4
증감(율)	1,265(1.4)	△3.6(5.9)	△1.7(3.6)	△1.8(14.8)

※ 직권, 기타처리 제외. 당해연도 처리건

○ 사회복귀자의 평균요양기간 단축

- '07년 요양종결자의 평균사회복귀 기간은 211.1일로 전년도 251.7일 대비 40.6일 (16.1%)단축하였다.

(단위 : 건, 일, %)

연 도	종결자수	총 요양일수	평균 사회복귀기간	증감률
2004	89,362	22,522,345	252.0	
2005	88,098	23,982,221	272.2	8.0
2006	89,525	22,535,176	251.7	△7.5
2007	88,263	18,630,621	211.1	△16.1

○ 장해발생자 감소

-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으로 '07년 신규 장해 발생자 수는 36,672명으로 전년대비 6.0% 감소하였다.

(단위 : 명, %)

구 분	2006	2007	증 감	증감률
계	39,028	36,672	△2,356	△6.0
1~7급	7,022	6,353	△339	△9.5
8~14급	32,006	30,319	△1,687	△5.3

○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율 증가

-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이후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율은 '05년 42.3% → '06년 45.5% → '07년 49.9%으로 증가하였다.

3. 평가 및 향후 과제

가. 평가

산재보험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산재환자는 양질의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받아 조기에 직업·사회복귀를 하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는 적정성 등을 수시로 평가하여 적정진료를 하도록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산재보험의 서비스가 선진화되고, 산재보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최초요양승인자 중 약 38.6%(최초상담건수 54,356건 ÷ 최초승인건수 88,570건) 상담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요양서비스 제공 대상 산재환자 과다로 적정 서비스 제공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향후과제

찾아가는 서비스 내실화를 통한 신속·효율성 제고, 케이스 매니저 등 전문가 양성을 통한 전문·공정성 강화, 고객중심 업무처리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친절·감동의 고객만족도 향상으로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분야별 중점 과제를 추진할 것이다.

제 2 절 요양절차 및 관리의 개선

1. 요양관련 현황

가. 요양환자 현황

(단위 : 명, %)

소분류	2005년	2006년	2007년	전년대비 증감
합 계	50,332	46,139	44,256	△4.1
입 원	16,859	15,145	14,279	△5.7
통 원	33,473	30,994	29,977	△3.3

나. 산재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 현황

(단위 : 명)

구분	총계	양 방							한 방			
		소계	종합 전문	종합 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병원	치과 의원	소계	종합 병원	병원	의원
'05	4,765	4,370	43	225	697	3,112	20	273	395	18	109	268
'06	4,635	4,235	44	226	721	2,943	19	282	400	16	99	285
'07	4,904	4,548	44	239	915	3,048	25	277	356	19	93	244

2. 추진실적

가. 요양업무처리규정 개정

- 찾아가는 서비스의 도입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관리 체계를 변경하고, 요양서비스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였다.
- '05년 11월 11일 시행된 요양업무처리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첫째, 요양담당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둘째, 요양서비스 및 진료비 심사의 객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진료비의 전자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청구방법별로 처리기간을 차별화하였다.

- '05년 12월 29일에도 요양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재해조사 사항을 세분하고, 의료기관에서 전자적(토털서비스)으로 제출한 요양신청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의료기관 지정취소 사유에 '허위 소견서 발급'과 더불어 '진료기록 허위 작성'을 추가하였다.

- '06년 7월 5일 시행된 요양업무처리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정통합에 따라 「요양업무처리규정」, 서식규정을 통합하였다. 둘째, 자문의사의 종류와 이에 따른 역할을 구분하였다. 그동안은 자문의사라는 통일된 명칭을 사용하여 왔으나, 자문의사의 종류를 세분화(산재의료전문위원, 상시자문의사, 수시자문의사) 하였다. 셋째, 자문의사 추천자를 지사장,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로 명확히 하였다. 넷째, 의료기관개요서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현황통보서' 서식과 일치시켰다.

- 2007년 12월 27일 개정 2008년 2월 1일 시행되는 요양업무처리규정의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병행진료에 대한 인정기준을 확대하였으며, 의과와 한의과 요양에 대한 병행진료 기준을 신설하였다.

둘째, 추가상병 인정기준과 업무처리절차를 구체화하였다.

셋째, 요양업무처리의 관할 지사를 구체화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일정기간 진료실적 없는 의료기관 요양담당계약 해지를 명문화 하였고, 부적정 의료기관 재지정 금지 기간을 확대하였으며, 부적정한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처분기준 강화와 진료비 허위·부정청구와 부당청구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양질의 의료기관 선별을 위하여 의료기관 지정기준을 개정하였다.

나. 민원 인터넷 이용도 제고를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

- 민원서류를 서면 또는 우편접수 방식에서 인터넷을 이용 접수 및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된 인터넷 토털서비스 이용률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한 결과, 그 이용률이 대폭 향상('07년 88.9%)되어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다. 외국인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지원

- 외국인 산재근로자의 효율적인 이력관리 및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관리번호 부여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는공단 자체에서 외국인 관리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외국인등록번호 관리 체계로의 변경을 추진하였다.
- 외국인 산재근로자의 전문요양 지원을 위하여 산재의료관리원 인천중앙병원 외국인 산재근로자 전문병동 운영('07.8)을 지원하였다. 한편 외국인에 맞는 맞춤형 식단을 지원(식대)하고, 입원 요양 외국인 근로자 우선전원 방침을 시행하였다.

라. 업무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구 분	인프라 보강
전문인력 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재의료전문위원 15명 → 19명 확충 ○ 상시 및 수시 자문의사 보강
전문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이스매니저 워크숍 개최 ○ '07년도 준케이스 매니저 선발을 위한 사례발표회 개최
전산장비보강 및 프로그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산용량 증설 및 노후장비 교체 ○ PACS 16세트 추가 설치 ○ 전산프로그램 운영시스템 개선 및 신규 개발
업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의회시 및 지침 등록 전산 시스템 운영 ○ 산재의료전문위원 간담회 개최 ○ 자문의사협의회 정례화 : 월 1회 이상 ○ 진폐심사협의회 구성 운영

마. 산업재해 다빈도 상병 매뉴얼 발간

- 보상담당직원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상병 발생원인, 증상, 치료, 경과, 요양기간, 업무와의 관계 등 필수지식 위주로 편집하였다.

※ '00~'03년 사이 요양종결 된 다빈도 200건 이상 상병 중 85개 상병이 대상

바. 요양관리 합리화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한 지침 마련

- 추가상병, 재요양, 병행진료, 간병료 등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 방향 유지를 위한 요양

업무 관련 지시사항을 시달하였으며,

- 특별진찰제도의 통일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진찰제도 관련 업무지시를 시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간병범위」와 관련 각 호별 업무처리 기준 및 간병료 지급방법 일원화를 위한 간병료 지급업무 처리지침 시달
- 진폐 유족보상급여 결정절차 일관성 유지를 위한 진폐유족급여 청구관련 업무지침 시달
- 산재보험시설 활용 확대, 폐질환 관련 직업병 역학조사 실시기관 확대, 의학적 자문의 효율화를 위한 산재근로자 요양관련 업무지시
- 또한 행사 중 재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증거자료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법령·규정·지침·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처분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사 중 재해에 대한 재해조사 매뉴얼을 개선하였다.

3. 평가 및 향후 과제

가. 평가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요양절차 및 요양관리를 위한 요양업무처리규정 개정, 각종 업무 처리지침을 통하여 일관성 있고 공정한 요양업무 처리로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 전문인력(산재의료전문위원) 보강, 전문인력(케이스 매니저) 양성, 업무인프라(차량, PACS 등) 지원을 통한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로 신속·공정한 민원업무 처리에 기여하였다.

나. 향후 과제

- 산재보험법 및 그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효율적인 요양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업무추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 3 절 산재병원 특화·전문화 추진을 통한 산재병원 역할강화 추진

1. 추진 배경

산재환자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체계적인 의료·재활서비스 제공이 필요하였으나, 민간 대형병원은 산재환자 진료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고, 중소병원은 입원위주의 기본진료로 요양기간 장기화를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산재환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등 민간에 위탁하기 어려운 공공의료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재의료관리원이 설립되었으나, 최근 그 역할 및 운영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및 경영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9개병원에 대하여 산재병원 특화·전문화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2. 추진 내용

산재환자 중심으로 진료분야를 전문화·특화시킨다는 방침아래, 인천중앙병원, 창원병원, 대전중앙병원, 안산중앙병원, 순천병원은 현재의 종합병원에서 산재전문병원으로의 특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태백중앙병원의 경우 지역내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동해병원은 일반 병원에서 산재전문병원으로의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선병원과 경기요양 병원은 산재요양병원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병원별로 전문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산재환자의 특성에 따라 인천·창원·대전병원은 외과재활분야에 특화시키고, 태백·안산·순천·동해병원은 호흡기 중심의 내과 분야 및 외과재활에 주력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현재 인천·대전·창원병원에 운영 중인 기존 재활전문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08년에는 안산·순천, '09년에는 태백·동해에 신규 재활전문센터를 건립할 계획에 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9개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에 대한 합리적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의료장비의 체계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 5 장

산재보험 재활·복지사업

제 1 절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1. 재활상담

산재장해인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고 요양종결 후 직업 및 사회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재활상담제를 '99년 9월 시범 도입하여 운영 후 '00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07년 58,305명을 우선 상담하여 이 중 재활서비스 희망자 7,326명에 대하여 초기면접을 실시하였고, 6,969명은 구체적인 직업 목표를 갖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07년에 3,942명이 직업에 복귀하여 전년도의 3,029명보다 913명(30.1%)이 증가하였다.

〈재활상담 실적〉

(단위 : 명, %)

구 분	총상담인원	초기면접	직업평가	재활계획수립	직업배치
'07	58,305	7,326	6,735	6,969	3,942
'06	54,175	7,606	6,999	7,302	3,029
증 감	4,130	-280	-264	-333	913
증감률	7.6	-3.7	-3.8	-4.6	30.1

'07년 직업배치 실적은 3,942명으로 전년대비 913명(30.1%)이 증가하였고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원직복귀가 102명으로서 전년대비 20명 감소하였고, 재취업은 전년대비 874명, 자영업이 59명 각각 증가하였다.

〈직업배치자 현황〉

(단위 : 명, %)

구 분	계	원직복귀	재 취 업	자 영 업
'07	3,942(100.0)	102(2.6)	3,353(85.1)	487(12.3)
'06	3,029(100.0)	122(4.0)	2,479(81.9)	428(14.1)

2. 후유증상관리제

후유증상관리제란 장애보상을 받은 후 그 상병 또는 장애의 특성으로 동통 등의 증상이 남아 있거나 후유증상의 예방을 위하여 의학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 간편한 절차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병의 재발·악화에 대한 불안 없이 노동능력을 회복·유지하여 재할 및 사회복귀촉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07년도 후유증상진료카드 발급자수는 18,487명으로 전년대비 12.4% 감소하였으며, 후유증상진료비용 수급자수는 37,560명, 지급금액은 29,47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6,522명(21%), 9,202백만원(45.4%) 증가하였다.

〈후유증상진료비 지원 실적〉

(단위 : 명, 천원, %)

구 분	진료카드발급자수	수급자수	지원금액
'07	18,487	37,560	29,479,008
'06	21,101	31,038	20,276,189
증 감	-2,614	6,522	9,202,819
증 감 륜	-12.4	21.0	45.4

한편 '06년에는 “후유증상상병재분류”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공단 후유증상진료규정을 개정('07.7.1 시행예정)하여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다. 첫째, 그동안 후유증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 “망간 등 유기화학 물질에 의한 파킨슨증상”을 대상상병에 포함시켰다. 둘째, 응급상황 발생시(재요양요건 미해당)에도 1주일 이내의 입원진료를 인정하여 서비스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다. 셋째, 흉터장애로 인한 후유증상(3도화상 또는 피부이식에 따른 후유증상)의

적용대상 장애등급을 기존 12급에서 14급으로 확대하였다. 넷째, 기존 17개 후유증상상병은 상병간 중복 및 명확한 인정기준이 없어 상병관리의 애로사항이 많아 진료과목 중심으로 총 14개 상병으로 재분류하였으며, 관리범위·적용대상·관리내용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다.

3. 의료재활(취미활동반) 지원

진폐증으로 의료기관에 장기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실정에 맞도록 취미활동반을 개설·운영토록 하고, 그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요양으로 위축된 환자의 정서적·심리적 안정 도모 및 사회적응 능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07년도 현재 지원 대상 28개 의료기관 중 실시 의료기관은 28개 기관으로서 전년대비 2개 기관(7.7%)이 증가, 취미활동반은 93개 반으로 전년과 동일, 참여인원은 2,055명으로서 전년대비 131명(6%)이 감소하였다.

〈의료재활(취미활동반) 지원 실적〉

(단위 : 개소, 개, 명, 천원, %)

구 분	의료기관수	취미활동반수	참여인원	지원금액
'07	28	93	2,055	273,371
'06	26	93	2,186	172,211
증 감	2	0	-131	101,160
증 감 륜	7.7	0.0	-6.0	58.7

4. 직업훈련비용지원

훈련원의 지역적 편중 및 훈련직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98년부터 일반시설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에도 그 비용을 지원하여 직업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07년도에는 5,731명을 선발하여 '06년도 5,680명 대비 51명(0.9%)이 증가하였다. '07년도 총 수료인원은 4,806명으로 이 중 2,976명이 직업에 복귀하여 직업복귀율은 61.9%이며 '06년도 52.9% 대비 9%p가 증가하였다.

〈직업훈련 비용지원 실적〉

(단위 : 명, 천원, %, %p)

구 분	선발인원	중도탈락	수료인원	취업자	직업복귀율	지원금액
'07	5,731	354	4,806	2,976	61.9	17,171,348
'06	5,680	237	3,361	1,779	52.9	11,478,885
증 감	51	117	1,445	1,197	9	5,692,463
증 감 륜	0.9	49.4	43.0	67.3	17.0	49.6

5.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창업을 희망하는 재활훈련원 수료자, 직업훈련비용지원사업 훈련과정 수료자, 자격기본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을 취득한 자 및 진폐장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00년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점포를 전세로 얻어 사업희망자는 이자만 납부하도록 하는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07년 중 총 125명의 산재근로자가 점포지원을 받았으며, '06년 149명보다 16.1%(24명), 지원금액은 7,249백만원으로 '06년 대비 14.7% 각각 감소하였다.

〈점포지원 실적〉

(단위 : 명, 천원, %)

구 분	'07	'06	실적증감	
			증 감	증 감 륜
인 원	125	149	-24	-16.1
금 액	7,249,000	8,501,900	-1,252,900	-14.7

※ 지원대상자 1인당 1억원 이내의 전세점포를 공단명의로 임대하여 최장 5년 간 지원하며, 월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자가 월세 부담.

6. 장애급여자 직장복귀지원금 등 지급

장애급여자의 고용 확대를 위하여 요양종결 후 원직장 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재취업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2003년 7월 1일 직장복귀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고, 2004년 7월 1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2006년 9월 1일부터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애급여자의 노동력 회복 및 직무수행을 돕기 위해 재활운동지원 및 직장적응훈련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장해급여자 직장복귀 지원실적〉

(단위 : 명, 천원, %)

구 분	'07	'06	실 적 증 감	
			증 감	증 감 률
인 원	630	554	76	13.7
금 액	2,905,894	2,779,938	125,956	4.5

7. 재활훈련원 운영

산재장해인의 재취업 및 창업 등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안산/광주재활훈련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07년에는 4월부터 훈련이 종료됨에 따라 안산/광주재활훈련원에서 월평균 36.8명(안산 30.3명, 광주 6.5명)의 훈련생이 훈련을 받아 전년대비 149.6명이 감소하였다.

〈월평균 훈련인원〉

(단위: 명, %, %p)

구 분	계			안 산 훈 련 원			광 주 훈 련 원		
	정 원	월 평 균 훈련인원	달성률	정 원	월 평 균 훈련인원	달성률	정 원	월 평 균 훈련인원	달성률
'07	250	36.8	14.7	130	30.3	23.3	120	6.5	5.4
'06	250	186.4	74.6	130	100.4	77.2	120	86.0	71.7
증감	-	-149.6	-59.9	-	-70.1	-53.9	-	-79.5	-66.3

'07년에는 총 90명이 수료하였고, 이 중 84명이 직업에 복귀하여 직업복귀율은 93.3%로서, '06년 96.4%대비 3.1%p 감소되었다.

〈재활훈련원 수료자 직업복귀율〉

(단위: 명, %, %p)

구 분	계			안 산 훈 련 원			광 주 훈 련 원		
	직 업 복귀율	수 료 인 원	직업복귀 인 원	직 업 복귀율	수 료 인 원	직업복귀 인 원	직 업 복귀율	수 료 인 원	직업복귀 인 원
'07	93.3	90	84	92.6	54	50	94.4	36	34
'06	96.4	225	217	99.1	117	116	93.5	108	101
증감	-3.1	-135	-133	-6.5	-63	-66	0.9	-72	-67

8. 재활스포츠 지원

요양종결 후 장애가 남은 산재근로자에게 저하된 노동능력 및 자신감 회복, 2차적 장애예방, 직업 및 사회적응능력 향상 및 조기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01년 3월 산재근로자들의 스포츠활동을 지원해 주는 재활스포츠 지원사업을 도입하였다.

'07년에는 3,385명의 산재근로자에게 748백만원의 스포츠비용을 지원하였으며, '06년 2,544명 및 655백만원 대비 33.1% 및 14.2%가 각각 증가하였다.

〈재활스포츠 지원실적〉

(단위 : 명, 천원, %)

구 분	'07	'06	실 적 증 감	
			증 감	증 감 륜
인 원	3,385	2,544	841	33.1
금 액	748,321	655,446	92,875	14.2

9.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산재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자립을 목표로 자기관리능력 및 지역사회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사회적응훈련과 직업전 직장복귀, 창업을 위한 중간단계인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07년도 사회적응프로그램 승인인원 716명 중 523명이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73%의 실시율을 나타냈으며, 전년도 대비 운영기관이 1개소 감소하였고, 실시완료인원이 523명으로 전년대비 19명(3.8%) 증가하였다.

〈사회적응프로그램 위탁운영 지원실적〉

(단위 : 개소, 개, 명, 천원, %)

구 분	협정체결기관/과정	승인과정/과정	운영과정/과정	승인/실시완료인원	지원금액
	기관수	기관수	기관수	승인인원	
'07	31	27	27	523	330,941
'06	30	28	28	504	320,040
증 감	1	-1	-1	19	10,901
증 감 륜	3.3	-3.6	-3.6	3.8	3.4

제 2 절 산재근로자 복지사업

1.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83년 하반기에 산재근로자 복지사업의 하나로 산재근로자 자녀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사 자체자금으로 사망근로자 및 중증장애자(1~3급) 자녀, 공사 소속병원에서 6개월 이상 치료 중인 환자의 자녀 가운데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84년부터는 정부에서 출자를 받아 기금을 조성하고, 사망 및 3급 이상 장애자 자녀까지, '85년에는 사망 및 7급 이상 장애자 자녀로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였고, '86년도에는 사망 및 5급 이상 장애자의 자녀로서 의과대학생 10명을 포함·선발하였다. '87년에는 사망 및 2급 이상 장애자 자녀로서 의대를 포함한 일반대학생도 선발하였는데 이는 근로복지공사 산하 의료기관의 부족한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다. '88년에는 사망 및 3급 이상 장애자 자녀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의 자녀를 지급대상에 포함하였고, '90년에는 5급 이상으로, '92년에는 7급 이상 및 교육부장관이 학력을 인정하는 중·고등학교로 장학금 지급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고, '01년에는 산재근로자 1가정당 2자녀 제한을 폐지하였다.

○ 사업개요

- 지급대상 : 산재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유자녀, 산재장애등급 1~7급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수급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 지원범위 : 고등학생(교육부장관 학력인정 학교)의 학비전액을 고교졸업시까지 무상지원

'06년부터 의무교육대상인 중학생을 신규선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자금 부담이 큰 고교생 지원인원을 확대하여 '07년 중에는 4,810명에게 6,222백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전년대비 수혜인원은 91명(1.9%) 감소하였으나, 지급금액은 535백만원(9.4%)가 증가하였다.

〈산재근로자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07	'06	실 적 증 감	
			증 감	증 감 률
인 원	4,810	4,901	-91	-1.9
금 액	6,222	5,687	535	9.4

2. 산재근로자 및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부사업

산재근로자의 대학생 자녀에게 전문교육 수혜기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97년도부터 대학 학자금을 대부하여 주고 있으며, '02년에는 장애등급 7급에서 9급 이상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실납부금액까지 한도를 증액하였으며, '03년 3월에는 상환기간의 이자율을 연 5%에서 연 3%로 인하하였다.

- 대부대상자 : 산재사망근로자 자녀, 산재장애등급 1~9급 근로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수급자 자녀
- 대부한도액 : 학기당 실납부금액 전액
- 대 부 조 건 : 졸업 다음 연도 2.28일까지 거치(연리 1%) 4년 분할 상환(연리 3%)

'07년 중에는 1,493명에게 4,412백만원을 대부해 주어 전년대비 수혜인원은 180명(10.8%) 감소하였으나, 지급금액은 67백만원(1.5%)이 감소하였다.

〈대학 학자금 융자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07	'06	실 적 증 감	
			증 감	증 감 률
인 원	1,493	1,673	-180	-10.8
금 액	4,412	4,479	-67	-1.5

3.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87년도부터 정부의 출자를 받아 조성한 기금으로 장기 저리로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87년에는 사망자 유족 및 장애등급 1~3급자, '88년에는 사망자 유족 및 5급 이상 장애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담보대부 500만원, 신용대부 300만원 한도, 연리 6%, 2년 거치 8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농협중앙회 전국 지점을 통해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해 주었다. '89년에는 재정특별회계 융자금 100억원을 확보하여 대부대상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를 포함시키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상환기간을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거치기간을 3년 더 연장하여 대부조건을 완화하였다. '90년에는 담보대부의 경우

1,000만원까지, 대상도 7급 장애자까지 확대하였으며, '96년부터 신용대부 한도액을 500만원으로 증액하였다. '01년에는 담보대부 한도를 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이자율도 연리 3%로 낮추어 산재근로자의 부담을 줄였으며 '02년에는 대상을 9급 장애자까지 확대하고 담보대부 한도액을 3,000만원으로 높였다. '04년부터 담보물권이 없는 산재근로자에게 골고루 대부수혜를 제공하기 위해 담보 대부재원을 신용보증 대부재원으로 전환하여 많은 근로자가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받게 되었다.

- 대부대상자 : 산재사망자 유족, 신체장애자(장애등급 1~9급), 상병보상연금수급자
- 대부한도액 : 신용대부 최대 1,000만원
- 대 부 조 건 : 연리 3%,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06년부터 일반생업자금 용도에서 목적별 대부(의료, 혼례, 장례, 주택이전, 차량구입비)로 전환하였고, 대부한도는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증액하였으나, '07년 중에는 1,096명에게 8,918백만원을 대부해 주어 전년 대비 수혜인원은 114명(9.4%) 감소하였고, 지급금액도 1,068백만원(10.7%) 감소하였다.

〈생활안정자금 대부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구 분	'07	'06	실 적 증 감	
			증 감	증 감 률
인 원	1,096	1,210	-114	-9.4
금 액	8,918	9,986	-1,068	-10.7

제 3 절 산재보험시설 설치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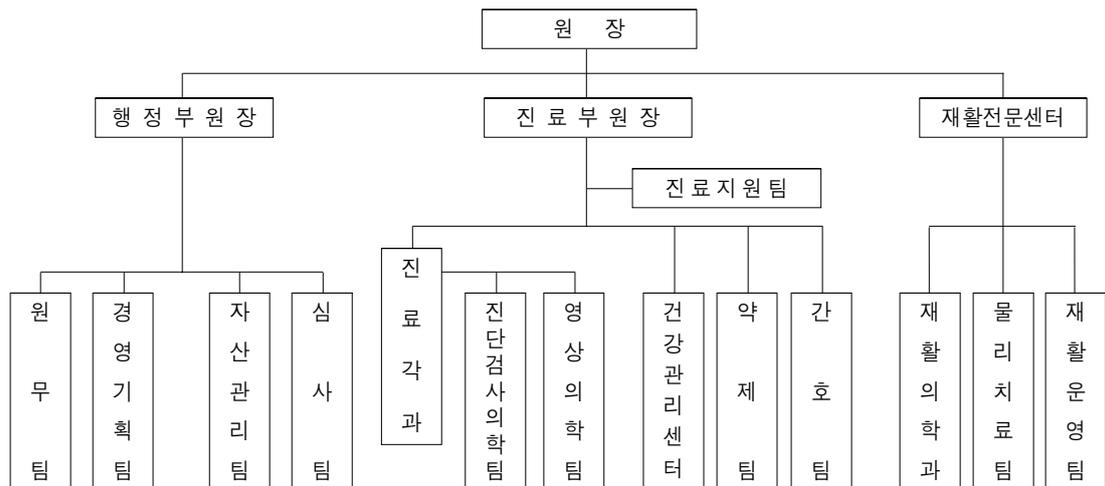
1. 병원시설

가. 인천중앙병원(인천광역시 부평구 기능대학길 4)

병원연혁

- 1983 근로복지공사 중앙병원 신축·개원(18개과 진료과, 300병상)
- 1995 (재)산재의료관리원 중앙병원으로 재출범
- 1996 산업재활원과 중앙병원 통합(700병상)
- 2001 (재)산재의료관리원 인천중앙병원으로 명칭변경
- 2002 종합전산망 완비 및 최첨단 MRI 도입
- 2003 의료영상저장전달시스템(PACS) 완비
- 2006 허가병상 650병상으로 병실 조정(8병동 폐쇄)
- 2006 재활전문센터 설치운영 및 야외운동재활센터 개소
- 2007 인천중앙한방병원 개설 및 수중운동재활관 개소

기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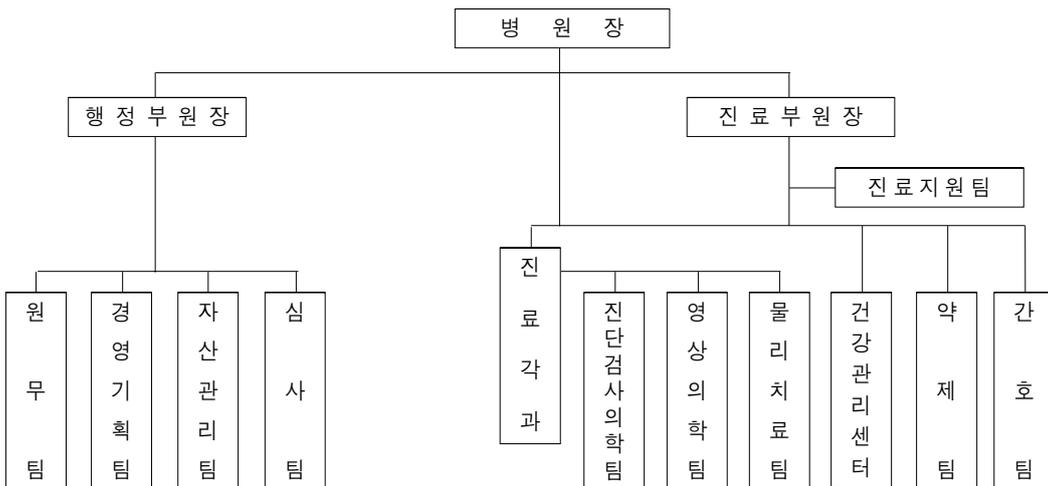


나. 태백중앙병원(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195)

병원연혁

- 1936 삼척개발주식회사 삼척탄좌병원으로 설립
- 1950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부속병원 이관
- 1975 사단법인 한국근로복지공사 장성병원 이관(180병상)
- 1977 근로복지공사 장성병원 이관
- 1988 장성병원 및 규폐센터 증·개축(380병상)
- 1995 근로복지공사에서 (재)산재의료관리원 장성병원으로 이관
- 1997 (재)산재의료관리원 태백중앙병원 명칭변경
- 2007 현재 허가병상 544병상

기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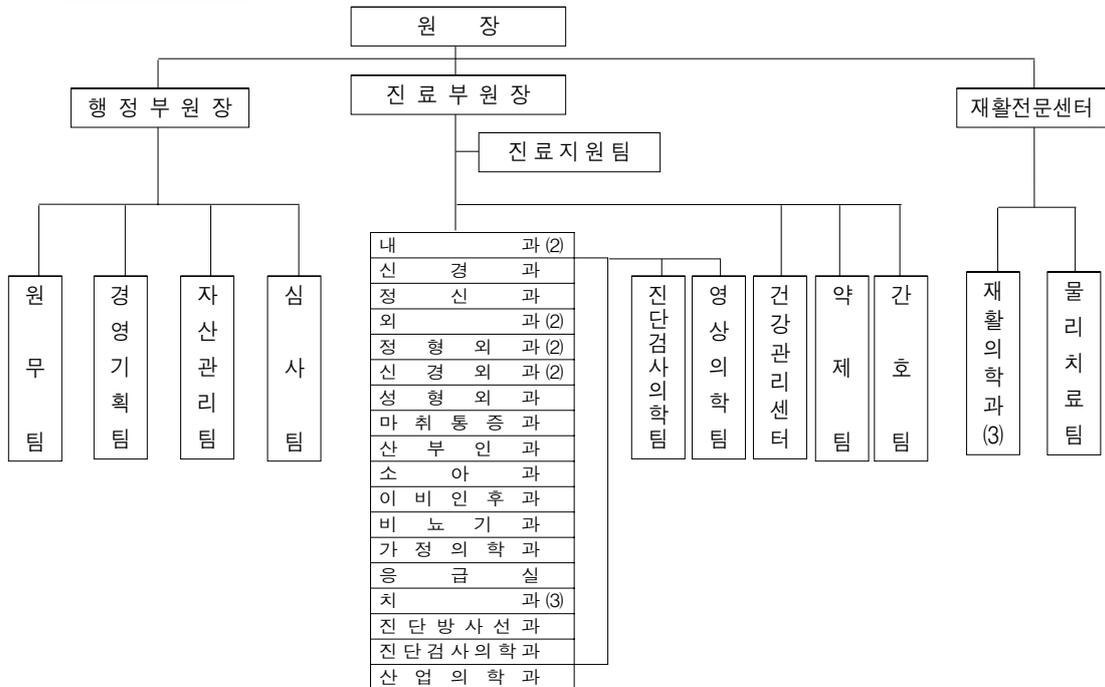


다. 창원병원(경남 창원시 중앙동 104-1)

병원연혁

- 1979 15개 진료과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창원산재병원 개원
- 1982 창원병원으로 명칭변경
- 1988 지하 1층, 지상 2층의 별관 증축
- 1993 신관병동 200병상 준공(지하 1층, 지상 6층), 부산대학교병원과 모자병원 체결
- 1994 본관 병동 개보수 완료로 400병상 허가, 종합건강진단센터 개설
- 1995 대구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과 자매결연 체결
근로복지공사에서 (재)산재의료관리원 창원병원으로 이관
- 1996 진주 경상대학교병원과 자매결연 체결, MRI 도입
- 1999 한방의원 개설 (임대운영)
- 2000 종합전산망 (OCS) 구축완
- 2003 의료영상저장전달시스템(PACS) 완비
- 2004 건강관리센터 증축
- 2005 재활 물리치료실 증축, Web 의료영상저장전달 시스템(PACS) 구축
- 2006 종합건강센터 증축, 의료기관 최초의 원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2007 재활전문센터 개소로 통합 재활치료 시스템 구축

기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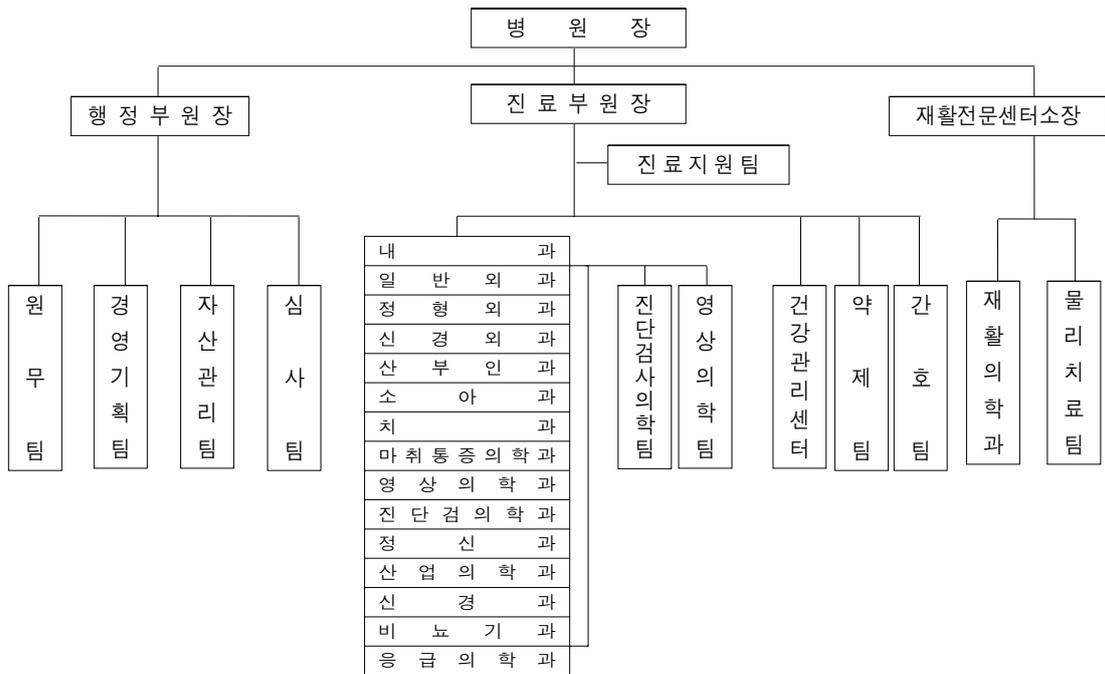


라. 대전중앙병원(대전 대덕구 법동 285-3)

병원연혁

- 1991 250병상 10개 진료과의 대전재활병원으로 개원
- 1992 대전중앙병원으로 명칭 변경
종합병원으로 승격 및 전공의 수련병원 자격 취득
- 1993 건강관리센터 및 종합건강진단 센터 개설
- 1994 충남대병원과 모자병원 협정 체결, 재활병동 증설
- 1995 근로복지공사에서 (재)산재의료관리원 대전중앙병원으로 이관
17개 진료과 300병상 증설
- 1996 350병상으로 증설
- 1998 '98.6.9 신관 증축 및 본관 개보수공사 준공
- 1999 한방병원개설로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
- 2002 허가병상 450병상으로 증설
- 2003 최신형 MRI도입, 근골격계질환 진단 전문기관 지정
- 2006 9.25 재활전문센터 개소

기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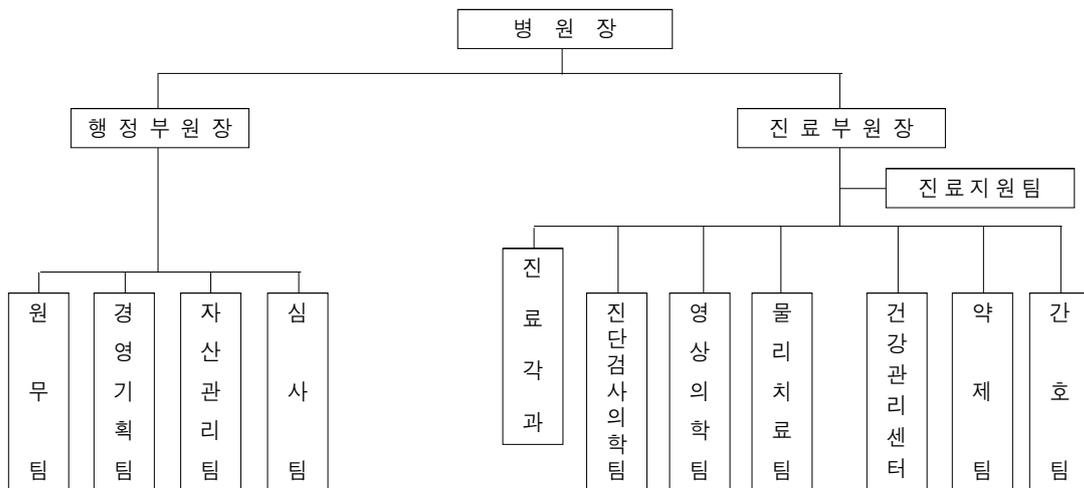


마. 안산중앙병원(경기도 안산시 일동 95)

병원연혁

- 1985 100병상 규모 6개 진료과의 반월병원으로 개원
- 1986 건강관리센터 개설
- 1991 신경정신과 진료기능 중앙병원으로 이전
- 1992 병원 5층 개축 및 6층 증축공사로 200병상으로 확충, 소아과 개설
- 1994 안산중앙병원으로 명칭 변경, 종합병원으로 승격(허가병상 206병상)
- 1995 근로복지공사에서 (재)산재의료관리원 안산중앙병원으로 이관
- 1996 허가병상 240병상으로 변경
- 1997 인턴수련병원 지정
- 1999 병원 보수 및 증축공사로 317병상으로 확충
- 2000 허가병상 274병상으로 변경
- 2001 허가병상 284병상으로 변경
- 2002 허가병상 296병상 변경 진폐전문병동(75병상)준공 및 본관병동 34병상 증축
- 2003 지상 3층, 지하 2층 200병상 규모 진폐전문병동 신축공사 착공
- 2005 허가병상수 338병상, 14개진료과 변경(정신과 개설) 허가병상수 528병상으로 조정진폐전문병동 190병상 개설
- 2006 허가병상수 485병상으로 변경(신경과 개설), 직업성폐질환연구소 개소
- 2007 병원 내·외부 리모델링, 외국인 산재근로자 전문병동 개소(5실 30병상)재활의학과 개설

기구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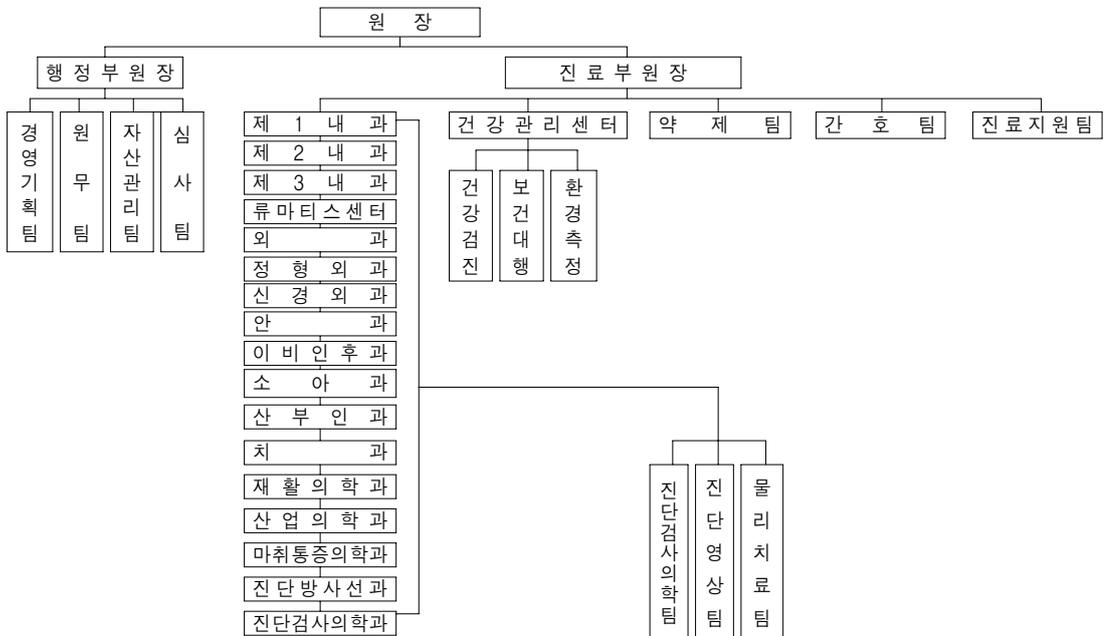


바. 순천병원(전남 순천시 조례동 544)

병원연혁

- 1985.5. 200병상 규모로 개원, 산업보건사업 실시
- 1989.9. 2병동 증축
- 1995.4. 근로복지공사에서 (재)산재의료관리원 순천병원으로 이관 250병상 허가
- 1996.5. 비뇨기과, 흉부외과 신설
- 1996.8. 최신형 전신용 컴퓨터 단층촬영장치(WCT) 도입
- 1998.1. 자기공명영상단층촬영기(MRI) 도입
- 2000.4. 원광대학교순천한방병원 개원 양·한방협진체계 구축(50병상)
- 2002.6. 전남 동부권 최초 재활의학과 및 산업의학과 개설
- 2002.6. 의료기관개설허가병상수 296병상으로 허가병상수 증설
- 2004.6. 의료기관개설허가병상수 288병상으로 변경
- 2005.8. 의료기관개설허가병상수 294병상으로 변경

기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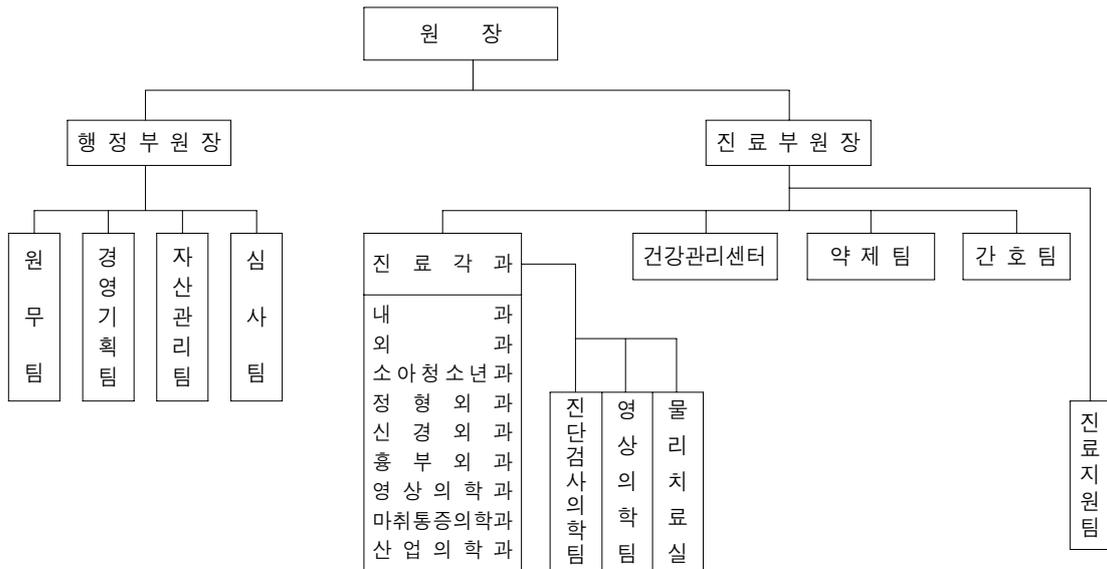


사. 동해병원(강원도 동해시 평릉동 190)

병원연혁

- 1983 270병상 규모의 광산근로자를 위한 진폐 전문요양병원으로 개원 5개 진료과 개설
- 1985 결핵과 개설, 진폐정밀진단 실시
- 1995 근로복지공사 동해병원에서 (재)산재의료관리원으로 변경
- 1998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 44실 270병상에서 55실 341병상으로 변경
- 2002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 55실 341병상에서 60실 385병상으로 변경
- 2003 처방전달시스템(OCS) 구축
- 2004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 60실 385병상에서 60실 360병상으로 변경
진료과목 변경, 일반내과의 4개과에서 일반내과의 3개과로 변경
- 2005 진료과목 변경, 일반내과의 2개과에서 일반내과의 7개과로 변경
60실 360병상에서 84실 496병상으로 변경,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 2006 진료과목 변경, 일반내과의 8개과에서 일반내과의 9개과로 변경, 소아과 개설
84실 496병상에서 86실 508병상으로 변경
- 2007 진료과목 변경, 진단방사선과에서 영상의학과로, 소아과에서 소아청소년과로 명칭 변경

기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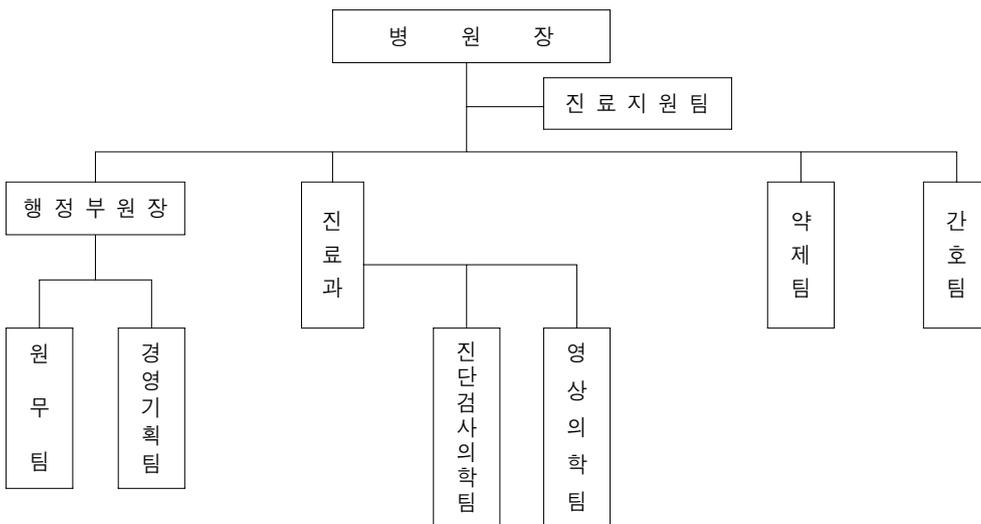


아. 정선병원(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 4리 산430)

병원연혁

- 1988 진폐전문병원으로 개원(150병상 4개 진료과)
- 1989 가정의학과 개설
- 1990 전문내과 개설
- 1992 허가병상 200병상으로 증설 운영
- 1995 근로복지공사 정선병원에서 (재)산재의료관리원 정선병원으로 법인 변경
- 1997 산업의학과 개설, 복지관 개관
- 1998 허가병상 253병상으로 증설 운영
- 2001 생활관 개관
- 2002 허가병상 270병상으로 증설 운영, 소아과 개설, 장례예식장 신축 공사
- 2003 허가병상 284병상으로 증설 운영
- 2004 허가병상 288병상으로 증설 운영
- 2006 병원개보수공사 시행
- 2007 병원개보수공사 완료
병상수 조정 (허가병상 288병상에서 228병상으로 조정)

기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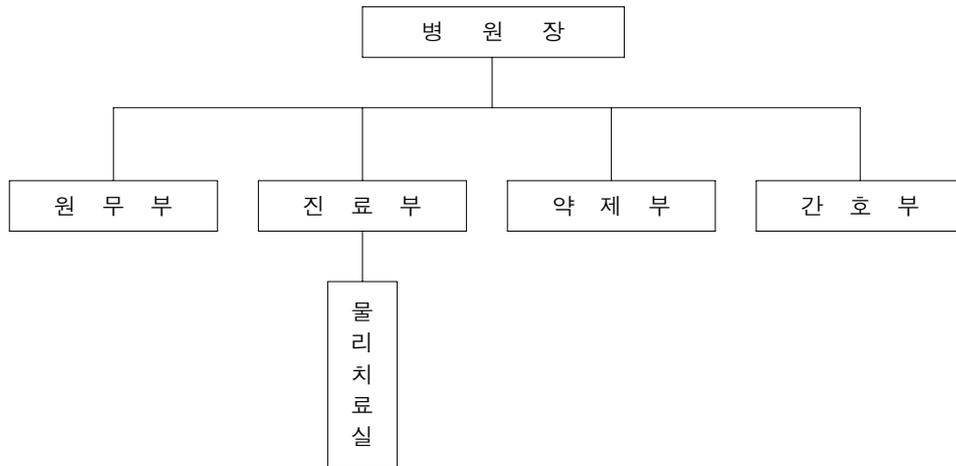


자. 경기요양병원(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화수리 산 21-11)

병원연혁

- 1985 산재환자 요양기관으로 개원(150병상)
- 1993 척추손상센터로 개편(100병상)
- 1996 경기요양병원으로 명칭변경(의원급에서 병원급으로 승격, 110병상)
- 1998 175병상으로 확대
- 2002 180병상으로 확대
- 2005 174병상으로 변경

기구표



2. 케어센터

가. 경기케어센터

- 목 적 : 중증·고령 산재장해인의 주거 및 생활공간 제공
-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수리 40-5
- 시설현황 : 부지 18,000㎡(5,445평), 연면적 12,082㎡(3,655평) 지하 1층, 지상 3층
- 주요시설 : 의무실 및 처치실, 물리치료실, 생활보조원실, 식당 및 조리실, 목욕시설 등 복지시설, 사무시설 등
- 수용인원 : 100명(장해 1~2급 : 1인 1실, 장해 3급 : 2인 1실)
- 부지면적 : 경기요양병원 부지 총 82,165㎡ 중 18,000㎡(5,445평)
- 건 립 비 : 216억원 (건축비 19,165백만원, 자산취득비 2,453백만원)
- 공사 착공일 : '05.2.25. 공사 준공일 : '06.10.26.
- 운영(시범운영) : '07.10.22.
- 인력운영 : 43인(정규직 8인, 민간위탁 35인)
 - 인력구성(정규직)

총원(명)	원장(시설장)	행정직	간호직	사회복지사	의무직
8	1	2	3	2	1

※ 민간위탁 : 간병인 25명, 영양사 및 조리원 3명, 위생 2명, 전기·기계 3명, 경비 2명

- 2008년 예상운영비

(단위 : 백만원)

합 계	인건비	재료비	경비 등
1,454	993	29	432

- 입소대상
 - 입소일 현재 60세 이상인 산재근로자로서 산재장해 1~3등급인 자
 - 60세 미만인 자는 장해등급 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 입소인원 및 월이용료

구 분	장해1등급	장해2등급	장해3등급
입소인원(명)	40	40	20
월이용료(원)	1,163,000	775,000	509,000

나. 강원케어센터

- 목 적 : 고령·무의탁 진폐장해인의 주거 및 생활공간 제공
- 소 재 지 :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산 61-13
- 시설현황 : 부지 34,272㎡(10,385평), 연면적 6,491㎡(1,967평), 지하 1층, 지상 3층
- 주요시설 : 의무실 및 처치실, 물리치료실, 생활보조원실, 식당 및 조리실, 목욕시설 등 복지시설, 사무시설 등
- 수용인원 : 100명(2인 1실)
- 건 립 비 : 141억원(토지매입비 1,123백만원, 건축비 12,184백만원, 자산취득비 787백만원)
- 공사 착공일 : '05.11.10. 공사 준공일 : '07.9.28.
- 운영(시범운영) : 2008년 4월
- 인력운영 : 32인(정규직 7인, 민간위탁 25인)

- 인력구성(정규직)

총원(명)	원장(시설장)	행정직	간호직	사회복지사	의무직
7	1	2	3	1	1

※ 민간위탁 : 간병인 15명, 영양사 및 조리원 3명, 위생 2명, 전기·기계 3명, 경비 2명

○ 2008년 예상운영비

(단위 : 백만원)

합 계	인건비	재료비	경비 등
1,664	787	24	853

○ 입소대상 (아래조건 모두 충족한 자)

- 65세 이상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진폐장해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소득수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 월 입소료 : 200,000원

※ 입소비는 건강보험급여의 일반식 보험수가('07년 3,390원)의 70% 수준

- 간병서비스, 산소서비스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서비스는 입소자 부담

3. 연구기관

가. 재활공학연구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47-3)

설립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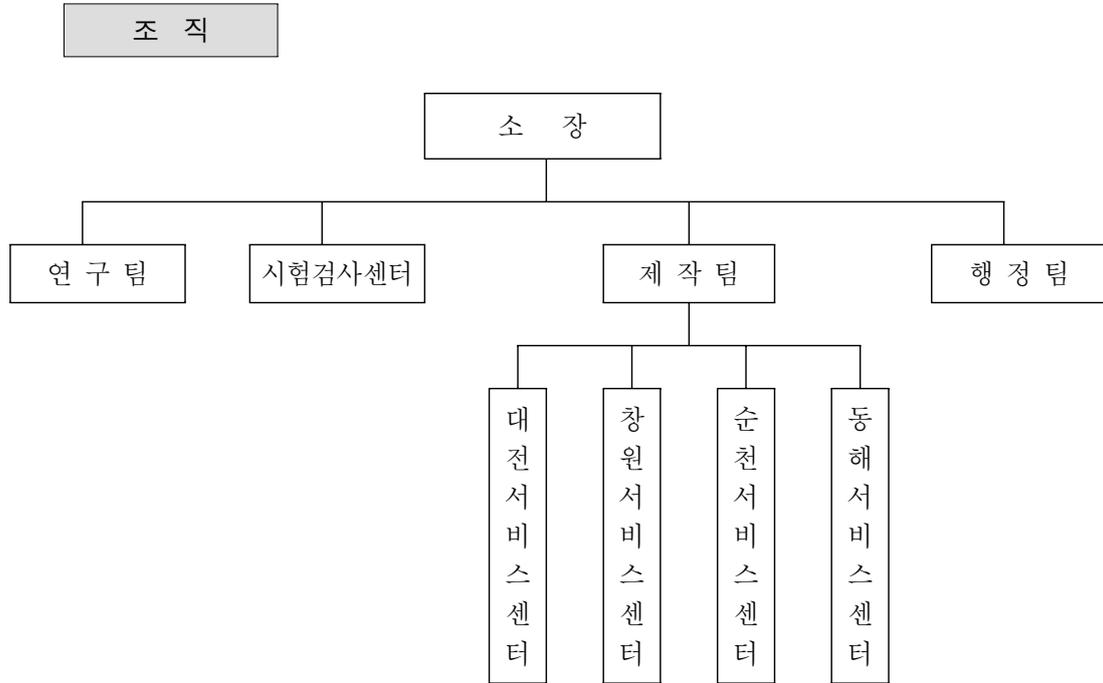
- 첨단공학과 임상의학을 연계하여 재활보조기구 및 재활치료·훈련기법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보급함으로써 산재장해인의 신체재활 및 사회복귀촉진을 목적으로 함.

연혁

- 1994 산재의료관리원 전신인 근로복지공사에 “재활공학연구센터” 설립
- 1998 세계 두 번째로 국산 인공지능의지 개발 및 상품화
- 1996 산업자원부로부터 국제표준화(ISO-TC173) 한국 간사기관으로 지정
- 2000 전국 순회 ‘의지/보조기/휠체어/ 이동서비스’ 버스 운행 시작
- 2001 국내 최초 수/전동 전환형 휠체어 개발
- 2002 ‘재활공학연구소’로 명칭 변경
- 2002 대전, 창원, 순천, 동해 4개 지역에 재활보조기구 서비스센터 설치
- 2003 보건복지부로부터 차세대 휴먼텍 ‘동작회복 신기술연구센터’로 지정
- 2005 산업자원부 고령친화사업기반조성사업 품질관리기반구축부분 담당지정
- 2007 산업자원부로부터 국제표준화[ISO TC-168] 간사기관으로 추가지정
- 2007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국가공인 의료기기 시험 검사기관으로 지정
- 2008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대상 복지용구 시험검사기관 지정

주요 사업

-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 재활치료·훈련기법의 연구 및 장애인 신체재활프로그램의 운영
- 재활보조기구 및 장애인 기기제품의 표준화 및 시험·검정업무
- 장애인 재활·복지산업육성 및 관련 인력의 양성·교육



인 원 현 황

(단위 : 명)

구 분	계	기관장	1급직	연구직	전문직	기술기능직	일반직
정원	45	1	-	18	1	19	6
현원	44	1	-	18	-	18	7

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 95)

설 립 목 적

- 직업성 폐질환과 합병증에 대한 임상연구·역학조사를 통해, 직업성 폐질환에 대한 진료 표준화 및 진폐요양체계 개발 등 정책연구를 목적으로 함.

조 직

-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연구소장 하에 임상연구팀, 조사연구팀, 연구지원팀의 3개팀 체제로 구성되어 있음.
- 임상연구팀은 표준진료지침 개발, 장애판정 및 합병증 인정기준 마련, 직업성 폐질환 관련 정책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조사연구팀은 폐질환의 업무관련성 조사평가, 폐질환 유해인자 발굴, 생물학적 표지자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연구지원팀은 진폐근로자 코호트 관리 및 분석, 문헌조사 등 연구지원을 담당하고 있음.

주 요 사 업

- 진폐표준진료지침 개발
- 폐질환과 관련된 연구를 통한 영양기준 및 진단·치료기법 개발
- 폐질환 위험인자 발굴 및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마련
- 진폐증 및 직업성 폐질환의 장애기준 설정
- 진폐건강진단 정도관리 평가·지도
- 기타 업무상 질병의 연구 및 심의

인 원 현 황

(단위 : 명)

구 분	계	기관장	연구직	일반직	기술 기능직
정원	15	1	8	2	4
현원	12	1	6	2	3

제 6 장

산재보험 재정안정화

제 1 절 지출합리화 및 수입 제고

산재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지출 합리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수입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지출 합리화를 위하여 '05년 10월에는 요양·보상 업무에 있어서 현장관리 및 치료상담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하였고 그 결과 보험급여 증가율이 '04년 15.2%에서 '05년 5.8%, '06년 4.6%, '07년 6월 현재 $\Delta 0.4\%$ 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장기 요양환자 수는 '05년 12월 50,332명에서 '07년 6월 현재 44,191명으로 감소하였다. 사회복지자의 평균요양기간 역시 '05년 272.2일에서 '07년 211.1일로 단축되는 성과를 보였다.

한편으로는 수입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최근 4년간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인상율 9%대)되었고, 적용누락 사업장 가입 제고 및 보험료 수납률 제고 등을 통해 수입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04년 1.48%에 그쳤던 보험요율이 '05년 1.62%, '06년 1.78%, '07년 1.9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가입 적용사업장 또한 '04년 1,039천개소에서 '05년 1,176천개소, '06년 1,293천개소, '07년 1,430천개소로 증가하였다.

〈2007년 산재기금 대차대조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2007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

과목	2007년(a)		2006년(b)		증감액(a-b)	비율 (a-b)/b
一. 자 산		4,368,737,578,772		3,373,668,865,596	995,068,713,176	29.5
I. 유동자산		3,515,245,974,725		704,035,503,714	2,811,210,471,011	399.3
(1) 당좌자산		3,515,245,974,725		704,035,503,714	2,811,210,471,011	399.3
1. 한국은행국고잔액		43,810,995,010		52,447,152,120	-8,636,157,110	-16.5
2. 현금등가물(MMW 등)		321,800,000,000			321,800,000,000	대체*
3. 단기투자자산		2,439,862,822,718			2,439,862,822,718	대체*
가. 예금	1,511,513,332,718				1,511,513,332,718	대체*
나. 수익증권	840,000,000,000				840,000,000,000	대체*
다. 미실현수익증권평가손익	88,349,490,000				88,349,490,000	대체*
4. 미수수익		43,841,763,677			43,841,763,677	대체*
5. 미수금		665,930,393,320		651,588,351,594	14,342,041,726	2.2
가. 보험료 미수금	400,952,267,850		334,804,362,270		66,147,905,580	19.8
대손충당금	-80,318,448,851		-57,418,948,129		-22,899,500,722	39.9
나. 가산금등 미수금	408,243,802,370		455,709,554,340		-47,465,751,970	-10.4
대손충당금	-63,707,498,011		-82,164,432,648		18,456,934,637	-22.5
다. 기타잡수입 미수금	366,732,970		336,989,410		29,743,560	8.8
대손충당금	-9,649,857		-269,592		-9,380,265	3,479.4
라. 특정예금(농협융자)미수수익	403,186,849		320,127,943		83,058,906	25.9
마. 미수금			968,000		-968,000	-100.0
II. 비유동자산		853,491,604,047		2,669,633,361,882	-1,816,141,757,835	-68.0
(1) 투자자산		667,870,527,130		2,518,078,410,784	-1,850,207,883,654	-73.5
1. 산재정착, 학자금 용자금		92,722,029,000		87,155,824,000	5,566,205,000	6.4
2. 산재예방시설용자금		427,919,913,000		407,031,386,000	20,888,527,000	5.1
3. 근로복지공단장기대여금		92,829,883,840		93,575,976,170	-746,092,330	-0.8
4. 한국산업안전공단장기대여금		36,423,021,280		33,063,839,560	3,359,181,720	10.2
5. 산재보험적립금				1,879,016,322,164	-1,879,016,322,164	대체*
가. 현금등가물(MMW 등)			563,500,000,000		-563,500,000,000	대체*
나. 예금			861,513,332,718		-861,513,332,718	대체*
다. 미수수익			34,489,049,446		-34,489,049,446	대체*
라. 수익증권			410,000,000,000		-410,000,000,000	대체*
마. 미실현수익증권평가손익			9,513,940,000		-9,513,940,000	대체*
6. 산재의료원대여금		17,975,680,010		17,975,680,010		0.0
7. 전신전화가입권			14,866,000		-14,866,000	대체**
8. 회원권			244,516,880		-244,516,880	대체**

<표 계속>

과 목	2007년(a)		2006년(b)		증감액(a-b)	비율 (a-b)/b
(2) 유형자산		185,363,692,037		151,554,951,098	33,808,740,939	22.3
1. 토지		45,961,460,478		49,466,682,489	-3,505,222,011	-7.1
2. 건물	71,646,428,892		51,926,478,115			
감가상각누계액	-9,530,440,116	62,115,988,776	-8,059,560,865	43,866,917,250	18,249,071,526	41.6
3. 공작물	763,767,096		795,488,756			
감가상각누계액	-169,177,550	594,589,546	-163,620,893	631,867,863	-37,278,317	-5.9
4. 기계기구(예방)	2,104,950,348		2,104,950,348			
감가상각누계액	-747,140,901	1,357,809,447	-729,278,957	1,375,671,391	-17,861,944	-1.3
5. 공기구비품(산재)	2,746,700		2,746,700			
감가상각누계액	-2,054,824	691,876	-1,751,060	995,640	-303,764	-30.5
6. 공기구비품(예방)	831,457,917		827,467,792			
감가상각누계액	-599,957,453	231,500,464	-687,436,640	140,031,152	91,469,312	65.3
7. 임목죽(예방)		748,694,450		748,694,450		0.0
8. 건설중인자산		15,357,979,003		35,089,048,592	-19,731,069,589	-56.2
9. 선급금		58,994,977,997		20,235,042,271	38,759,935,726	191.5
(3)기타비유동자산		257,384,880		0	257,384,880	대체**
1. 전신전화가입권(예방)		12,868,000		0	12,868,000	대체**
2. 회원권		244,516,880		0	244,516,880	대체**
二. 부 채		5,784,759,209,720		4,965,224,155,080	819,535,054,640	16.5
I. 유동부채		2,059,845,910		202,050,000	1,857,795,910	919.5
1. 선수금		2,059,845,910		202,050,000	1,857,795,910	919.5
II. 비유동부채		5,782,699,363,810		4,965,022,105,080	817,677,258,730	16.5
1. 퇴직급여충당금		148,363,810		133,105,080	15,258,730	11.5
2. 책임준비금		5,782,551,000,000		4,964,889,000,000	817,662,000,000	16.5
三. 자 본		-1,416,021,630,948		-1,591,555,289,484	175,533,658,536	-11.0
I. 자본금		108,753,989,060		108,753,989,060	0	0.0
1. 자본금(예방)		108,753,989,060		108,753,989,060	0	0.0
II. 자본잉여금		719,770,855,727		719,770,855,727	0	0.0
1. 자본잉여금(산재)		399,286,333,338		399,286,333,338	0	0.0
1. 자본잉여금(예방)		320,484,522,389		320,484,522,389	0	0.0
III. 결손금		2,244,546,475,735		2,420,080,134,271	-175,533,658,536	-7.3
1. 차기이월결손금		2,244,546,475,735		2,420,080,134,271	-175,533,658,536	-7.3
부 채 와 자 본 총 계		4,368,737,578,772		3,373,668,865,596	995,068,713,176	29.5

* 현금등가물(MMW 등), 예금, 미수수익, 수익증권, 미실현수익증권평가손익 등 산재보험적립금을 당좌자산으로 대체

** 전신전화가입권 및 회원권을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대체

〈2007년 산재기금 손익계산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2007년1월1일~12월31일)

(단위 : 원, %)

과목	2007년(a)	2006년(b)	증감액(a-b)	비율 (a-b)/b
I. 사업수익	4,571,709,685,040	4,152,354,582,140	419,355,102,900	10.1
1. 보험료 수입	4,530,381,978,290	3,834,807,518,890	695,574,459,400	18.1
2. 가산금 등 수입	213,177,730,580	369,456,902,590	-156,279,172,010	-42.3
3. 기타잡수입	330,216,510	418,485,430	-88,268,920	-21.1
4. 미수금감액	-172,180,240,340	-52,328,324,770	-119,851,915,570	229.0
II. 사업비용	4,644,519,979,989	4,575,255,756,726	69,264,223,263	1.5
1. 보험급여	3,242,272,278,160	3,163,793,211,870	78,479,066,290	2.5
2. 반환금	85,856,755,740	88,410,837,700	-2,554,081,960	-2.9
3. 근로복지공단출연금	235,488,238,515	213,632,339,245	21,855,899,270	10.2
4. 한국산업안전공단출연금	134,260,772,000	148,315,521,000	-14,054,749,000	-9.5
5. 산재보험및예방연구개발비	849,006,140	695,802,000	153,204,140	22.0
6. 기금관리비 등	4,861,922,430	4,554,503,290	307,419,140	6.7
7. 민간경상보조(보험사업)	6,943,478,710	7,134,976,980	-191,498,270	-2.7
8. 산재예방직접사업비	108,536,079,240	100,000,000,000	8,536,079,240	8.5
9. 감가상각비	2,105,674,124	1,962,564,641	143,109,483	7.3
10. 대손상각비	5,683,774,930		5,683,774,930	대체*
11. 책임준비금전입액	817,662,000,000	846,756,000,000	-29,094,000,000	-3.4
III. 사업총이익(손실)	-72,810,294,949	-422,901,174,586	350,090,879,637	-82.8
IV. 사업외수익	248,355,262,282	133,314,027,126	115,041,235,156	86.3
1. 일반회계전입금(산재)	6,000,000,000	6,000,000,000	0	0.0
2. 일반회계전입금(예방)	8,700,000,000	8,700,000,000	0	0.0
3. 기금(융자금등)이자수입	13,080,737,896	15,660,817,646	-2,580,079,750	-16.5
4. 적립금이자수입	204,175,509,611	91,245,508,111	112,930,001,500	123.8
가. 이자수익	103,993,627,721	59,480,115,791	44,513,511,930	74.8
나. 수익증권평가이익	88,349,490,000	9,513,940,000	78,835,550,000	828.6
다. 수익증권처분이익	11,832,391,890	22,251,452,320	-10,419,060,430	-46.8
5. 기금청사대여료	1,162,787,730	1,399,709,600	-236,921,870	-16.9
6. 기타경상이전수입 등	10,885,369,659	9,902,861,150	982,508,509	9.9
8. 자산편입이익(예방)	0	344,815,619	-344,815,619	-100.0
9. 관유물매각이익	4,051,856,019		4,051,856,019	대체**
10. 기타잡이익	299,001,367	60,315,000	238,686,367	395.7
V. 사업외비용	11,308,797	194,494,093,392	-194,482,784,595	-100.0
1. 대손상각비		194,493,969,378	-194,493,969,378	대체*
2. 관유물매각손실	3,606,764		3,606,764	대체**
3. 기타잡손실	7,702,033	124,014	7,578,019	6,110.6
VI. 경상이익(손실)	175,533,658,536	-484,081,240,852	659,614,899,388	-136.3
VII. 특별이익	0	301,170	-301,170	대체**
1. 관유물매각이익		301,170	-301,170	대체**
2. 건설중인자산(토지)매각이익			0	0.0
VIII. 특별손실	0	163,807,886	-163,807,886	대체**
1. 관유물매각손실		163,807,886	-163,807,886	대체**
2. 선급금반납단수손실		0	0	0.0
IX. 당기순이익(손실)	175,533,658,536	-484,244,747,568	659,778,406,104	-136.2

* 대손상각비를 사업비용으로 대체, ** 관유물 매각이익 및 관유물매각손실을 사업외이익 및 사업외비용으로 대체

〈2007년 산재기금 수입실적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2007년도)

(단위 : 원)

관	항	목	과	목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순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입계획액과 수납액의 차 증감액
					당초	수정					
07			사회보장기여금		4,371,319,746,000	4,371,319,746,000	4,833,180,017,210	4,431,519,910,140	76,815,199,630	324,844,907,440	60,200,164,140
	38		사회보장기여금		4,371,319,746,000	4,371,319,746,000	4,833,180,017,210	4,431,519,910,140	76,815,199,630	324,844,907,440	60,200,164,140
		381	고용주부담금		4,371,319,746,000	4,371,319,746,000	4,833,180,017,210	4,431,519,910,140	76,815,199,630	324,844,907,440	60,200,164,140
11			재산수입		101,191,990,000	101,191,990,000	130,147,712,100	130,147,712,100	0	0	28,955,722,100
	51		관유물대여료		1,070,000,000	1,070,000,000	1,162,787,730	1,162,787,730	0	0	92,787,730
		511	토지대여료		930,256,000	930,256,000	940,022,240	940,022,240	0	0	9,766,240
		512	건물대여료		139,744,000	139,744,000	222,550,800	222,550,800	0	0	82,806,800
		513	기타관유물대여료		0	0	214,690	214,690	0	0	214,690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00,121,990,000	100,121,990,000	128,984,924,370	128,984,924,370	0	0	28,862,934,370
		544	기타민간이자수입		16,257,339,000	16,257,339,000	12,964,486,850	12,964,486,850	0	0	(3,292,852,150)
		545	기타재산수입		83,864,651,000	83,864,651,000	116,020,437,520	116,020,437,520	0	0	32,155,786,520
12			경상이전수입		140,774,118,000	140,774,118,000	528,845,685,070	120,077,893,340	51,644,966,020	357,122,825,710	(20,696,224,660)
	57		번상금및위약금		1,000	1,000	0	0	0	0	(1,000)
		572	위약금		1,000	1,000	0	0	0	0	(1,000)
	58		가산금		13,141,496,000	13,141,496,000	19,665,267,860	8,811,940,120	1,978,552,510	8,874,775,230	(4,329,555,880)
		581	가산금		13,141,496,000	13,141,496,000	19,665,267,860	8,811,940,120	1,978,552,510	8,874,775,230	(4,329,555,880)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27,632,621,000	127,632,621,000	509,180,417,210	111,265,953,220	49,666,413,510	348,248,050,480	(16,366,667,780)
		596	기타경상이전수입		127,632,621,000	127,632,621,000	509,180,417,210	111,265,953,220	49,666,413,510	348,248,050,480	(16,366,667,780)
13			재확및옹역판매수입		8,592,211,000	8,592,211,000	11,493,099,380	11,126,366,410	26,175,800	340,557,170	2,534,155,410
	69		잡수입		8,592,211,000	8,592,211,000	11,493,099,380	11,126,366,410	26,175,800	340,557,170	2,534,155,410
		691	기타잡수입		8,592,211,000	8,592,211,000	11,493,099,380	11,126,366,410	26,175,800	340,557,170	2,534,155,410
		695	고정자산매각익		0	0	0	0	0	0	0
15			관유물매각대		3,065,195,000	3,065,195,000	21,910,479,930	11,660,523,170	0	10,249,956,760	8,595,328,170
	71		고정자산매각대		0	0	3,402,553,360	2,912,801,090	0	489,752,270	2,912,801,090
		711	건물매각대		0	0	3,399,673,360	2,909,921,090	0	489,752,270	2,909,921,090
		712	기계기구매각대		0	0	0	0	0	0	0
		713	기타고정자산매각대		0	0	2,880,000	2,880,000	0	0	2,880,000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3,065,195,000	3,065,195,000	18,507,926,570	8,747,722,080	0	9,760,204,490	5,682,527,080
		721	토지매각대		3,065,195,000	3,065,195,000	18,507,926,570	8,747,722,080	0	9,760,204,490	5,682,527,080
		723	기타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0	0	0	0	0	0	0
20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14,099,874,000	114,099,874,000	92,774,649,810	92,774,649,810	0	0	(21,325,224,190)
	75		융자원금회수		114,099,874,000	114,099,874,000	92,774,649,810	92,774,649,810	0	0	(21,325,224,190)
		752	통화금융기관융자원금회수		96,132,277,000	96,132,277,000	73,089,287,000	73,089,287,000	0	0	(23,042,990,000)
		754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17,967,597,000	17,967,597,000	19,685,362,810	19,685,362,810	0	0	1,717,765,810
31			여유자금회수		1,792,723,000,000	1,792,723,000,000	1,885,947,152,120	1,885,947,152,120 (11,530,605,600,740)	0	0	93,224,152,120
	85		정부예금회수		1,792,723,000,000	1,792,723,000,000	1,885,947,152,120	1,885,947,152,120 (11,530,605,600,740)	0	0	93,224,152,120
		851	한국은행예치금회수		152,400,000,000	152,400,000,000	52,447,152,120	52,447,152,120	0	0	(99,952,847,880)
		852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328,064,600,000	328,064,600,000	860,000,000,000	860,000,000,000 (2,630,000,000,000)	0	0	531,935,400,000
		853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312,258,400,000	1,312,258,400,000	973,500,000,000	973,500,000,000 (8,848,158,448,620)	0	0	(338,758,400,000)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14,700,000,000	14,700,000,000	14,700,000,000	14,700,000,000	0	0	0
	91		전입금		14,700,000,000	14,700,000,000	14,700,000,000	14,700,000,000	0	0	0
		911	일반회계전입금		14,700,000,000	14,700,000,000	14,700,000,000	14,700,000,000	0	0	0
합 계					6,546,466,134,000	6,546,466,134,000	7,518,998,795,620	6,697,954,207,090 (16,342,612,655,710)	128,486,341,450	692,558,247,080	151,488,073,090

〈2007년 산재기금 지출실적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2007년도)

(단위 : 원)

분야 부문	프로 그램	단위 사업	과 목		지 출 계 획 액		전년도 이월액	지 출 계획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 용 액
			과 목 명	과 목 명	당 초	수 정					
080				사회복지	6,546,466,134,000	6,546,466,134,000	43,500,000	6,546,509,634,000	6,697,954,207,090	0	175,585,537,920
086				노동	6,546,466,134,000	6,546,466,134,000	43,500,000	6,546,509,634,000	6,697,954,207,090	0	175,585,537,920
	4000			산재보험	3,992,952,610,000	3,610,266,610,000	0	3,610,266,610,000	3,449,862,514,190	0	160,404,095,810
		4051		산재보험급여	3,882,395,000,000	3,487,250,000,000	0	3,487,250,000,000	3,328,129,033,900	0	159,120,966,100
			320	보험급여	3,807,700,000,000	3,400,000,000,000		3,400,000,000,000	3,242,272,278,160		157,727,721,840
			710	반환금	74,695,000,000	87,250,000,000		87,250,000,000	85,856,755,740		1,393,244,260
		4052		산재근로자재활	43,123,455,000	53,405,455,000	0	53,405,455,000	53,405,349,600	0	105,400
			350	출연금	40,217,455,000	50,499,455,000		50,499,455,000	50,499,455,000	0	0
			320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	2,906,000,000	2,906,000,000		2,906,000,000	2,905,894,600		105,400
		4053		산재근로자복지	7,624,391,000	7,624,391,000	0	7,624,391,000	7,624,391,000	0	0
			350	출연금	7,624,391,000	7,624,391,000		7,624,391,000	7,624,391,000		0
		4054		산재의료관리원지원	25,831,606,000	25,831,606,000	0	25,831,606,000	24,757,606,000	0	1,074,000,000
			350	출연금	25,831,606,000	25,831,606,000		25,831,606,000	24,757,606,000	0	1,074,000,000
		4055		산재보험시설	7,025,231,000	7,025,231,000	0	7,025,231,000	7,025,229,690	0	1,310
			420	건설비(시설비)	400,000,000	400,000,000		400,000,000	399,998,690		1,310
			350	출연금	6,625,231,000	6,625,231,000		6,625,231,000	6,625,231,000		0
		4056		근로복지공단연수원신속	15,081,927,000	15,081,927,000	0	15,081,927,000	15,081,927,000	0	0
			350	출연금	15,081,927,000	15,081,927,000		15,081,927,000	15,081,927,000		0
		4057		대구재활전문병원신속	11,871,000,000	14,048,000,000	0	14,048,000,000	13,838,977,000	0	209,023,000
			350	출연금	2,071,000,000	2,071,000,000		2,071,000,000	2,071,000,000		0
			410	토지매입비	9,800,000,000	11,977,000,000		11,977,000,000	11,767,977,000		209,023,000
	4100			산재예방	168,384,000,000	168,384,000,000	0	168,384,000,000	166,388,079,240	0	1,995,920,760
		4151		클린사업장조성	109,518,000,000	109,518,000,000	0	109,518,000,000	108,536,079,240	0	981,920,760
			320	민간이전	109,518,000,000	109,518,000,000		109,518,000,000	108,536,079,240		981,920,760
		4152		안전보건관리기술지원	27,084,000,000	27,084,000,000	0	27,084,000,000	26,352,000,000	0	732,000,000
			350	출연금	27,084,000,000	27,084,000,000		27,084,000,000	26,352,000,000	0	732,000,000
		4153		안전의식제고교육홍보	16,465,000,000	16,465,000,000	0	16,465,000,000	16,273,000,000	0	192,000,000
			350	출연금	16,465,000,000	16,465,000,000		16,465,000,000	16,273,000,000		192,000,000
		4154		안전보건연구개발및국제협력	5,749,000,000	5,749,000,000	0	5,749,000,000	5,659,000,000	0	90,000,000
			350	출연금	5,749,000,000	5,749,000,000		5,749,000,000	5,659,000,000		90,000,000
		4155		산재예방시설	7,100,000,000	7,100,000,000	0	7,100,000,000	7,100,000,000	0	0
			350	출연금	7,100,000,000	7,100,000,000		7,100,000,000	7,100,000,000		0

<표 계속>

116 제2편 2007년도 산재보험 주요 정책과제 추진실적

분야 부분	과 목	프로 그램	단위 사업	과 목 명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 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잔 액
					당초	수정					
			4156	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	2,468,000,000	2,468,000,000	0	2,468,000,000	2,468,000,000	0	0
			350	출연금	2,468,000,000	2,468,000,000		2,468,000,000	2,468,000,000		0
	4200			산재보험(용자)	22,500,000,000	22,500,000,000	0	22,500,000,000	20,578,780,000	0	1,921,220,000
			4251	산재근로자복지(용자)	22,500,000,000	22,500,000,000	0	22,500,000,000	20,578,780,000	0	1,921,220,000
			450	용자금	22,500,000,000	22,500,000,000		22,500,000,000	20,578,780,000	0	1,921,220,000
	4300			산업재해예방(용자)	105,814,000,000	105,814,000,000	0	105,814,000,000	94,727,814,000	0	11,086,186,000
			4351	산재예방시설용자	105,064,000,000	105,064,000,000	0	105,064,000,000	93,977,814,000	0	11,086,186,000
			450	용자금	105,064,000,000	105,064,000,000		105,064,000,000	93,977,814,000		11,086,186,000
			4352	안전의식제고교육홍보(용자)	750,000,000	750,000,000	0	750,000,000	750,000,000	0	0
			450	용자금	750,000,000	750,000,000		750,000,000	750,000,000		0
	7000			노동행정지원	250,143,456,000	250,920,640,000	43,500,000	250,964,140,000	250,786,024,650	0	178,115,350
			7084	산재보상보험및예방기금운영비	249,331,456,000	250,108,640,000	0	250,108,640,000	249,937,018,510	0	171,621,490
			110	인건비	811,352,000	830,352,000		830,352,000	827,264,520		3,087,480
			210	운영비	2,737,188,000	2,662,188,000	0	2,662,188,000	2,557,819,800		104,368,200
			220	여비	836,018,000	881,018,000		881,018,000	852,632,460		28,385,540
			240	업무추진비	130,006,000	130,006,000		130,006,000	128,650,820		1,355,180
			310	보전금	6,0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0
			350	출연금	234,043,376,000	234,827,560,000		234,827,560,000	234,827,560,000		0
			320	민간이전	4,038,000,000	4,038,000,000		4,038,000,000	4,037,584,110		415,890
			430	기타유형자산	178,000,000	178,000,000		178,000,000	159,629,600		18,370,400
			450	용자금	6,551,516,000	6,551,516,000		6,551,516,000	6,535,877,200		15,638,800
			7085	산재보험및예방연구개발	812,000,000	812,000,000	43,500,000	855,500,000	849,006,140	0	6,493,860
			260	운영비	812,000,000	812,000,000	43,500,000	855,500,000	849,006,140		6,493,860
	9700			여유자금운용	2,006,672,068,000	2,388,580,884,000	0	2,388,580,884,000	2,715,610,995,010 (12,360,269,443,630)	0	0
			9705	한국은행예치	263,949,068,000	37,541,884,000	0	37,541,884,000	43,810,995,010	0	0
			470	예탁금및유가증권매입	263,949,068,000	37,541,884,000		37,541,884,000	43,810,995,010		0
			9715	통화금융기관예치	348,544,600,000	1,156,860,600,000	0	1,156,860,600,000	1,510,000,000,000 (3,280,000,000,000)	0	0
			470	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348,544,600,000	1,156,860,600,000		1,156,860,600,000	1,510,000,000,000 (3,280,000,000,000)		0
			9725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394,178,400,000	1,194,178,400,000	0	1,194,178,400,000	1,161,800,000,000 (9,036,458,448,620)	0	0
			470	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	1,394,178,400,000	1,194,178,400,000		1,194,178,400,000	1,161,800,000,000 (9,036,458,448,620)		0
합 계					6,546,466,134,000	6,546,466,134,000	43,500,000	6,546,509,634,000	6,697,954,207,090 (16,342,612,655,710)	0	175,585,537,920

제 2 절 법정책임준비금 확보

1. 추진경과 및 현황

법정책임준비금이란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산정기준은 당해연도 연금급여의 6년분과 다음연도 예상 보험급여의 3월분의 합이 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1항, 동 시행령 제87조)

'03년부터 '05년까지의 재정적자로 인하여 감소하던 적립금 규모는 '06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법정책임준비금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만 노사정 합의안('06년 12월)에 따라 변경될 법정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하면 현행 적립금 규모가 법정책임준비금에 근접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07년말 적립금은 2조 7,171억원으로 현행 법정책임준비금의 47.0%이다.

2. 추진 실적

법정책임준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료율 인상 및 적용누락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수납률 제고 등 산재보험기금의 지출 합리화 및 수입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가운데, '06년 12월에는 산재보험 재정운영방식, 책임준비금 산정기준 변경, 산재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도출되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재정운영방식은 현행 수정부과방식(1년분 기금지출 및 적립금)을 유지하면서, 예방사업비 국고지원은 연차적으로 확대(기금지출총액의 3%)하고,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기존의 '당해연도 연금급여 6년분과 다음년도 보험급여의 3/12' 에서 '전년도 보험급여총액' 수준으로 변경하며, 변경된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에 따른 부족적립금은 단계적으로 확보할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산재보험 재정수지 및 적립금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재정수지	수 입	27,156	27,112	31,278	35,038	41,083	48,120
	지 출	24,352	29,607	33,688	36,752	38,612	39,823
	수 지	2,804	△2,495	△2,410	△1,714	2,471	8,297
적립금	법정책임준비금	22,668	27,390	34,038	41,181	49,649	57,826
	적립금	21,239	19,955	18,537	16,783	19,315	27,171
	적립률	93.7	72.9	54.5	40.8	38.9	47.0
	과부족	△1,429	△7,435	△15,501	△24,398	△30,334	△30,655

3. 평가 및 향후 과제

법정책임준비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적립하되, 최근 증가율이 점점 커지는 연금급여 지출에 대비한 추가 적립금 확보방안 강구가 필요한 상황이다.